

2002년
증권제도동향

2003. 1

수석연구원 정윤모
연구원 임종혁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序 言

본 보고서는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증권제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증권 시장 및 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그 논의의 중심이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관련 제도들이 다양한 국면에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코스닥시장에도 시간외대량매매제도 및 시장가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제3시장을 통한 비상장·비등록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기회도 확대하였다.

증권산업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허용,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의무 폐지, 증권인수제도의 개편,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상장지수투자신탁 또는 간접투자신탁 등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신탁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

증권행정감독 측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이첩조치를 단순화하였고, 이상매매와 관련한 자율규제기능도 강화하였다. 발행기업에 있어서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도 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결합채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결채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도 조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윤모 수석연구원과 임종혁 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김선옥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3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박상용

목 차

I.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가. 발행시장	1
나. 유통시장	3
2. 채권시장	65
가. 발행시장	65
나. 유통시장	66
3. 선물·옵션시장	75
4. 증권예탁·결제	81
5. 기업공시	91
II. 증권산업	104
1. 증권회사	104
가. 영업·상품규제	104
나. 재무건전성규제	118
다. 기업지배구조 등	127
2. 투자신탁회사	129
가. 영업·상품규제	129
나. 재무건전성규제	132
다. 기업지배구조 등	135

3. 증권투자회사	136
가. 진입규제	136
나. 영업·상품규제	137
다. 재무건전성규제	139
라. 기업지배구조 등	139
4. 선물회사	141
Ⅲ. 증권행정감독	142
1. 법적규제기관	142
2. 자율규제기관	149
Ⅳ.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59
1. 기업경영감시	159
2. 지원·관리제도	160
Ⅴ. 기업구조조정	163
1. 일반기업	163
2. 금융기관	164

<부록> 규정별 변경 내용

I. 법 령	175
1. 증권거래법	175
2. 증권거래법 시행령	177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80
4. 증권투자신탁업법	182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84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185
7. 증권투자회사법	186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187
9.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188
10. 선물거래법	189
11. 금융지주회사법	190
1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92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4
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6
15. 은행법	197
16. 은행법 시행령	199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201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7

3. 증권업 감독규정	207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20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225
6.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28
7.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229
8.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229
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1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3
1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34
1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236
13. 증권범죄 조사사무처리규정	237
14. 은행업 감독규정	237
Ⅲ. 증권거래소 규정	240
1. 업무규정	240
2. 업무규정 시행세칙	247
3. 선물·옵션 업무규정	256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257
5. 유가증권 상장규정	260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266
7. 상장법인 공시규정	271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272
9.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참가약정서	273

IV. 증권업협회 규정	274
1.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74
2.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275
3.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275
4.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286
5.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295
6.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0
7.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307
8.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12
9.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14
10.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317
11.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318
12.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19
13.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19
14.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325
15.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정	328
16.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	329
17.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330

V. 증권예탁원 규정	331
1.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31
2.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333
3.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시행세칙	335
4.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35
5.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336
6.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338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339
8.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339
9.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339
10. 일반사무수탁 업무규정	341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단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12/2
입법예고)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계적으로 정비

- 유상증자시 할인율제한의 예외인정 대상 추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5/28 개정 · 시행)

-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할인율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 ※ 유상증자시 할인율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 주주배정(제한없음), 일반공모(30% 이내), 제3자배정(10% 이내)

- ※ 현행 할인율제한의 예외인정 사항

-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을 발행하는 경우(단, 금감위원장 승인 필요)

- 금융기관이 workout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예보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은행관리기업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 직접공모시 주식가치 분석방법 자율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분석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기업공개업무시 예측치와 실적치를 사후 비교하여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의 분석업무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의의무해태나 허위·오해유발 표시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춤.

- 종래에는 모집·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제출토록 규정

- 직접공모시 주식가치 분석방법 삭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1 시행)
 - 직접공모주식의 분석기준 관련규정 폐지에 따라 시행세칙상의 분석기준과 본질가치 산출방법을 삭제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산정근거는 현행대로 유지

- 자본환원을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산출대상 은행 변경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1 시행)
 - 자본환원을 산출시 정기예금 적용대상 은행의 합병 및 상호변경에 따른 대상은행 조정
 - 개정후 5개 시중은행 : 국민, 우리, 한국외환, 조흥, 신한

나. 유통시장

- 증권거래준비금제도의 폐지 (증권거래법 : 2002/1/26 개정, 2/1 시행)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던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영업용 순자본비율제도 등)가 정착됨에 따른 것임.
 - 현재 적립규모는 약 8,000억원 정도

○ 증권회사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 개정 · 시행)

- 종전에는 증권회사가 거래소 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대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

○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 개정 · 시행)

-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동 계좌를 통하여 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하게 됨.

○ 전자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중개등의 매매가격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12/2 입법예고)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을 이용한 매매중개를 허용

- 가격변동폭을 종가기준 $\pm 5\%$ 이내로 하고, 동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 공매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2/8/12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 · 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공매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권의 매매 거래에 대한 유가증권옵션을 포함

○ 주권의 해외상장이 가능한 외국거래소의 지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이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할 수 있는 외국거래소를 지정

- 외국거래소는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 적격거래소를 원용

* NYSE, Nasdaq, 아메리칸증권거래소(ASE),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9개 거래소)

- 필요시 시장의 안정성 · 유동성 · 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추가지정

○ 유상증자시 시가가 없는 주식의 기준주가 산정방법 개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5/28 개정 · 시행)

— 상장법인 등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기준주가를 산정

- 다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출

○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가격의 범위 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

- 종래에는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고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적용대상 확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정부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감위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 자기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적용대상 : 상장법인 등이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4 개정·시행)

-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소속 투자자들의 일괄매매를 인정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로 일괄매매후 소속 투자자들에게 매매익일까지 배분할 수 있음.

※ 투자자집단 :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다수 외국인(외국법
인등에 한정)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당해
외국인들

○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및 환입기준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 2002/2/27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폐
지됨에 따라 동 적립기준을 삭제
- 적립된 증권거래준비금의 환입기준
 - 금번 결산기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환입함. 다만, 자본전
입이나 결손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전액 환입 가능
 - * 증권거래준비금의 일시환입시 배당가능이익이 일시에 증가함
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균등환입하도록 함.

○ 상장·등록법인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지원

(증권업 감독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집중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
의 취득시
 - * 시장집중의무 :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
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도록 의
무부여
- 외국증권시장에 동시상장된 원주에 대한 국내예탁의무 부여
 - 외국예탁기관 명의로 상장원주를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

○ 코스닥시장의 신용공여제도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 2002/3/20 개정 · 시행)

- 코스닥종목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용거래 근거 명시
 - 협회등록주식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과 협회중개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용자·대주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사정가격 산정 및 담보권의 실행 등 담보관리방법은 거래소종목과 동일

○ 외국인의 장외거래인정 예외사항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0/2 개정 · 시행)

- ETF 설정으로 인한 주식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발생하는 장외거래로 인정

○ ETF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2/18 개정 · 시행)

- 수익증권형 ETF에 대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명시

○ ETF에 대한 신용공여시의 담보관리방법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2/18 개정 · 시행)

- 담보가격산정 등 담보관리방법을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주권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권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게 규제

- 투자자집단의 신고절차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4 개정·시행)
 - 외국인 투자자들간에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한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자집단으로 사전신고
 - 대표투자자를 지정하여 신고

- 투자자집단의 유가증권 매매후 배분내역 보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4 개정·시행)
 - 투자집단내 외국인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배분내역을 매매일일까지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보고

-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 관련제도 보완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3/20 개정·시행)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상장·등록주식 취득시 장외양수·양도 신고의무 부여
 -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투자등록시 원주별로 투자등록
 - 증권예탁원은 원주상장 주식의 월중 국내외 증권시장간 이동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

- 관리종목의 매매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을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로 변경
 -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종목은 현행과 같이 단일가매매

- 기존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은 주기적(30분 단위) 단일가매매(1일 13회 매매) 방법이었음.

*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에 대해 집중매매를 실시중임.

○ 단일가매매의 호가정보 공개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9/30 시행)

—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 예상체결가격·수량 및 체결가격대의 잔량, 가체결직후의 최우선 매수·매도호가 공개

— 매매체결이 불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 매도·매수 최우선 호가가격과 수량 공개

— 매수·매도별 총호가수량은 비공개

○ 저유동성 종목 매도시 위탁증거금으로 매도증권 전부 징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5 시행)

—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저유동성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

- 종래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시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였음.

*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종목 : 거래소 27종목, 코스닥 1종목

○ 결제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시 채권·채무관계 종결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거래소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당해 매매거래에 따른 회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는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종래 회원의 매매위약에 의한 손해에 대해 거래소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등으로 배상하는 경우, 이의 법률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회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제거

○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방법 규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주식시장 및 수익증권시장과 별도의 ETF시장 개설을 명시
- ETF의 경우에도 시간외시장 및 신고대량매매 등을 허용
- ETF의 추가설정(환매)으로 교부받을 ETF(주식집단)에 대하여 결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 매도를 허용
- ETF와 ETF 구성종목집단과의 차익거래를 위하여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호가를 허용

○ 매매거래중단제도 보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최근 상장법인의 퇴출요건 강화로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감사의견거절 등도 매매거래중단사유에 추가

○ 시간외시장 운영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확대
 - 15시 10분부터 15시 40분 →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

- 대량매매시 종가기준 $\pm 5\%$ (당일의 고저가 내)에서 호가하도록 하던 것을 종가기준 $\pm 7\%$ (당일의 상하한가 내)로 확대

○ 자기주식의 매매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기주식매수(매도)호가의 가격정정 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 가격중 높은(낮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낮은(높은)가격의 범위로 제한

○ 결제불이행관련 매매거래정지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매매거래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래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이 우려되고 그 규모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 범위 확대 및 가격요건 완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17 개정, 12/23 시행)

- 정부의 허가와 금감위의 승인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요건의 적용도 배제함.
 - 정부가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복수의 회원번호 부여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9 개정, 1/21 시행)
 - 회원간 합병 등의 사유로 회원시스템 통합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

- 회원별 차감결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의 결제방법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9 개정, 1/21 시행)
 - 거래소와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간의 결제방법은 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차감결제할 수 있도록 함.

- 단일회원의 호가에 대한 적용례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9 개정, 1/21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 등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므로,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별로 단일회원 여부를 판단

- 주식차익거래의 범위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과 개별주식옵션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거래를 주식차익거래로 규정
 - 주권매수(매도)와 주식합성선물을 매도(매수)하는 거래
 - ※ 주식합성선물매도(매수) : 주식 call option을 매도(매수)하고
주식 put option을 매수(매도)하는
옵션거래

○ 매매수량단위 조정근거 보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5

개정, 1/28 시행)

- 1개월간 40만건 이상의 호가가 3일 이상 접수되거나 거래소시스템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호가가 접수된 종목에 대하여 매매수량단위를 상향조정

-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조정 가능

○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음(-)」인 경우의 호가범위 설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 · 시행)

- 분할전회사의 시가총액을 신설회사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최고호가가격으로 하고,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단위 중 최저가격(5원)으로 함.

○ 재상장종목의 개념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 · 시행)

- 회사분할후 존속하게 되는 회사의 개념을 재상장종목과 구분하여 변경상장종목으로 규정

- 기존에는 회사분할에 의한 경우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최초가격(기준가격)이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됨에 따라, 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과는 달리 존속회사의 경우에도 재상장종목으로 규정

○ 호가의 입력내용중 계좌번호체계의 표준화 등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 · 시행)

- 계좌종류의 구분 2자리, 투자자번호 10자리로 구성된 체계를 회원
지점번호 3자리, 계좌종류의 구분 2자리, 투자자 번호 7자리로 전환
- 비회원 증권회사의 위탁자별 계좌번호를 입력 요청

○ 기접수호가중 상·하한가를 벗어난 호가의 취소 허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28 개정, 7/1 시행)

- 신규상장시 등 시가결정후 제한폭을 벗어난 호가의 경우 호가효력
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나, 증권사 및 투자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취소를 허용

○ 매도호가의 호가수량한도 하향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28 개정, 7/1 시행)

- 종래 상장주식수까지 매도호가 할 수 있었던 매도호가수량 한도를 상
장주식수의 1/3까지만 매도호가 할 수 있도록 호가입력제한을 강화
•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기준가격제도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28 개정,

7/1 시행)

- 자본감소(주식병합) 종목의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여 평가가격의 50%(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에
는 5원) ~ 200% 범위내에서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가격
을 기준가격으로 함.

- 기존에는 직전의 가격과 감자비율을 감안하여 당일의 기준가격 결정
 - 회사분할에 따른 재상장시 최초가격(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접수하는 최저호가가격의 범위를 현행 평가가격의 90%에서 50%로 하향조정
 - 평가가격의 90%~200% → 평가가격의 50%~200%
 - Kosdaq종목의 신규상장시 공모실시여부에 따라 평가가격 산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최근종가 및 10일간의 평균종가만을 감안하여 산출
- 전산장애시의 매매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28 개정, 7/1 시행)
- 전산장애 복구시 접속매매로 매매거래를 재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일가매매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재개
- 전산주문표 작성방법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28 개정, 7/1 시행)
- 증권회사가 전화·FAX 등으로 주문을 수탁하여 전산주문표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는 경우,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주문처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출력을 면제
 - 종래에는 주문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

-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방법의 세부사항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를 허용
 - 차입한 ETF(주식집단)를 매도하는 경우 가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차익거래유형을 명시
 - 신규상장시의 기준가격은 최근의 주당(좌당) 순자산가치로 함.
 - ETF 대응가격은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

-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재개 연장사유 보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당해 품문 등이 공시후에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 재개의 연장이 가능

- 계좌번호체계 보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계좌번호의 구성항목을 지점번호 및 투자자번호로 단순화

- 대량매매요건 완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5만주(또는 10억원) 이상에 한하여 허용하던 대량매매를 1만주(또는 2억원) 이상으로 대량매매 요건을 완화

○ 호가입력시 주문자 식별정보의 확보 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2003/1/2 시행)

— 호가입력시 주문입력방법에 따른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의 입력을 명시

주문입력방법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주문을 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단말기에 입력시	영업점 단말기 고유번호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컴퓨터를 통한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홈트레이딩)	IP 주소
기타 방법의 호가시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

※ 유선통신단말기(ARS)를 이용한 회원시스템 입력시는 제외

— 수탁확인사항에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추가

- 회원의 수탁시 확인사항에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IP주소, 기타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하는 고유번호를 포함시킴.

○ 일반 감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요건 중 기간을 최근 5일간 75% 이상 주가상승이 3일 연속에서 「2일 연속」으로 단축

— 시가기준종목이 상장 후 30일 미만시 그 경과한 기간중 최고주가 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일반 감리종목 해제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일정기간(3일) 경과 후 주가급등의 진정 또는 하락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해제

- 우선주 감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2차 이상 매매거래 정지의 요건에 1차 매매거래정지해제 후 최근의 주가상승률을 반영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 불공정거래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상 명확히 정하고 지급기준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

- 전산장애의 범위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12/23 시행)
 -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 외에 동시스템과 유사한 매매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도 전산장애의 범위에 포함
 - 기계적 결함 외에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전산장애의 범위로 규정

- 1회 호가수량한도 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2003/1/20 시행)
 - 상장주식수(매도의 경우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 상장주식수의 5%(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 재상장제도 개선을 통한 우회상장 규제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3/30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영업부문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분할하여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상장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
 - 이익요건, 자본잠식요건, 감사의견요건 및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 등을 적용

-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등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3/30 개정 · 시행)
 -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주식분포상황 미달과 관련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주식분산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

- 지주회사의 상장특례요건 적용대상법인 기준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3/30 개정 · 시행)
 - 지주회사의 상장특례요건 적용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이 75% 이상인 경우로 변경

- 주식교환·이전 이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인 주식관련사채권의 주식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
-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상장 자회사보다 규모가 큰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는 재무요건 등 주요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주회사의 상장특례를 적용
 -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함.
 - 다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우회상장의 우려가 없으므로 적용 배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수익증권)의 상장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이상 편입
-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펀드구성종목에 편입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신고의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현행 증권투자회사 및 수익증권의 신고사항을 준용하되, ETF의 특성에 맞는 신고의무 사항에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 및 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추가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상장폐지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발행증권수가 5만증권 미만으로서 3월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상장폐지기준으로 명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에 대한 상장폐지 예고제도 적용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ETF는 관리종목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시 미리 이를 공시하여 투자자를 보호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때
 - 발행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 된 때

○ 자기자본 관련 상장요건 및 폐지기준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외국채권의 상장요건 중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여 주권상장요건과 형평성을 제고
- 외국채권의 상장폐지기준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

○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상장폐지기준을 강화
 - 유예기간 동안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에 대한 관리종목지정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사업연도의 반기
검토보고서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
견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

- 영업활동이 정지된 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
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상장폐지기준을 강화

-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인의 상장폐지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최종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관
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기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1년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
면 상장폐지하던 것을 부도가 발생한 법인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상 부적절하므로 관리종목 지정절차를 삭제

○ 자본잠식법인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없이 즉시 상장을 폐지

-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태가 2년 계속인 경우 상장을 폐지

○ 거래량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을 위한 월평균거래량 산출 주기를 기존 6월에서 3월로 단축하며, 기업의 규모별로 거래량 미달 기준을 상장주식수의 1~2%로 차등화

○ 회사정리절차개시와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04년 말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 공시의무 위반시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4/1/1 시행)

— 최근 2년 이내에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1년 이내에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또한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최저주가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종가가 30일 연속하여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주가수준 미달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그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시가총액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7/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하여 25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그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주권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의견청취제도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의 상장폐지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서면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동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퇴출과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최종 퇴출결정 이전에 당해 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 상장폐지주권의 정리매매기간 단축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권의 매매거래허용기간을 기존 15일(매매일기준)에서 7일(매매일기준)로 단축

- 주권상장법인의 업종 및 코드분류 근거 변경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11 개정, 1/14 시행)
 - 유가증권표준코드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업종 및 코드분류 근거를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로 변경

- 전업종 평균부채비율 산정시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11 개정, 1/1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시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종 평균부채비율 산정시에도 제외

-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적용방법 삭제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11 개정, 1/14 시행)
 - 상장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을 폐지하므로, 전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전제로 규정한 상장폐지기준의 미해당 입증자료의 제출을 삭제
 - 주식분포상황, 감사의견, 사외이사 미선임 등

- 관리종목 지정우려 법인에 대한 공시근거 신설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11 개정, 1/14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투자자에게 예고(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 관리종목 지정시기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3/7 개정 · 시행)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시기를 사업 보고서제출일 익일에서 당해 사실 확인일 익일로 변경
 -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도모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절차 폐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3/7 개정 · 시행)
 -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감사종료보고서를 전송받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사유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 등 시장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절차를 삭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투자신탁 상장관련제도 정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기존의 증권투자회사주권 및 수익증권과 달리하도록 명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지정판매회사가 변경 또는 추가 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경우 환매 또는 설정에 의한 변경상장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2003. 12. 31 까지 면제

- 신규상장,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개선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하는 통일규격유가증권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양제출을 생략 가능
 - 상장신청시기 단축에 따라 상장신청서 제출후 첨부서류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시
 -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관리종목 지정후 6월이내에 공정공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에 관한 일수를 새로 기산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정기준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주권의 상장심사요건과 관련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산정기준을 신설

- 상장계약서 서식 변경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 9/30 시행)
 - 상장계약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증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수요사항을 반영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심리자료 요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장계약서 서식을 변경

-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상장폐지기준 중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사항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영업활동정지 후 6월내 사유 미해소
 - 주가기준 또는 시가총액기준 미달
 -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폐지
 - 기타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출기한
 -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의 통지접수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심의 의무화
 - 당해 법인에게 상장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 상장위원회의 심의 종결후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최종결정

- 신설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매출액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는 사업보고서 제출
일의 익일에 조치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는 당해
사실의 발생 또는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에 조치

○ 결산기 이후 재무변동사항의 시장조치 반영기준 확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결산기부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발생한 재무내용 변동사항을
관리종목 지정해제시에도 반영

- 종전에는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시에만 반영

○ ECN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ECN의 등록종목 중개와 관련하여 코스닥위원회 및 중개회사(코스
닥증권시장)가 업무지원 등의 수수료를 매매약정대금의 일정비율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증권거래소는 정관에서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매매대금의 0.06/1
만에 상당하는 수수료 징수 중

— 중개수수료 이외에 코스닥위원회 및 중개회사가 징수하는 모든 금
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 청문회위원 등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문회위원 및 전문
가 등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

- 등록심사 및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가 없었음.

- ECN관련 수수료 징수비율 신설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 · 시행)
 - ECN의 등록종목 중개와 관련하여 업무지원 등의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을 매매약정대금의 0.03%으로 정비
 - 코스닥위원회 · 중개회사 : 각각 0.03%

- 등록예정기업의 등록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3/18 개정, 9/18 시행)
 - 협회등록전 부당한 자본이득의 부여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원칙의 확립을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확대
 -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 → " 1년 이내

- 분할후 재등록시 요건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3/18 개정 · 시행)
 - 협회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규 기업으로 재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요건을 강화
 - 기존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요건을 추가 심사
 -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여 우회등록한 비상장 · 비등록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 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기존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경상이익,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 당해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요건을 추가

○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요건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3/18

개정·시행)

— 협회등록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비공개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을 심사

- 기존에는 협회등록법인보다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에만, 당해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자본잠식·경상이익·부채비율·증자·감사의견·최대주주 지분변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으나, 모든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확대

○ 협회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3/18 개정·시행)

—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합병시 적용하는 수준의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도입

- 최대주주등 :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단, 1년 경과후 매 1월마다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 투자기간별로 1~3개월간
- 기관투자자 :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개월간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에 자본잠식요건 도입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7/12 개정, 7/15 시행)

— 불법·부당한 비리발생 등으로 벤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본잠식이 없을 것」의 등록요건을 적용

- * 최근 3년간('99년~'01년) 코스닥등록 심사대상 벤처기업(476사) 중 자본잠식 요건 미달기업은 5개사임.

○ 제3시장 우량기업도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 부여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7/12 개정, 7/15 시행)

-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3시장에 1년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인센티브를 부여

- * 「우량기업」 : 일정기간 불성실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등

○ 제3시장 지정기업의 모집분에 대한 주식분산 인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7/12 개정, 7/15 시행)

- 제3시장 우량기업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시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

- 종래에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30%)에 제3시장 분산실적을 불인정함에 따라 주식분산 메리트가 없었던 점을 개선

○ 신규등록 심사요건중 주식분산 기준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은 모집을 통한 분산의 의무화함으로써 주식분산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

- 기본산실적(공모+사모)이 30%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통해 20%이상 공모분산 의무화

- 기본산실적(공모+사모)이 30%이상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통해 10%이상 공모분산 의무화. 다만, 공모로 기본산실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사항 반영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2002/7/16)으로 유가증권 분석의무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함에 따라 유가증권 분석의 일반원칙, 분석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삭제
- 청약이후 등록시까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세칙으로 이관하고 제출 가능시기를 조정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하는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모집의 완료일까지 신규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조기환금성을 확보.

○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대상 주식등을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주주 보유주식을 위장하여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한 주식수 이외에 금액도 감안하여 주식을 재매입토록 하고,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새로이 매각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등록예비심사청구서 허위기재시 제재조치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종전 등록취소 기준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를 「등록취소」 및 「관리종목 편입」 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장조치 기준으로 세분화
- 등록취소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을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고 기업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종목 편입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의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으나 당해 기업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관리종목 지정후 6월이내에 제재조치(주식 재매입 등) 불이행 또는 1년이내 재차 허위기재 또는 누락 발생시에는 등록취소

○ 지분변동 제한 대상범위의 조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예정법인의 지분변동 제한대상을 5% 이상 주주까지로 확대
 - 등록예정법인의 신규자금 유치 등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한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에 대한 제3자매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의 예외를 신설

- 종전 등록예정법인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분변동을 제한하였음.

○ 벤처금융의 주식매각제한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금융의 주식매각제한 기간을 완화 (단, 벤처금융투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강화)

-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매각제한 없음
-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1월간

○ 예약매매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계속보유기간중 예탁원에 보관중인 주식등을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연장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보호예수제도의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후 1년이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소유주식의 매각을 제한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미흡한 사례를 예방

○ 최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최대주주(또는 대표이사)가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증선위가 판단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 시장이전제도의 보완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코스닥기업이 시장을 이전하는 경우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규정
- 시장이전이 코스닥 등록후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3%
 - 등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1%
 - 기존 등록기업의 경우,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등록심사수수료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등록심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이 승인되는 경우 등록수수료에서 이를 공제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신규등록 심사시 특례 기간 연장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신규등록시 유상증자 및 지분변동 제한요건의 적용을 면제
 - 종전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동 제한요건의 적용을 면제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요건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당해 적용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불허

- 관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최소주가 요건의 기능을 제고
 - 액면가의 20% → 액면가의 30%

- 시장평가에 의한 등록취소 기준인 시가총액 일정비율 미달인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등록된 보통주의 당일 종가에 등록된 보통주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투자부적격 주권으로서 당해 기업의 부실화 진행과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요건을 설정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
 - 최근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시 당해 적용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불허

○ 등록취소제도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퇴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상시 퇴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등록취소 제도를 개선

구 분	기 준	개 정
I. 퇴출기준강화		
① 액면가액 일정비율미달	○ 액면가의 2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 액면가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② 시가총액 미달	(신 설)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시 퇴출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이후 1개월내 미제출시 퇴출	(현행과 동일) - 이후 10일내 미제출시 퇴출
④ 영업활동 중단	○ 주된 영업활동 등 중단시 관리종목 지정 - 6월간 지속시 퇴출	(현행과 동일) - 3월간 지속시 퇴출
⑤ 영업실적	(신 설)	○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 악화시 관리종목 지정 -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⑥ 회사정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매1년마다 적격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신청시 퇴출 ※ 정리절차 진행중인 기업은 유예기간 부여후 정리절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퇴출
⑦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보고서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II. 퇴출절차 개선		
① 이의신청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퇴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불허 *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세칙으로 정함
② 정리매매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매매기간 : 15일 ○ 매매방법 : 정규매매와 동일 (최초 매매일의 경우 가격제한폭 없이 동시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매매기간 : 7일 ○ 매매방법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③ 재등록제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후 1년간 재등록 제한 * 부도, 상장, 자진퇴출은 예외인정 - 2년내 재등록시 특례*인정 * 유상증자 및 대주주 보유지분 변동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등록 제한기간 폐지 - 3년내 재등록시 특례인정

○ 합병의 개념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합병의 개념을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 「합병」 → 「상법 522조, 527조의2, 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

○ 재등록 신청 가능시기 조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등록주선인을 통하여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조정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 1월 이내

○ 우선주 등록에 대한 거부권·선택권 부여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투자자보호 기타 등록종목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
로 정하는 경우, 우선주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우선주 발행시 추가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 종래 신규등록시는 우선주에 대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
음에 비해, 추가 또는 재등록시에는 의무화되어 있어 신규등록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와 불일치하였음.

○ 등록법인과 건설업 영위법인의 합병요건 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공개법인에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일
반기업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 종래 신규등록시 적용되던 건설업 특례규정을 합병시까지 적용
하여 건설법인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였음.
- 건설업을 영위하는 협회등록법인이 비공개법인(건설업)을 합병하
는 경우에만 합병요건을 완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예외 인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시행)
 - 업력 2년 미만, 매출액 30억 미만, 자본잠식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3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면 재차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기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시행)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경우
 - 법정제출기한이 속한 월의 익월 초일 →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 주식분산기준 미달의 경우
 - 법정제출기한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 투자유의종목 적용기준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시행)
 - 거래실적부진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
 - 발행주식총수와 거래실적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발행주식총수와 등록주식총수가 상이한 경우(발행후 변경등록전)에는 등록주식총수를 기준

- 월중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별거래량을 일별등록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일별회전율을 합산한 월별회전율을 기준으로 거래량 요건을 적용
- 월간 매매일수가 해당 월의 중개시장에서의 매매일수의 1/2 미만인 종목은 지정을 유예하고, 월중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실적을 중개시장의 월간 매매일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등록취소시 이의신청과 관련한 매매거래정지 시기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3/18 개정·시행)

-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3일간 매매거래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개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의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리매매를 개시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기준 변경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시행)

-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이 6% 기준으로 하락·상승 확인된 날의 익일에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조치 실시
 - 종래에는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가 자기자본의 6% 기준으로 하락·상승 확인 즉시로 되어 있어, 장중에도 동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하므로, 장중 시장조치에 의해 신용거래 가능여부가 당일중 변동

○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계산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시행)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만료시점까지만 매매거래를 정지
 - 종래에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불명확하였음.

○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등의 인출허용 사유를 구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등의 인출과 관련하여 「기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등의 예외적 인출을 허용
 - 종래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속·소각·질권변경·질권해지 등의 경우에 인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없었음.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시행)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를 반드시 구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경우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증빙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정당성·객관성을 담보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우선심사 물량 확대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 · 시행)

— 제3시장의 우량기업에게도 코스닥 등록시에 우선심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우선심사 물량을 종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중 10%를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

- 종래에는 코스닥 등록심사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해 심사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심사권을 부여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의 조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중 분산요건의 확인을 위한 주주명부요약표를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로 사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제출의무를 세칙으로 이관

-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시기 유예 가능 신설

○ 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기준 세분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최대주주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장분산을 하는 경우 보호예수 의무 기간의 연장 및 재매입조치 등의 제재방안을 신설

구 분	조 치 내 용
차명주식을 보유한 경우	- 최대주주가 소유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예탁원에 예탁한 날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 (단, 1년 경과시 매월 5% 매각 인정) → 명의변경 및 보호예수 조치 미이행시 등록취소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 재매입 수량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수량을 재매입토록 하고 재매입한 금액이 처분금액에 미달시 처분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재매입 조치 - 매각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한 주식 + 기존 보유주식 - 매각제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을 완료하여 예탁원에 예탁한 날로부터 1년간 매각을 금지하고 기존 보호예수 잔여기간을 추가 → 재매입 및 보호예수 조치 미이행시 등록취소

○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기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9/16 시행)

—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2회를 1회로 간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이전 2년의 기간중 발행한 건수를 합산하여 2회 확인즉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므로, 공정공시의무 4회를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됨.

○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9/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토록 하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시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유예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0/14 개정·시행)

— 주금납입일까지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중 주금납입일까지 구비가 어려운 서류의 경우 일정기간 제출을 유예

- 단, 신규등록일(매매개시일) 전일까지는 제출토록 함.

○ 등록수수료 등 면제가능한 관리종목 지정사유의 한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0/14 개정·시행)

—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한정함.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자본잠식을 50%이상인 경우와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부과

○ 우선주 등록 거부사유의 구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 · 시행)

- 투자자보호 및 등록종목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우선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종목별 등록신청 주식수가 5만주(액면 5천원을 기준)미만인 경우

○ 매각제한 위반시 조치기준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 · 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보호예수 기간은 매각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및 계속보유잔여기간의 합산으로 함.
-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기간중 1년 경과후 매월 5% 매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기준 신설
 - 매각제한 기간중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및 매각제한기간중 1년까지의 미경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마다 적용
 - 매각제한 기간중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각이 가능한 주식등을 제외한 계속보유 주식등을 대상으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마다 적용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배제사유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 · 시행)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

- 거래실적부진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및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 · 시행)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일을 포함하여 60일(당해 종목의 매매일 기준)이 경과한 날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확인 즉시
- 해제시기 :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으로 표명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 최근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 ·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당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관리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배제사유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관리종목 지정시 적용하는 이의신청을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공정거래 연루 최대주주 등 검찰고발시 매매거래정지 기준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당해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준을 명시
 - 당해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사유발생 확인시점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조치일로부터 이전 2년의 기간중 당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동 지위에 있었던 경우로 한정
- 당해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조치사실 확인시점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2002/12/20 개정, 12/23 시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조치일 현재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조치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진 적이 있는 경우로 명시

- 등록취소시 위원회 승인배제사유 및 이의신청 배제사유의 명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등록취소시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배제하고 이의신청도 불허

-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시 주주총회 의무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 신청시 등록취소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등록심사수수료 신설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등록심사수수료(100만원) 징수

- 예탁원과 증권회사간의 결제시 회원별 차감결제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1/21 개정·시행)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권회사별로 차감결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권회사간 합병에 따른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증권회사별 차감결제 곤란을 구제

○ 시간외 대량매매제도의 도입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4/1 개정 · 시행)

— 대량매매 주문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대량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시간외대량매매제도를 도입

-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pm 5\%$ 범위내의 가격」 또는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종목과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거래를 성립시킴.
- 협회등록법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 이용 가능

○ 시장가호가제도 도입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호가유형에 시장가호가를 추가

- 시장가호가란 등록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

— 시장가호가의 우선순위 및 가격간주기준 등 마련

-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
- 시장가호가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별도의 가격간주기준을 설정

* 설정원칙 : 최우선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우선하는 가격 및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불리한 가격, 직전의 가격 (체결가격, 전일종가 등)으로 간주하여 가격변동 최소화

○ 공매도호가의 관리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 공매도호가를 허용
 - 코스닥시장에도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거래대주의 경우를 공매도 호가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 지수차익거래시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예외인정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호가시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증권거래소와 동일)

○ 저유동성 종목 매도시 위탁증거금으로 매도증권 전부 징수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6/28 개정, 7/1 시행)

- 등록주식수가 일정수량(5만주) 이하인 종목에 대하여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토록 의무화
 - 등록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불의의 공매도시 결제안정성을 확보

○ 등록후 거래미형성 증권투자회사 주권 기세적용 배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등록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세를 종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
 -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 일반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기세를 종가로 인정
 -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증권투자회사 주권에 대해서도 기세를 종가로 인정

- 자기주식의 매매방법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매도)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중 높은(낮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높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 종래 매수(매도)주문에 대한 최저(최고)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처분)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시간외매매시장의 거래시간 확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10/11 개정, 10/14 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20분간 연장
 - 15 : 10 ~ 15 : 40 → 15 : 10 ~ 16 : 00

-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요건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10/11 개정, 10/14 시행)
 - 대량거래의 원활한 가격협상 및 체결을 도모하고자 기존 당일 고·저가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pm 5\%$ 이내로 되어 있는 가격범위를 $\pm 7\%$ 이내로 확대
 - 단,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한도로 함.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매수범위 확대 및 가격요건 완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12/13 개정, 12/23 시행)

- 정부가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여 협회등록법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를 허용하고 가격요건의 적용도 배제

○ 정리매매기간중 가격제한폭 해제 등 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33조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후 일정기간(7일)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정리매매종목)의 거래시 가격제한폭을 해제하는 근거를 신설
 -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에 의한 체결방식으로 전환

○ 결제 증권회사별 차감결제에 대한 특례사항 및 결제방법 명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 개정·시행)

- 결제 증권회사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으로 협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시에는 회원번호를 복수로 부여 가능
 - 회원번호를 복수로 부여받은 결제 증권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인정하는 날까지 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차감하여 납부 가능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방법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 개정·시행)

- 시초가 산정시 평가가격을 조정하려는 협회등록예정법인의 제도악 용소지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회등록공모를 행한 법인은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고, 직등록의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개선
 - 종전에는 등록신청일전 6월 이내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인정

○ 재등록법인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 개정·시행)

- 분할·합병기일의 보통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을 산정
 - 종전에는 재등록법인의 경우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산정은 분할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보통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산식에 의하여 산정

○ 신용거래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 마련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탁시 또는 호가의 입력시 신용거래임을 명시
 - 수탁기재사항중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구분하여 기재

○ 정리매매기간중 최초매매일 가격결정 방식의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 4/29 시행)

— 적정가격의 조기발견 기능을 제고하고자 정리매매 초일에는 동시호가 매매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제한폭을 폐지

- 2일째부터는 기존제도(12%의 가격제한폭 적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유지

○ 시장감시 구분의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 · 시행)

— 시장주가감시, 기간주가감시 및 기타 주가감시로 구분

→ 일별시장감시, 기간시장감시 및 기타시장감시로 구분

○ 「시장가호가를 입력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 · 시행)

— 시장가호가는 투자자에게 매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문 형태이므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 호가의 경우
- 정리매매 기간중 최초 매매일의 가격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중
- 기타 협회가 중개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법인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산정방식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 · 시행)

— 기존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법인에 준하여 시초가 결정방식을 적용

- 종래에는 신설법인의 경우 동시호가에 의한 시초가 결정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기존법인의 경우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12%의 가격제한폭을 적용

기 준	개 정
- 신설법인 : 시초가 결정방식 • 90 ~ 200% 범위내 호가 • 오후 3시까지 단일가 매매방식 - 기존법인 :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12%가격제한폭 적용	(현행과 같음) - 기존법인 : 시초가 결정방식 • 90 ~ 200% 범위내 호가 • 오후 3시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

○ 감자후 매매재개일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정비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 · 시행)

— 감자전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에 감자비율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이 감자후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

- 기업이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

기 준	개 정
- 기준가격 : 주식병합전 최종매매 일종가 × 병합비율 - 체결방법 : 기준가격 대비 12%내 일반종목과 동일 방식	- 평가가격 : 현행 기준가격 - 호가범위 : 50 ~ 200% - 호가접수시간 : 오전8시~오후3시 단일가 매매방식

- * 종래 규정상 감자에 따른 주식병합후 매매가 재개되는 종목의 매매재개일 거래는 거래정지일 종가에 감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에 12%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적정가격 발견시까지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

○ 권리락·배당락시 기준가격 산정기준의 변경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 개정·시행)

- 등록법인 기준뿐만 아니라 각 주권 종류별로도 권리락 전·후의 일치요건이 유지되도록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정비
 - 종래에는 우선주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권종류에 따른 주주간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
- 종전에 규정상 보통주만 등록된 등록법인이 우선주를 배당하는 경우에 대한 배당락 산정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배당락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마련

○ 전산매체 이용시 주문표 출력보관의 예외 인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16 개정·시행)

- 주문내용 등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후 별도로 보관되는 경우에는 주문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예외로서 인정
 - 증권회사가 전화, 전보, FAX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단일가매매시 호가정보의 공개범위 조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16 개정·시행)

- 호가정보의 공개범위를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및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과 그 가격의 호가수량으로 명시
-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시 공표는 원칙적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실시간 공표를 원칙으로 함.
 -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 개시후 1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표하도록 개선
 - 호가건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공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직등록시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16 개정·시행)

- 직등록시 평가가격으로 삼던 본질가치 대신에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삼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을 결정**
 - * 순자산가액을 신규등록 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 오전8시에서 오후 3시까지 평가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받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결정
 - 종래에 신규등록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은 ① 협회등록공모 법인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② 직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본질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삼아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받은 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음.

○ 시간외대량매매 수량요건 완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0/14 개정 ·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을 기존의 5억원 이상에서 거래대금 기준 1억원 이상으로 완화

○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 확보 근거 신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컴퓨터 및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입력단말기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권회사가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 호가의 전자통신 매체별 주문식별수단을 호가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신설

○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의 명확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가격급등 우선주 및 증권투자회사의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화
 - 증권투자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중 가장 최근에 공표된 수치를 기준
-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시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종가 조정 근거규정을 신설
 - 권리락, 액면변경, 주식병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종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정지 여부를 결정

- 주식병합된 종목의 변경등록일 시초가 결정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주식병합시 최초매매 기준가격 산정방식 적용대상에서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병합없이 대주주 등의 주식만 병합되는 경우를 제외

- 제3시장 공시위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 시행)
 -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의 경우에는 즉시 지정취소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수시 · 정기 · 조회공시)에는 지정취소

- 호가중개종목 지정취소기준의 강행규정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 시행)
 - 호가중개종목 지정취소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지정취소사유 발생시 퇴출절차의 투명성 강화
 - 종전에는 지정취소기준이 임의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소사유 발생시 신속한 퇴출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 거래실적 부진기업에 대한 퇴출기준 정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 시행)
 -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월간 지속되는 경우 퇴출
 - 종전에는 1년간 1주도 거래가 없는 경우에 지정취소

○ 퇴출후 재진입 제한기간 원칙적 폐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 시행)

— 지정취소후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진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불성실공시 · 거래부진사유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기업은 1년간 진입금지

- 종전에는 퇴출된 기업이 새로이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일괄적으로 2년간 진입불허

○ 제3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 도입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10/1 시행)

— 1일 가격변동 제한폭을 매매기준가격(직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대비 $\pm 50\%$ 로 설정

○ 소속부 제도 신설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 ·

시행)

—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구분 관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의 기능을 제고

- 소속부는 정규시장이관부(정규시장에서 퇴출되어 지정신청한 기업이 소속), 일반기업부(정규시장이관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기업)로 구분

○ 신용거래 범위의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3/20

개정 · 시행)

— 신용거래의 개념 및 신용거래 대상종목 등에 협회중개시장 거래주식을 포함

○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에 대한 자율성 제고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표5 신용거래약관」을 개정
 - 증권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증권저축계좌로 ECN 시장을 통한 매매 허용 (증권회사의 증권저축

업무에 관한 규칙 : 2002/3/28 개정, 2002/4/1 시행)

- 증권저축의 업무방법에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도 포함

2.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 공모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금지기간 단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금지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
 - 사모발행시에는 전환 ·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이 1년

○ 「공모발행」의 인정기준 명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시행)

— 전환권 등의 행사제한기간이 1월로 단축되는 「공모발행」 인정 기준을 명시

- 국내에서 주주배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일부터 1년간 내국인(당해 채권의 인수기관 제외)이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외국감독기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공시의무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시행)

—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완료시 그 구체적 내역을 공시토록 의무화

나. 유통시장

○ 전환가액 조정기준의 마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시행)

— 과도한 주가 희석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가액 조정기준을 마련

-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조정사유·조정시기·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
- 전환가액의 최대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30% 이내

- * 다만,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 조정 가능

○ 자기사채의 매입 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대주주 등에 대한 변칙적인 신주인수권 부여를 막기 위하여, 자기사채 매입을 제한
 -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 * 사채발행일부터 사채만기의 1/3 또는 1년중 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입제한

○ 채권장외거래 대상 제한규정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 대상 제한규정을 폐지
 - 사모사채에 대한 장외거래제한의 폐지로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장외거래 중개 등이 가능

○ RP거래 대상채권의 범위 조정 (증권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 시행)

- 대고객 RP거래 고객보호를 위하여 RP거래대상 회사채의 범위를 공모사채로 제한
 - 기관간 RP의 경우는 대상채권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RP매도시 적용수익률 변경 (증권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7/1 시행)

— 조건부채권 매수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RP 편입채권에 대한 평가를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대신 복수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한 수익률을 적용

- 기존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

○ 「소매채권매매」의 개념 정의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2/18 개정 · 시행)

— 당일결제 허용대상인 「소매채권매매」는 개인 및 법인세법시행령 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정함.

○ 채권장의거래의 결제일 변경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2/18 개정, 2003/6/1 시행)

— 관행화된 당일 결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장의거래 결제일을 「T+0~T+14일」에서 「T+1~T+30일」로 변경

- 다만, 결제일 변경에 따른 전산정비 및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소매채권매매 및 MMF의 채권거래는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중 신규 지정신청 금융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시장조성채권 보유요건(지정신청전 6월간 평균 200억원 이상)은 폐지하고, 채권딜링부서의 시장조성자금의 최저금액을 신설

- 채권전문딜러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요건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딜러 지정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경우, 지정취소사유 해소 및 시장조성여력의 확보여부를 재지정 요건으로 설정

-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딜러의 시장조성채권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규정 중 변경일 3영업일전 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직전 영업일로 제한완화

- 시장조성의무를 채권전문딜러 규모에 따라 차등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딜러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딜러로 구분하고 대형딜러에게는 시장조성채권 보유규모를 확대하는 반면, 소형딜러에게는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시장조성실적도 딜러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달러의 시장조성능력은 RP시장 등 채권 및 자금조달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조성채권의 보유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을 감안

<규모별 시장조성채권 규모 및 시장조성실적>

	시장조성채권		시장조성실적
기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200억원 이상		채권전문달러 최상위자 실적의 10% 이상
개정	총자산(직전사업연도말)	시장조성채권(억)	총시장조성실적의
	소형 : 5,000억원 미만	100억원	1.0% 이상
	중형 : 5,000억원~1조원	200억원	1.5% 이상
	대형 : 1조원 이상	300억원	2.5% 이상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의무 이행여부를 지정취소 사유에 신설

○ 채권전문딜러 지정취소 사유 등의 평가시기 조정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 2002/12/18 개정, 2003년 상반기부터 적용)

-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 사실확인 등 평가의 충실을 위하여 기존에 매년 1월 및 7월로 되어 있는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 여부 등의 평가시기를 반기 경과후 60일 이내로 조정

- 거래소와 회원간의 결제시 회원별 차감결제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19 개정, 1/21 시행)
 - 회원간 합병후 통합 회원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되어 회원별 차감결제가 곤란한 경우, 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권지급의무자의 결제전 반대매매 제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지급의무자가 매수한 기초주식은 주식옵션시장에서 결제될 주식이므로 주식옵션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위하여 결제전의 반대매매를 제한

- 주권수령권리자의 결제전 반대매도 허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시장에서 call option 매수 등의 사유로 주권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경우,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일 이전 취득예정 주권의 매도를 허용

- 주권수령권리자의 결제대용증 납부 허용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수령권리자가 기초주식을 결제일 전에 매도했으나 결제일에 상대방으로부터 기초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발행한 결제대용증으로 납부 가능

- 취득예정 주권을 매도하였으나 취득할 주권에 같음하여 옵션시장에서 발행된 결제대용증으로 수령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도 결제대용증에 의한 결제를 허용

○ 주권지급의무자의 증거금 관리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거래 결제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100% 징수를 의무화
- 주식매수계약 체결시 당해 위탁증거금은 선물·옵션계좌로의 이체를 허용
 - 현물계좌에서 기초주권 결제자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위탁증거금을 선물·옵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별도 관리하게 되므로 결제의 확실성이 보장됨.

○ 미수위탁자에 대한 증권 및 대금 인출제한 완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미수가 있는 위탁자계좌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제한되나, 옵션결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
 - 옵션시장에서의 결제를 위한 주권의 인출
 - 옵션시장에서 취득예정인 주권을 매도한 경우 당해 매도대금의 선물·옵션계좌로의 이체

- 주식차익거래시 직전가 미만 매도제한(up-tick) 적용제외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차익거래의 경우 신속한 균형가격 형성을 위하여, 직전가 미만 매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시장대리인 관련규정 삭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1/25 개정, 2/1 시행)
 - 시장대리인의 등록,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 조항 삭제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전면 전산화됨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시장대리인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위탁매매 수용을 위한 호가구분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위탁매매체제를 구축하여 비딜러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호가제한을 완화
 - 위탁매매를 위한 호가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중 회사채 지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4 개정, 2/25 시행)
 - 회사채의 경우 거래대상채권은 미상환액면총액 2,000억원 이상, 신용평가등급 AAA이상인 종목

○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 및 환매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4 개정, 2/25 시행)

- 거래기간 : 1일, 3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의 8개 종류
- 거래기간별 환매일 : 매매대금 결제일부터 기산하여 2일째, 4일째, 8일째, 15일째,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 되는 날

○ 환매채거래의 호가수량단위 등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4 개정, 2/25 시행)

- 호가수량단위 : 매매대금 1만원
- 호가가격단위 : 소수점 둘째자리의 환매이자율
- 매매수량단위 : 액면 50억원

○ 환매채거래시 채권의 교환 및 대체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14 개정, 2/25 시행)

- 채권의 교환
 - 매수자는 교환사유 발생일의 13시까지 채권의 교환을 신청하고, 매도자는 14시까지 교환채권을 지정하여 신고
 - 당일의 13시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매매거래일의 13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환채권의 평가방법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 채권의 대체
 - 매도자는 당일 13시까지 채권의 대체를 신청하고, 매수자는 14시까지 동의여부를 통보
 - 채권의 대체는 매매계약별로 1회에 한하며, 대체채권의 평가방법은 매매채권의 평가방법을 준용

- 채권장외거래내역의 보고시한 연장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채권장외거래내역의 보고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의 실효성 및 현실성을 제고
 - 5분 이내 → 15분 이내

- 통화안정증권 364일물 최종호가수익률 산출방법 명시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2002/11/12 개정, 12/1 시행)
 -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 산정기준 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된 결제기준수익률을 통화안정증권 364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로 간주
 - 통화안정증권선물의 선물거래소 상장(2002/12/6)에 따른 증권업협회의 결제기준수익률 제공과 관련한 공시수익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

3. 선물·옵션시장

- 주식옵션시장 개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4 개정·시행)
 - 외국인의 call option 권리행사 또는 put option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한도초과를 허용
 - 한도초과분은 권리행사일 익일까지 처분을 의무화

— 주식옵션 결제용 한도초과 주식매수 허용

- 주식옵션의 put option 권리행사 또는 call option 권리행사 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한도에 불구하고 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익일까지 인도할 주식의 취득을 허용

○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을 10주로 변경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2/7/26 개정, 8/9 시행)

—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을 주식시장의 매매수량단위인 10주로 일원화 함으로써 주식·옵션간의 연계거래 및 세밀한 투자전략이 용이하도록 개선

- 종래에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은 기초주권별로 1계약 금액의 크기가 유사하도록 시장개설 당시 기초주권의 가격수준(10만원 기준)에 따라 10주와 100주로 이원화
 - * 10만원 이상(10주) : 삼성전자·SK텔레콤 및 포스코
 - * 10만원 미만(100주) : 국민은행·KT·현대자동차 및 한국전력

○ 관리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의 접속매매방식 허용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2/7/26 개정, 8/9 시행)

— 관리종목 주식옵션에 대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단일가매매외에 접속매매방식도 가능하도록 추가

- 종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옵션의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이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물시장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도모

○ 전산주문표 출력의무 완화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2/7/26 개정,
8/9 시행)

— 회원의 업무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문내용 및 주문입력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주문표 출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회원이 전화·팩스 등으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주문내용을 기재한 전산주문표를 출력하도록 하는 불편을 제거

○ 주식옵션대상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신설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2 개정, 1/28 시행)

— 상장주권 중 유통주식수 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수 1만명 이상, 연간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주식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다음의 7개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으로 선정

- 국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 호가가격단위 신설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2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의 가격은 기초주권 및 옵션종목별로 가격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호가가격단위를 세분화하되, 호가가격의 1% 수준으로 규정

호가가격의 수준	호가가격단위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2 개정, 1/28 시행)

- 기초주권의 거래폭주, 풍문,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옵션거래도 함께 중단하여 주식현물과 주식옵션간 일체적 시장관리를 도모

○ 관리종목 주식옵션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 규정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2 개정, 1/28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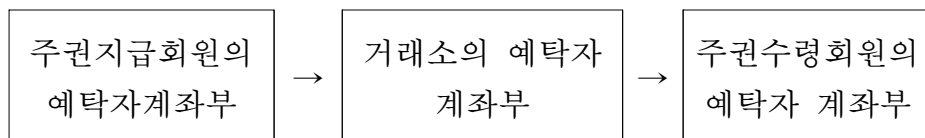
- 최초약정가격 결정시에는 60분으로 하고,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단일가호가를 접수하고, 최종약정가격의 결정시에는 15시부터 15분간 단일가호가를 접수

○ 계좌대체위임계약과 중복되는 기술적 사항의 삭제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2/7 개정·시행)

- 주식옵션권리행사주권의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과 거래소와 증권예탁원간 체결된 「주식옵션권리행사주권의 결제를 위한 계좌대체 위임계약」 간 중복되는 사항 삭제

- 예탁자계좌부간 대체업무는 증권예탁원이 수행



- 증권예탁원은 거래소가 대체시기를 통보시 즉시 대체

- 증권예탁원은 대체전산시스템(SAFE시스템)을 통하여 대체결과를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고, 거래소는 증권거래세 징수에 필요한 주권양도의 권리행사·배정대금을 증권예탁원에 통지

○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관리종목 주식옵션 제외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9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의 매매체결방법이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행 30분간격의 단일가매매 대상인 관리종목 주식옵션과 정리매매종목 주식옵션중 관리종목주식옵션을 제외

○ 기초주권수량의 변경근거 삭제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9 시행)

- 10주와 100주로 이원화된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이 10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를 전제로 한 기초주권수량의 변경근거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 기초주권수량에 따라 500원(100주)과 5,000원(10주)으로 이원화한 주식옵션의 자동권리행사기준을 5,000원으로 일원화
 - 기초주권수량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도 10주의 기초주권수량을 기준으로 일원화

○ 전산주문표 이용방법 정비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9 시행)

- 전산주문표를 출력하지 아니하고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회원선물·옵션시스템에 입력된 주문내용 등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제나 출력할 수 있도록 명시

○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 마련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8/21 개정, 9/2 시행)

—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을 주가지수옵션과 동일하게 기초주권가격 15% 변동시의 이론가격으로 하되, 거래소가 설정하도록 함.

※ 종전에는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의 설정여부 및 그 설정폭을 회원이 자율적으로 설정

- 호가최고한도가격 : 기초주권가격 15% 상승시 주식콜옵션이론가격, 기초주권가격 15% 하락시 주식풋옵션이론가격
- 호가최저한도가격 : 기초주권가격 15% 하락시 주식콜옵션이론가격, 기초주권가격 15% 상승시 주식풋옵션이론가격

○ 상장지수펀드의 대응증권 지정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펀드시장이 개설될 경우 상장지수펀드의 보유자가 이를 선물·옵션시장의 기본예탁금 또는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증권의 범위에 상장지수펀드를 추가

○ 상장지수펀드의 대응가격 산출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펀드는 상장주식과 매매방법이 동일하므로 대응가격의 산출시기 및 적용기간, 산출방법,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등의 경우에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

○ 선물·옵션거래 설명서의 통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24 개정, 1/28 시행)

— 선물거래설명서 및 옵션거래설명서를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로 통합

- 선물거래설명서 및 옵션거래설명서의 내용중 중복된 내용이 있고,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가 같은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로 통합

4. 증권예탁·결제

○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의한 예탁 근거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2/18 개정·시행)

—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주권교부 대신 예탁계좌로 대행예탁한 경우, 당해 예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 인정

○ 거래소 주식옵션시장 결제를 위한 계좌대체 처리방법 명시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3/8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로부터 결제자료의 통지를 계좌대체 청구로 간주

- 결제자료의 통지시한은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토요일은 제외)

- 계좌대체의 제한사유에서 채권장외거래결제를 제외 (유가증권예탁 및
 -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7/24 개정, 8/1 시행)
 - 예탁채권의 권리행사를 위한 계좌대체 제한사유에서 채권장외거래
의 결제를 제외하여 원리금지급개시일전 2영업일 동안에도 제한 없
이 채권의 계좌대체가 가능

-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자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자를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
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등 증권
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로 명시

- 상장지수증권 예탁계좌 운영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는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도를 위한 전용계좌(상장지수증권 예탁계좌)를
운영하도록 함.

- 위탁회사의 예탁원 통보사항을 명시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상장지수
증권 청약·환매업무를 처리할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수탁회
사, 판매회사 등 관련참가자를 예탁원에 통보하도록 함.

○ 상장지수증권의 청약·환매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는 예탁원에 청약·환매청구내역을 통보하고, 예탁원은 동 내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위탁회사에 청약·환매를 청구하도록 명시

- 지정판매회사는 판매회사의 청구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는 지정판매회사의 청구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예탁원은 동 내역을 관련참가자에게 통보 의무화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는 청약·환매에 따라 납입·제출하여야 할 유가증권을 본인의 상장지수증권예탁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함.

○ 상장지수증권의 예탁·반환 제한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분배금 지급 등 권리행사의 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로 하여금 이를 예탁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예탁을 제한
- 상장지수증권의 청약을 위하여 납입된 주식 및 환매를 청구한 상장지수증권은 반환을 제한

○ 상장지수증권의 예탁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신설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예탁수수료 : 최초 발행가액 10,000원 기준

- 5,000만주(좌) 이하 : 1주(좌)당 0.0015원
 - 5,000만주(좌) 초과~1억주(좌) 이하 : 75,000원+5,000만주(좌) 초과분은 1주(좌)당 0.001원
 - 1억주(좌) 초과 : 125,000원+1억주(좌) 초과분은 1주(좌)당 0.0005원
- 증권회사수수료 : 0.32/10,000 (주식과 동일)

○ 「의무보호예수」의 정의 신설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2002/3/4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뢰인이 의무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제한하도록 한 보호예수
 - 의무보호예수는 봉합보호예수로 관리

○ 의무보호예수의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방법 등 명시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2002/3/4 개정·시행)

- 보호예수되는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예탁원과 별도의 반환제한약정을 체결
- 보호예수의뢰인의 청구시 의무보호예수증명서를 교부
- 보호예수의뢰인이 반환제한기간 중 반환청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호예수대상을 단기금융상품으로 확대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2002/4/15 개정·시행)

- 보호예수 대상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외에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확대

- 단기금융상품 및 출자증권의 보호예수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2002/4/15 개정 · 시행)
 -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채권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 채권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은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지급액) 10,000원당 0.01원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대해 주식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 주식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은 매일의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을 1주로 하여 1주당 0.01원

- 의무보호예수 처리근거의 구체적 명시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3/4 개정 · 시행)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등

- HTS 일중거래에 대한 결제방식의 예외인정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2/4/15 개정 · 시행)
 - HTS에 의한 일중거래(결제전 매매거래)에 대하여, 외국보관기관과 외국증권회사간의 기관결제방식(총량결제) 대신 당해 증권시장의 결제기구를 통한 시장결제방식(차감결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

- HTS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처리방법 통지의 예외인정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2/4/15 개정 · 시행)
 - HTS거래에 대하여 매 결제지시마다 매수대금 지급방법 및 매도대금 처리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등록서식에 의한 계좌개설신청의 근거 신설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2/7/24 개정 · 시행)

— 계좌개설 신청업무를 통합등록서식인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향후 해당 등록서식은 담당부서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대응이 가능

○ 「계좌설정계약서」의 폐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2002/7/24 개정 · 시행)

— 규정 별지 서식인 「계좌설정신청서」를 삭제하고, 통합서식인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에 반영

○ 대차거래 주식의 거래기간 연장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5/31 개정, 6/3 시행)

— 주식의 대차거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대차거래 참가자의 자격요건 완화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5/31 개정, 6/3 시행)

— 비예탁자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를 허용

○ 비예탁자인 참가자의 담보제공방법 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5/31 개정, 6/3 시행)

— 예탁자계좌부상 담보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제한

○ 대여자가 담보권자인 맞춤거래의 담보관리방법 명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5/31
개정, 6/3 시행)

- 증권예탁원이 담보권자인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담보관리방법을 준용
- 담보부족분 제공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9/27
개정, 10/1 시행)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상장지수수익증권을 추가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대차거래기간은 주식과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0좌로 함.
- 차입한 상장지수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한 분배금은 예탁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

○ 「지정거래」의 신설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11/28 개정, 12/2 시행)

- 지정거래의 정의
 -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예탁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 지정거래 체결방법
 - 지정거래는 참가자간 합의한 종목·수량·대차수수료를 등의 조건에 의함.

— 담보관리

- 담보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고, 담보권자를 예탁원으로 함.

— 상환연기 및 예탁원의 대이행책임

- 지정거래의 경우에도 차입자가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시 예탁원이 대이행책임을 지도록 명시

○ 맞춤거래 제도 개선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2002/11/28 개정, 12/2 시행)

- 맞춤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차입자의 담보제공 의무 면제 가능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시 대여자는 담보물의 자기계좌로의 대체 또는 시장에서의 처분을 예탁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 증권대행업무 대상유가증권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증권대행업무 대상유가증권에 상장지수수익증권을 추가

○ 증권대행업무의 내용 추가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증권대행업무의 내용(종류)에 수익증권원부 관리업무를 추가
 - 주주명부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익증권원부관리에 준용

- 수익증권 발행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신설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10/1 시행)
 -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
 - 주식의 경우를 준용하되, 기본수수료를 투자신탁별로 산정

- 업무취급시간 변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2002/6/27 개정, 7/1 시행)
 - 토요일을 업무의 취급시간에서 제외
 - 업무취급시간 : A.M. 9시 ~ P.M. 5시

- 기관간 Repo 대상채권 제한 삭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17 개정, 7/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 중 제한되는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에만 적용

- 매입채권 시가평가방법 변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6/17 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액면 1만원 당 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산출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 참가자의 자격 및 담보범위 명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2002/8/28 제정, 9/1 시행)
 -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로 한정

- 담보는 현금 또는 예탁대상유가증권 중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및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채권으로 명시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방법 명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2002/8/28 제정, 9/1 시행)

- 참가자의 담보관리자료 제출에 의하여 담보관리조건을 확정하고 담보관리업무를 개시
-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은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하고, 현금은 예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 현금담보는 예탁원이 보관·운용하며, 그 운용이자는 담보설정자에게 지급
- 예탁원은 담보관리내역을 기재한 담보관리부를 작성·비치
- 유가증권담보의 가격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자의 담보대체 및 담보권자의 요청에 의한 담보교환을 인정
- 담보설정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해 담보를 담보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이체
- 예탁원의 담보관리업무는 담보관리기간 만료 및 참가자의 담보관리 종료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유가증권담보의 시가평가 및 일일정산 방법 명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2002/8/28 제정, 9/1 시행)

- 예탁원은 유가증권담보에 대하여 매영업일 주식은 시장종가로, 채권은 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으로 평가

- 예탁원은 시가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추가담보의 설정을 요구하거나 초과담보를 해지하여 반환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조건의 변경방법 명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2002/8/28 제정, 9/1 시행)
 - 예탁원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자는 상대방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담보 관리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투자일임계약재산의 계산업무 등 수탁근거 명시
(증권예탁원 일반사무 수탁 업무규정 : 2002/4/15 개정 · 시행)
 - 투자자문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일임계약재산의 계산업무 등을 수탁 하는 경우에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계산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

5. 기업공시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 신고 의무화 (증권거래법 : 2002/12/2 입법예고)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 등이 현금배당 시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 해외 원주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신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해외 원주상장법인에 대하여 수시공시에 해당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신설

- 외국증시에 상장을 하기로 한 때, 상장된 때 및 상장이 폐지된 때
- 공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은 때
- 기타 외국증시에서 공시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때 등

○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에 부동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보완
 - 기존 사업보고서의 사업내용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6개 업종

○ 공시절차의 간소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 ·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신고절차를 간소화
 -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가능시점 및 행사기간 종료시점에 각각 1회의 처분신고서 및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내용을 공시

○ 주요경영사항의 항목 추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을 추가

- 공정공시제도 도입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기업의 주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시장참가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를 신설
 - 공정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정보제공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및 신고시한을 명시
 - 자회사와 관련된 지주회사에 대해 공정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공시와 수시공시 중복시 수시공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방법의 특례를 명시
 - 보도목적의 취재, 변호사 등 관련법률상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정보의 선별제공시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를 규정
 - 공정공시의무는 법규상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
 - 공정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한 공시불이행 관련사항 추가
 - 공정공시의무 이행 실태 점검 근거 마련
 -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공정공시는 불성실공시 적용제외 가능
 - 기업설명회(IR)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를 부과
 - 공정공시의 경우에는 공시거부·유보 및 공시문안 조정 대상에서 제외

- 공시의무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 확충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및 자본전액(지주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75% 이상) 잠식의 경우 당일에 공시

- 관리종목의 조회공시제도 개선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2002/9/16 시행)
 —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대상에 관리종목을 포함

- 익일공시 사항 추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2002/9/16 시행)
 —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완료한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를 익일공시사항에 추가

- 공정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방법 명시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은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등과 신고서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의 점검은 사업보고서등만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점을 보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 명시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2002/9/18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지정일 익일 1일간」에서 「지정일 당일 1일간」으로 변경
 - 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간으로 명시

○ 공정공시의 의무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정보공시대상자에게 공정공시규제 대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명시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의 범위 명시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당해 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직원(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의미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의 대상자 명시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외국증권회사 등의 국내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과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 기관투자자(외국의 기관투자자 포함) 및 그 임·직원
-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기관 및 그 임·직원(외국의 언론기관 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자

○ 공정공시의 의무사항 공시방법 및 신고방법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정보제공전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 공정공시 사항은 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내용의 분량이 과다한 경우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 원문 및 요약자료 게시가능

○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협회등록법인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입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등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사항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당해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시장조치의 면제가 가능

○ 공정공시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장조치를 함에 있어 여타의 공시의무 위반과 병합조치하되, 종래 기준 적용시 등록취소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조치기준을 완화

- 공정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 2회를 1회로 완화하여 적용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공시 의무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완료시 그 구체적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외국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뿐만 아니라 그 발행을 완료한 때에도 공시하도록 개선

○ 주식매수선택권관련 공시의무 추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인 때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결정 이외에 그 구체적 행사내역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개선

○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포함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계열회사를 최대주주등에 포함하여 협회등록법인과 계열회사간의 거래관계가 익일까지 신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주주도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포함

- 종래에 협회등록법인과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등록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익일 신고사항에서 배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제도 규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11/1 시행)

-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후 재개시 장중 동시호가 처리가 되지 않던 전산상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재개하도록 함.

○ 미확정공시 의무재공시 시한의 신축적 운영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9/13 개정, 9/16 시행)

- 미확정공시의 경우 매 1월마다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하나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당해 협회등록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최대주주 변경시 공시기간 단축 등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최대주주 변경시 및 협회등록법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공시기간을 단축
 - 익일 → 당일

○ 수시공시의무 확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도 공시신고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수시공시의무사항을 확대

○ 조회공시 대상 등 명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2002/12/13 개정,
2003/4/1 시행)

-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기업의 공시책임자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풍문 또는 보도가 조회공시의 대상임을 명확화
- 주가 및 거래량 급변과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의 근거를 마련
 - 등록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제도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 · 시행)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당일공시신고사항으로 한정
 - 공시사항 신고를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까지 하면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물리적으로 공시가 불가능한 때에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한 것임.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강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 세칙 : 2002/4/25 개정 · 시행)

-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증권제도의 적시적 수용이 가능한 공시 인적자원의 육성·유지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연단위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

○ 공시사항 신고방법상 개선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9/16 시행)

- 전자공시시스템 전체의 장애 이외의 경우에도 접수마감, 비밀번호 분실 등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서면(FAX 포함)제출을 신고방법으로 인정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서면제출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 공정공시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기준 마련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11/1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공시신고를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까지 하는 경우, 이를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의 범위에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신고도 포함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협회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및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행실태의 추가적 점검을 허용.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방식에 의한 거래재개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9/13 개정, 11/1시행)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당해 공시시점부터 6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명시

- 은행관리 등, 영업양수·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배정비율이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사항
- 주당배당비율이 20%이상인 주식배당, 주식교환·이전, 기타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당해 공시시점이 당일 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 개시시간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해 풍문 등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6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명시

- 조회결과의 공시 후에도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 가능

○ 최대주주 변경시 정보공시 내용 확대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변경된 경우 포함)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공시의 내용을 확대

- 인수자에 대한 정보, 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인수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주주에 대한 대책,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신설

○ 매매거래정지 사유 신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시행)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당해 공시시점부터 6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
 - 협회는 인수자 정보 등이 충분히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동 정보가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추가로 신고를 요구하며,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상세 공시시점 기준 60분간으로 명시

○ 제3시장 공시위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시행)

-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의 경우에는 즉시 지정취소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수시·정기·조회공시)에는 지정취소

○ 최대주주 변경공시 의무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2/7/1 개정·시행)

- 제3시장에도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판단에 편의 제공
 - 종전에는 제3시장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신생기업으로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의무공시에서 제외

II.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영업·상품규제

- 유가증권의 지정 확대 (증권거래법 : 2002/12/2 입법예고)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 확대
(증권거래법 : 2002/12/2 입법예고)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을 현행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또는 수익증권에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허용

- 매매중개 증권회사의 거래대상 확대 (증권거래법 : 2002/12/2 입법예고)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을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허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개정, 7/1 시행)
 - 3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통해 겸영업무의 범위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추가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는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및 선물시장 밖에서 행하는 통화·유가증권 또는 통화·유가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2/8/12 개정·시행)

— 증권회사에 대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형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상대방 범위 등을 명시

- 동 거래업무는 외국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방법에 의하여야 함.
- 동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증권회사로 한정
- 동 거래의 상대방은 법인세법시행령 61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임.

○ 증권회사 임직원의 장기증권저축계좌에서의 주식거래 자동승인

(증권업 감독규정 : 2002/2/27 개정·시행)

— 장기증권저축에 증권회사 임직원이 가입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증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상 허용된 주식 등 거래 외의 거래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2/3/20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및 애널리스트 등이 자신이 추천한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공시 (2002/5/1 시행)

-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관계 범위, 공시내용 · 방법은 증권업협회가 규정

- 증권회사 및 애널리스트 등이 특정종목의 투자권유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대차거래의 중개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중개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 폐지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을 부수업무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간접중개방법을 특정 당사자간의 중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

○ 비거주 외국인간 대차거래시 담보의 동시이행의무 면제

(증권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직접중개에 의하여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의 동시이행 의무 면제
 -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의 대차거래시장 참여를 확대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내용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 · 시행)

-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 ·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 · 계약기간 중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등을 포함
- 위험고지문서에는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위험 등을 포함

○ Due-Diligence 과정의 기업과 주간사의 책임성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명시
 - 제공시기 및 회수, 게시기간, 대표이사의 주간사에 대한 확인서 제출 등은 세칙에 위임

○ Due-Diligence 과정의 기업과 등록주선인의 책임 강화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2002/12/16 개정 · 시행)

- 등록예정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등록주선인에 제출하는 재무상황 자료가 진실하고도 정확한 방법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등록예정법인의 책임을 강화

- 대표이사 등의 등록주선인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등록주선인이 등록을 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등록주선인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등록일로부터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2년간 게시 의무화, 위반시 코스닥시장지 등에 게재
- 유가증권 분석의 자율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분석기준을 폐지하고, 분석결과와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는 주간사회사·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의 분석이 자율화됨에 따라 부실분석 제재규정도 삭제
- 공모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요예측의무 면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공모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방식이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원칙적으로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

○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 폐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간사회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 절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공시토록 하여 자율규제기능을 강화

- 주간회사의 잘못된 가격결정에 대하여는 경제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의무를 엄격하게 운영

※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음

○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청약대행 증권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를 폐지하여 주간사회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다만, 소속시장의 전일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조성가격의 조정을 허용

○ 인수업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준칙 등 마련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관련법규의 제·개정으로 인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규범을 제정하고, 주의의무(Due-diligence)에 관한 구체적 모범규준
을 마련

- 인수업무에 관한 규제시스템을 negative system으로 전면 전환함
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2002/7/16

개정, 8/1 시행)

— 초과배정에 따른 공시방법, 배정한도 및 옵션행사기한 등 초과배정
옵션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공모예정물량의 15% 범위내, 발행일로부터 40일 이내 옵션행사 등

○ 신용거래 범위의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개념 및 신용거래 대상종목 등에 협회중개시장 거래주
식을 포함

○ 조사분석 담당자의 선관주의의무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와 조사분석담당자의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이해관계자
로부터의 부당한 이득의 수취를 금지

○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명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담당자가 기업금융 관련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

- 기업금융 관련부서(인수 및 법인영업부문, 고유재산 운용부문) 및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전 사전고지 금지

* 다만,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법감시 부서 사전경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동일 임원 관장금지

○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분석자료공표 제한 등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가 업무위탁 계약 등으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당해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법인
- 당해 증권회사를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위탁증권회사로 지정한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주간사 및 간사단으로 참여하여 모집·매출된 주식으로 상장일로부터 40일 미경과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기간 중에 있는 유가증권 발행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M&A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법인

— 이해관계 경미한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 사실의 고지 의무화

- 당해 증권회사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은 허용하되, 이해관계 사실의 고지를 의무화
 - * 당해 증권회사가 보증이나 배서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증권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

○ 지득정보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명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매매거래 금지
- 조사분석담당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 조사분석담당자의 담당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BW·EB)·개별주식옵션 등의 매매거래를 금지
 - 유가증권 매매거래 내역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의무 명시

- 공표전 조사분석자료의 사전심의 의무를 명시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에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전심의 의무를 부과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수립 및 운영할 것을 명시

-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의 게재의무 신설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7/16 개정, 8/1 시행)
 - 조사분석자료에 과거 1년간 당해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하여 공표 또는 제공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에 관해 게재할 것을 명시

- 투자권유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을 투자권유의 범위에 포함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되는 대상법인의 범위 조정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의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장 또는 등록(최초상장 또는 등록에 한함)을 위한 주간사계약 체결시점부터 적용

-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날로부터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상담계좌와 일반계좌의 보수지급률 차등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상담계좌에 대한 보수지급률이 일반계좌에 대한 보수지급률을 초과하도록 명시

○ 증권회사의 고객주문내용 자료 유지·보관의무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상 고객주문내용 자료에 대한 증권회사의 유지·보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분쟁 발생시에 투자자 보호

- 증권회사의 위탁내용 입증은 서면확인·녹음 기타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에도 동일 내용 삽입

○ 증권업감독규정상 통지조항을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등에 반영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간주사항에 반송계좌에 대한 통지간주사항과 거래가 저조한 소액계좌의 경우를 추가하여 통지의무를 구체화

※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간주사항을 추가

* 우편물이 3회 이상 반송된 계좌에 대하여 자료를 영업점에 비치한 경우

* 반기동안 매매거래 등이 없는 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료를 영업점에 비치한 경우

- 증권업감독규정상 통지조항을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에도 동일하게 반영

○ 계좌통합 요건에 인출 등 기타거래가 중단된 경우를 추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좌통합요건으로 매매거래 중단 외에 인출 등의 기타거래중단까지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반영

○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계좌설정 거부 및 수탁거부 신설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계좌개설의 거부를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마련하고, 계좌개설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
 -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미결제약정을 발생시키는 투기적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탁 거부 가능

○ 담보부족시 추가담보제공기간 조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은행권의 주5일 근무에 따라 「신용거래약관」상의 추가담보제공기간을 정비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 및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제외) 이내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방법 다원화 및 종목대체범위 제한 완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7/18 개정·시행)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약관」상 매도채권의 시가평가방법을 다원화하고, 종목대체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의 활성화를 유도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 •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가이상의 동일종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가이상의 채권

※ 채권시가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기업신용위험의 축소와 일일정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 보호에 대한 염려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른 조치

○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0/15 개정·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시장개설과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및 상장채권)에 「상장 및 협회등록 수익증권」을 추가

○ 대차거래의 차감정산사유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0/15 개정·시행)

- 파산 등의 사유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 사유로 인한 대차거래의 종료시 차감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계약자율성을 제고

○ 비거주자가 포함된 대차거래의 활성화 도모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0/15 개정 · 시행)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인 대차거래시 약관과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에 대한 자율성 제고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표5 신용거래약관」을 개정
 - 증권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차거래에 대한 자율성 제고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대차거래의 담보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 반환 또는 추가담보 제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표6 유가증권대차거래약관」을 개정

○ 증권저축계좌로 ECN 시장을 통한 매매 허용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 : 2002/3/28 개정,

2002/4/1 시행)

- 증권저축의 업무방법에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분기별 한도제 도입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 : 2002/3/28 개정, 2002/4/1 시행)
 - 저축금 납입시 단순히 연간 600만원 이하이었던 저축한도를 매분기
별 150만원 이하로 제한

나. 재무건전성규제

-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 2002/2/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증권회
사의 종속회사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함.
 - 연결기준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후 2~3년간 평가지표의 유효
성을 검증할 예정
- 영업보고서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보고기한 연장 및 공시방법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 2002/2/27 개정 · 시행)
 - 분기별 영업보고서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기한 : 30일 → 45일
 - 서면에 의한 제출 · 공시 외에 전자문서방식을 인정
-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2/2/27 개정 ·
시행)
 - 기존 모든 증권회사에 동일한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요건을 적용하였
으나 이를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인 경우 : 상환재원이나 금
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 200%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상환 허용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분기말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 유상증자등 중도상환하는 후순위차입금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에 의하여 대체될 것 •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 계약서상 채무자의 만기전 상환 가능조항 명시 또는 당사자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분기말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중도상환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잔존만기보다 길고 발행조건이 유리한 경우를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명문화 • 좌 동 • 좌 동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 불허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근거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권한 위임

(증권업 감독규정 :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경영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를 위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 · 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등 3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기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이어야 업무영위가능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 · 시행)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및 신용집중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을 허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을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의 산정기준을 마련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위험산정방법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 · 시행)

— 옵션위험 산정시 간편법과 델타플러스법외에 시나리오 분석법을 추가

- 은행의 시장리스크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에서도 옵션위험 산정시 시나리오 분석법 사용가능

- 델타플러스법 사용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 면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점을 감안, 사전신고 없이 자체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보고사항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자기자본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새로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지하도록 규제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의 위험산정방법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시행)
 - 수익증권의 시장위험액 산정방법을 준용하되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 MMF와 동일수준의 위험액(0.5%) 산정도 인정
 - 0.5% 수준의 위험액은 고객예탁금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현행 위험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험액과 같은 수준

-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 2002/7/18 개정·시행)
 -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매도금리선물거래를 허용하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액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액의 5%로 제한
 - ※ 신탁업·증권투자신탁업 모두 선물거래 허용 → 증거금 합계액 : 15% 이내, MMF : 약관으로 5% 이내에서 운영

○ 외국환포지션관련 관리대상회사의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시행)

— 장외외환과생금융 거래를 취급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를 외국환포지션관련 관리대상회사로 명시

- 외국 회사 국내지점은 포함, 국내회사 해외점포는 제외
- 동 거래 미취급 및 외환시장 불참여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대로 간접관리

○ 외국환포지션 한도 설정 (증권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시행)

— 외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설정

- 은행, 종금과 동일하게 설정
-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은행에 비해 작기 때문에 외국환포지션한도 절대규모는 크지 않음.

—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이월잉여금 환리스크 헤지 등 필요시 별도한도 인정 가능

○ 외국환포지션 한도 관리내용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일별한도 확인이 원칙이며, 한도위반시 보고의무와 일별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신설

○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 11/1 시행)

- 매영업일 외국환포지션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
 - 자기자본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제재면제 가능
- 보고시스템 구축 및 보고요령 습득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따른 제재를 3개월 유예

위 반 횟 수	제 재 내 용
과거 1년간 1회 위반	주 의
과거 1년간 2회 위반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 일수만큼 한도에서 감축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한도감축 금액을 2배로 함

○ 증권사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을 경영실태 계량평가 대상에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 2002/8/21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본점에 대한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마련

○ ETF 설정 및 환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방안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 2002/10/2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ETF의 환매 청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인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한도초과분은 처분을 의무화
- 한도초과시 처분방법 및 절차 등
 -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종목 : KT 등 23개 종목

- 한도관리방법

-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 * 증권회사는 외국인의 ETF 현물설정 및 환매청구내역을 ID번호별로 구분하여 증권예탁원에 통보(T일)
 - * 증권예탁원은 이를 취합하여 금감원에 신고(T일)
 - * 금감원은 익일 ECN시장 종료 후 외국인 한도초과분을 체크하여 증권회사에 통보(T+1일)
 - *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계좌에 주식바스켓을 입고(증권회사는 환매자계좌에 주식바스켓 입고)하는 T+2일에 증권회사는 한도초과분 매도

- <한도초과시 외국인의 주식 처분의무수량>

- * 금감원에서 처분의무비율*과 외국인별 처분의무수량을 산정하여 종목별로 공시하고 증권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

$$\begin{aligned} \text{처분의무비율} &= (\text{외국인 전체 환매 취득분} - \text{설정시 현물납입분} \\ &\quad - \text{외국인 전체 한도여유분}) \div \text{외국인 전체 환매 취득분} \end{aligned}$$

- <증권회사의 매도의무>

- * 증권회사는 금감원이 산출한 처분대상 주식수량을 고객별로 계산·확인한 후 외국인에게 통보하고 증권회사의 책임으로 당일중 매도 의무화
 - * 처분수량 계산시 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10주) 미만 절사

- 증권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개편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3/20 개정·시행)
 - 부수업무 확대 및 신상품(개별주식옵션, ECN거래 등) 취급에 따라 증권회사의 표준계정과목을 개편
 - 개편된 계정과목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적용(2002. 4. 1)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의 충족여부를 위한 세부기준 신설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7/18 개정·시행)
 -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후선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 시나리오 방법에 의한 옵션위험의 세부 산정기준 신설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7/18 개정·시행)
 -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 변동율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함.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열거된 각 변동율을 상정하되 최저 7개 등간격 변동구간으로 설정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내부모형 허용근거 마련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7/18 개정·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을 정비한데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8/1 개정·시행)
 - 외국환포지션 산정 기준이 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 외국환포지션 한도 산정 등의 세부사항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8/1 개정·시행)
 - 외국환포지션 한도 등을 산정할 경우 적용환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
 -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통보하는 환율을 적용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8/1 개정·시행)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회사는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인정신청서 제출의 세부절차를 명시

- 해외점포의 경영실태 평가방법 명확화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8/21 개정·시행)
 - 증권업감독규정 2-31조 6항에 의한 증권사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가능

- 경영실태 계량평가자료 서식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8/21 개정·시행)
 - 기존의 증권회사 「해외점포 업무현황 보고서」 서식에 증권업 및 투자업, 은행업에 대한 계량평가자료 서식을 추가

- ETF 현물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시점 명시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10/2 개정·시행)
 -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시, ETF설정청구를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주식수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 기업지배구조 등

- 의결권행사여부의 기록·유지 및 공시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각 신탁재산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종업원 채용시 조회내용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채용예정자의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또는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조회내용에 추가

○ 징계퇴직자의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종업원이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고 동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 또는 인사관련규정에 의무적으로 명시

○ 직원의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마련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유가증권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이에 관한 승인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제도 도입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전문인력의 등록말소사유에 「증권회사가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

○ 전담투자상담사의 직명 사용제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전담투자상담사가 일반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직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부점장의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영업현장의 1차 통제자로서 금융사고 예방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 1년에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

-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교육이수 주기를 단축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2. 투자신탁회사

가. 영업·상품규제

- 협회중개시장에의 ETF 도입 (증권거래법 : 2002/12/2 입법예고)
 - 현재 증권거래소에만 허용되어 있는 수익증권 형태의 등록지수펀드 (ETF)를 협회중개시장에도 도입

- 상장지수 투자신탁제도의 도입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그 수익증권이 상장되는 상장지수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 투자신탁의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 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제도의 도입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투자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나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제도를 신규 도입
 - 간접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요건 신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2/9/26 개정 · 시행)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고,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 간접투자신탁 운용관련 사항 신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2/9/26 개정 · 시행)

- 간접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명시
- 다른 간접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간접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모집 및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등 위탁회사의 일정한 운용지시를 제한

○ 상장지수투자신탁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2/9/26 개정·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및 신탁재산의 자산가치를 공고하는 방법 등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요건 신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2/10/2 개정·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말함.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당해 지수의 시가총액 합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금감위의 승인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기준 설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2/10/2 개정·시행)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금감위의 승인 없이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곤란시 납입신탁금의 환급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2/10/2 개정·시행)

- 지정판매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인 자산상태로 환급 가능

나. 재무건전성규제

○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기한 연장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4/2 개정, 4/1시행)

- 현투증권(주)의 외자유치협상 진행으로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기한을 연장
 - 2002. 3. 31 → 2002. 9. 30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근거 명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5/1 개정·시행)

-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권한 위임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

○ CBO후순위채권의 편출입시 시가적용 예외인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CBO후순위채권을 편출입(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아닌 가격(투신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 가능
 - 종전에 CBO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사 고유재산과 시가로 편출입할 경우 CBO후순위채권의 원활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등 개선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MMF 만기와 국채 · 통안증권 만기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고 MMF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120일(국채 · 통안증권을 제외한 경우 90일)이내로 변경
 - 기업어음의 경우,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어음에 한하여 MMF에 편입 가능
 - ※ 시행일 현재 국채 · 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경과규정을 마련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대상에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함에 따라 국채·통안증권의 투자한도(MMF 자산의 50%)를 폐지

○ 유가증권의 옵션 위험액 산정방법 신설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동일종목의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그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마련

-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거래유형별 위험액 = 동일 거래유형의 미결제약정금액 합산금액

- * 거래유형 : 콜옵션매수,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풋옵션매도

- * 미결제약정금액 : 기초주권가격 × 기초주권수량 × 계약수량

-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

- 총위험액 = 주식콜옵션매수 및 주식풋옵션매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과 주식콜옵션매도 및 주식풋옵션매수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의 절대치

○ 신탁재산에 편입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명시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10/1 개정·시행)

-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 연계대출금 축소기한 연장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10/1 개정 · 시행)
 - 현대투자신탁운용 신탁재산의 연계대출금 축소기한을 2002. 9. 30에서 2003. 2. 28로 연장

- 부도채권 상각제도 개선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1 시행)
 -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을 상향 조정
 - 일반기업 : 50% → 80%
 - 워크아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 20% → 50%
 - ※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후 잔존가치보다 명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
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
 - 기초자산에 부실요인이 발생한 자산담보부증권은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명시

다. 기업지배구조 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Shadow Voting 의 무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안에서 합병 · 영업양도 · 임원임면 · 정관 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가능

-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결권행사 가능

○ 신탁재산의 의결권행사 관련 기록·유지의무 범위 등을 신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2/9/26 개정·시행)

- 위탁회사가 각 신탁재산에서 5%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3. 증권투자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및 최저순자산액 조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2/9/16 개정·시행)

- 설립자본금 : 4억원 → 1억원
- 최저순자산액 : 2억원 → 10억원

나. 영업·상품규제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의 도입 (증권투자회사법 : 2002/4/27 개정, 7/28시행)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주식이 상장되는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방법, 주식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2/9/16 개정·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환매방법 및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보유자산을 공고하는 방법 등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 요건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2/9/16 개정·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고,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 요건을 명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요건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2002/10/2 개정 · 시행)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말함.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당해 지수의 시가총액 합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정 곤란시 납입청약금의 환급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2002/10/2 개정 · 시행)

— 지정판매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인 자산상태로 환급 가능

다. 재무건전성규제

○ 간접증권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등을 설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2/9/16 개정·시행)

- 간접증권투자회사가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설정
- 간접증권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일정한 투자행위를 제한 하며,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합이 간접증권투자회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유가증권옵션의 위험액 산정방법 명시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2/8/1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

라. 기업지배구조 등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Shadow Voting 의 무 완화 (증권투자회사법 : 2002/4/27 개정, 7/28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가능

-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결권행사 가능

○ 의결권행사여부의 기록·유지 및 공시 (증권투자회사법 : 2002/4/27 개정, 7/28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관련 기록·유지의무 등 신설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2/9/16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총액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4. 선물회사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처벌 강화 (선물거래법 : 2002/8/26 개정 · 시행)

- 선물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하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선물거래법 95조의8(벌칙)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Ⅲ. 증권행정감독

1. 법적규제기관

○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

(증권거래법 : 2002/1/26개정, 2/1 시행)

—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선위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 등을 부여

-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영치 (영치권)
-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의 조사 (현장조사권)
- 혐의자 심문 (심문권)
- 물건의 압수 또는 사업장의 수색 (압수·수색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증권거래법 : 2002/4/27 개정·시행)

—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
 -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관련자 심문 등을 할 공무원의 범위 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 개정 · 시행)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증선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설치근거 마련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3/20 개정 · 시행)

-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의 관계자가 참여

- 증선위·금감원의 합동조사, 조사·심리기관간 공동조사 근거 마련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증선위 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조사협조 요청 가능
 - 금감원장은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선위 위원장에게 조사협조 요청
 -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강제조사, 합동조사 또는 공동조사 가능

- 조사원의 범위에 금감위의 조사공무원을 포함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사공무원과 감독원의 조사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직원

-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 명시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현장조사시 현장조사서 작성, 물건 영치시 입회인 참여, 영치조서 및 영치목록 작성 등의 절차 명시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지위 변경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3/20 개정·시행)
 -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증선위위원장 자문기구로 격상

- 검찰이첩조치의 단순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10/30 개정·시행)
 -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조치기준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의뢰조치는 폐지

- 감리위원회의 사전심의대상 명확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10/30 개정·시행)
 -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 증권거래법 관련사항인 경우 증권·선물 조사심의위원회 대신 감리위원회가 사전심의하도록 명시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표준양식 제정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2/10/30 개정·시행)
 - 종전 금감위규정으로 정하던 금융거래정보요구 양식을 재경부 고시에 의한 통일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위임검사 실시 방법 및 절차의 명시 등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관계법령 등에 의해 금감원장이 자율규제기관 등에 금융기관의 검사를 위임·위탁할 경우, 그 검사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명시
 - 금감원장은 타기관에 위임·위탁한 검사의 결과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의 일부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 검사결과 금감위 보고대상에서 현지조치사항을 제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금감위 보고내용으로는 사안이 경미하고, 검사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외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고발 등의 조치가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조치사항(주의, 시정 등)은 문책사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재심청구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 과태료·과징금 부과절차 명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명시

- 금전적 제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함.

○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계획 제출의무 완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2/5/15 개정·시행)

-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자체감사계획을 금감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
-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 적고 임점검사시 확인가능한 자체감사결과 보고의무를 폐지

○ 정보수집 의무부서의 확대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5/15 개정·시행)

- 종전에는 검사국에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의무부서를 금감원내의 유관부서 전체로 확대
- 금감원 직원 개인은 금융감독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 가능
- 검사총괄국에 체계적 정보관리의무를 부과

○ 검사총괄담당부서의 검사총괄기능 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5/15 개정·시행)

- 검사국의 검사실시에 대한 협의시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5/15 개정·시행)
 - 제재관련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청하던 참고인 출석요청을 동 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
 -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요청시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5/15
개정·시행)
 - 문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근로·고용계약 종료후 계약 연
장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적용
 - 계약직으로서 사실상 임원직무수행자(비등기임원)로 재고용하는
경우 포함

-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계획 요구사유의 명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02/5/15 개정·시행)
 - 금감원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계획 제출요구는 금융기관 자
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 실태파악 등 중요한 감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토록 명시

- 강제조사권의 발동요건 마련 (증권범죄 조사사무처리규정 : 2002/3/19
제정·시행)
 - 내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조
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중 정상적인 조사
를 방해하는 경우 강제조사권을 발동

- 압수·수색영장 발부절차 규정 (증권범죄 조사사무처리규정 : 2002/3/19 제정·시행)
 - 압수·수색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
 -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

- 권한남용 방지장치 마련 (증권범죄 조사사무처리규정 : 2002/3/19 제정·시행)
 -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관리대장 비치 등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규정

2. 자율규제기관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이상매매관련 자율규제기능 강화
(증권거래법 : 2002/1/26 개정, 2/1 시행)
 -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증권업협회에의 검사업무 위탁 허용 (증권거래법 : 2002/1/26 개정, 2/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 가능

○ 협회의 증권회사 지점 등에 대한 감사권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의 감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범위를 규정
 -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제정 및 준수여부 등
- 금융감독원장과 협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의 감사 완료시 결과보고의무 부여

○ 표준신탁약관 제정권의 협회 이관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금감위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이관
 -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도록 명령 가능

○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신설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2/8/1 개정 · 시행)

-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규정을 정비
 - 투자신탁협회의 표준신탁약관 제·개정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수익자의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음.

○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이관에 따른 규정정비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2002/7/26 개정, 8/1 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일 30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규정을 조정

○ 이상매매심리 및 회원감리의 대상·방법을 구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심 리	감 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에 의해 선정된 이상 매매혐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있는 거래등 · 가격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보도등이 있는 거래등 · 그밖에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거래의 수탁 - 매매거래 - 매매거래의 결제 - 그밖에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출석·진술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실시에 대한 사전통지 - 심리방법을 준용. 다만, 실지감리는 준용하지 않음

○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종전의 매매거래정지 등은 조치의 현실성 결여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제재금 부과중심의 조치로 전환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개선 및 시정요구 등의 근거 명시 및 병과조치 근거 마련
- 회원의 조치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등

○ 회원의 조치이행확보수단을 구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거래소의 조치요구에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한 회원에 대해 회원제재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

○ 규율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 및 임직원의 징계여부를 심의하는 규율위원회 심의대상에 회원경고·주의를 추가
 - 기존 규율위원회의 심의대상 : 매매거래 정지, 회원제재금 부과, 임직원 문책

○ 분쟁조정절차의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방법 개선
 - 조정처리기간(30일) 산정시 조정신청 보완기간 및 사실조사 기간을 배제
- 분쟁위원회 회부전 자체 종결처리사유의 추가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 분쟁조정외의 공표근거 강화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해없이 분쟁조정 내용의 공표 가능
- * 실명 공표시는 당사자의 양해절차 필요

○ 결제불이행관련 매매거래정지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 2002/9/27 개정, 9/30 시행)

- 매매거래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래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이 우려되고 그 규모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시장감시 구분의 변경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 · 시행)

- 시장주가감시, 기간주가감시 및 기타 주가감시로 구분
- 일별시장감시, 기간시장감시 및 기타시장감시로 구분

○ 심리·감리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의 요청방법 구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 · 시행)

- 자료의 제출요청은 자료제출요청서 또는 현지출장의 방법으로 하고, 출석 및 진술의 요청은 출석요청서에 의하도록 서식 등을 명시

○ 회원제재금의 부과절차 및 방법 구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시행)

- 회원제재금 부과는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의함.
 - 서식에는 회원제재금, 부과사유,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기재

○ 분쟁조정 신청방법의 다양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1 개정·시행)

-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조정신청 허용

○ 분쟁조정신청 접수시 당해 사실의 통지 의무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9/27 개정, 9/30 시행)

- 접수사실 및 담당자의 성명 등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

○ 호가입력시 주문자 식별정보의 확보 근거 마련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2003/1/2 시행)

- 호가입력시 주문입력방법에 따른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의 입력을 명시

주문입력방법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주문을 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단말기에 입력시	영업점 단말기 고유번호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컴퓨터를 통한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홈트레이딩)	IP 주소
기타 방법의 호가시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

※ 유선통신단말기(ARS)를 이용한 회원시스템 입력시는 제외

— 수탁확인사항에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추가

- 회원의 수탁시 확인사항에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IP주소, 기타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하는 고유번호를 포함시킴.

○ 일반 감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요건 중 기간을 최근 5일간 75% 이상 주가상승이 3일 연속에서 「2일 연속」으로 단축
- 시가기준종목이 상장 후 30일 미만시 그 경과한 기간중 최고주가 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일반 감리종목 해제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일정기간(3일) 경과 후 주가급등의 진정 또는 하락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해제

○ 우선주 감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요건 개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2차 이상 매매거래 정지의 요건에 1차 매매거래정지해제 후 최근의 주가상승률을 반영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 불공정거래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명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4 개정, 12/9 시행)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상 명확히 정하고 지급기준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

○ 전산장애의 범위 확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12/23 시행)

—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 외에 동시스템과 유사한 매매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도 전산장애의 범위에 포함

- 기계적 결함 외에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전산장애의 범위로 규정

○ 1회 호가수량한도 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12/17

개정, 2003/1/20 시행)

— 상장주식수(매도의 경우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 상장주식수의 5%(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재원 확대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신규등록(재등록)후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이전 비용을 징수하여 위원회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 상향조정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등은 조치의 현실성 결여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제재금 부과중심의 조치로 전환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회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과태료에서 회원제재금으로 용어변경

○ 회원의 조치이행확보수단을 구체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협회의 조치요구에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한 회원에 대해 회원제재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

○ 분쟁조정절차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2002/4/1 개정·시행)

—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방법 개선

- 조정처리기간 산정시 사실조사 소요기간을 배제

— 분쟁위원회 회부전 자체 종결처리사유의 추가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 분쟁조정내용의 공표근거 개선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해없이 분쟁조정 내용의 공표 가능

* 실명 공표시는 당사자의 양해절차 필요

- 심리·감리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의 요청방법 구체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시행)
 - 자료의 제출요청은 자료제출요청서 또는 현지출장의 방법으로 하고, 출석 및 진술의 요청은 출석요청서에 의하도록 서식 등을 명시

- 회원제재금의 부과절차 및 방법 구체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2/4/25 개정·시행)
 - 회원제재금 부과는 협회가 정한 서식에 의함.
 - 서식에는 회원제재금, 부과사유,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기재

- 주된 위법·부당행위의 적시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할 징계내역이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위법·부당행위를 적시하도록 의무화

- 직원의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마련 의무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유가증권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이에 관한 승인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IV.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 기업경영감시

○ 금감위에 감사종료보고서 통보의무를 부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2/8/12 개정·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금감위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명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2/6/19 개정·시행)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명시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의 범위 확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2/6/19 개정·시행)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완화
 - 종전에는 회계법인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었음.

○ 전자문서 제출 근거의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2/6/19 개정 · 시행)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활용과 공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지원 · 관리제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확대 (증권거래법 : 2002/1/26 개정, 2/1 시행)

-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 · 직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었음.

○ 스톡옵션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 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2/2/9 개정 · 시행)

-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를 정함.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 · 판매 법인 등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 자기주식 취득·처분제한 완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2/8/12 개정·시행)

- 자기주식을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지기간의 적용을 배제
 - 종전에는 자기주식 취득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을 금지

○ 자기사채의 매입 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시행)

- 대주주 등에 대한 변칙적인 신주인수권 부여를 막기 위하여, 자기사채 매입을 제한
 -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 * 사채발행일부터 사채만기의 1/3 또는 1년중 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입제한

○ 외국 기관투자자 등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절차 간소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4/4 개정·시행)

- 외국 증권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을 취득·처분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

- 면제대상은 기존의 국내 기관투자자 이외에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증권투자회사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가격의 범위 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8/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

- 종래에는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고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적용대상 확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정부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감위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 종전 자기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적용대상 : 상장법인 등이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V. 기업구조조정

1. 일반기업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2/1/26 개정, 4/1 시행)

- 30대 기업집단의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호출자제한·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사유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2/1/26 개정, 4/1 시행)

-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핵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규제에 대한 적용예외사유를 추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예외적 의결권행사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2/1/26 개정, 4/1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정)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행사 가능

○ 출자한도액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2/1/26 개정, 4/1 시행)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가능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의 연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2/1/26 개정, 4/1 시행)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
 - 2001년 3월말 → 2003년 3월말

2. 금융기관

○ 증권금융회사의 신탁업무 허용 (증권거래법 : 2002/1/26 개정, 2/1 시행)

- 예수한 고객예탁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신탁업무를 허용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업무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업무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의 상향조정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
 - 동일인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가능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 가능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적격성 심사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10%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그 적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해 초과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처분명령 가능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지주회사 등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범위안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함.

- 은행지주회사 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지주회사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금융거래정보 등 일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신용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는 그 임원중에서 1인 이상을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선임

- 과징금제도의 도입 등 (금융지주회사법 : 2002/4/27 개정, 7/28 시행)
 -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규 도입
 -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 10% 한도초과주주의 자격요건 마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초과보유요건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요건
 -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
 -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것으로서 당해 비금융주력자의 자본 총액 이내의 자금이어야 할 것 등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관리기능 명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2/8/21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으로 명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당해 은행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이내
-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 금융지주회사내의 신용정보공유에 따른 정보보호장치 마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2/8/21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 일정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는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제공처 등을 명시한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을 정하도록 함.
 - 정보의 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및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10%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 신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2/9/23 개정 · 시행)

- 신용불량자, 재무건전성비율 최저기준 미달 금융기관, 부채비율 200% 초과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보유를 불허
 -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 면제받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를 허용

○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요건 세부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2/9/23 개정 · 시행)

-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을 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회사 처분계획 구체화여부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설정
 - *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자
-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위의 전환계획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할 수 있게 함.
 - 전문기관은 기업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

○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2/9/23 개정 · 시행)

- 대주주발행주식중 비상장 · 비등록주식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등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0.5% 로 설정

- 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등 대주주를 불법거래가능성이 큰 대주주로 지정
- 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신용공여형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적용금리 등의 공시를 의무화

○ 금융지주회사등간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관련 감독사항 신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2/9/23 개정 · 시행)

-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정토록 되어 있는 업무지침서는 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위주로 작성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목적, 법적근거 등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

○ 자회사등간 거래시 적정담보확보 예외사항 추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2/9/23 개정 · 시행)

- 은행자회사가 카드자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내에서 제공한 초단기성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담보 확보의무 예외를 인정

○ 경영지도비율 및 가결산결과 보고서를 업무보고서에 포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9/26 개정 · 시행)

- 필요자기자본비율 · 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비율 및 가결산결과 보고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업무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9/26 개정·시행)
 - 업무보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정보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종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 준용기준 변경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2/9/26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종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던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을 동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 기타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 신설(10개), 개정(2개) 및 폐지(8개)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 령

1.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준비금제도의 폐지 (2002/1/26 개정, 2/1 시행)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던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영업용 순자본비율제도 등)가 정착됨에 따른 것임.
 - 현재 적립규모는 약 8,000억원 정도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이상매매관련 자율규제기능 강화 (2002/1/26 개정, 2/1 시행)
 -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 확대 (2002/1/26 개정, 2/1 시행)
 -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었음.

-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 (2002/1/26 개정, 2/1 시행)
 -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선위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 등을 부여
 -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영치 (영치권)
 -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의 조사 (현장조사권)
 - 혐의자 심문 (심문권)
 - 물건의 압수 또는 사업장의 수색 (압수·수색권)

- 증권업협회에의 검사업무 위탁 허용 (2002/1/26 개정, 2/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 가능

- 증권금융회사의 신탁업무 허용 (2002/1/26 개정, 2/1 시행)
 - 예수한 고객예탁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에 대해 신탁업무를 허용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의 신탁업무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업무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업무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2002/4/27 개정·시행)
 -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
 -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허용 (2002/2/9개정, 7/1 시행)
 - 3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통해 겸영업무의 범위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추가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는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및 선물시장 밖에서 행하는 통화·유가증권 또는 통화·유가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 협회의 증권회사 지점 등에 대한 감사권의 범위 (2002/2/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의 감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범위를 규정
 -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제정 및 준수여부 등
 - 금융감독원장과 협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의 감사 완료시 결과보고의무 부여

- 스톡옵션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 규정 (2002/2/9 개정 · 시행)
 -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를 정함.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판매 법인 등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 증권회사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2002/2/9 개정 · 시행)
 - 종전에는 증권회사가 거래소 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대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

-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2002/2/9 개정 · 시행)
 -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동 계좌를 통하여 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하게 됨.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관련자 심문 등을 할 공무원의 범위 규정
(2002/2/9 개정 · 시행)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증선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개정안]

- 유가증권의 지정 확대 (2002/12/2 입법예고)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거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

- 협회중개시장에의 ETF 도입 (2002/12/2 입법예고)
 - 현재 증권거래소에만 허용되어 있는 수익증권 형태의 등록지수펀드(ETF)를 협회중개시장에도 도입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 신고 의무화 (2002/12/2 입법예고)
 -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 등이 현금배당시 시가배당율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 확대 (2002/12/2 입법예고)
 - 증권회사가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대상을 현행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또는 수익증권에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허용

- 매매중개 증권회사의 거래대상 확대 (2002/12/2 입법예고)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거래대상을 기관투자자 등으로 확대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2002/8/1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형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상대방 범위 등을 명시
 - 동 거래업무는 외국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방법에 의하여야 함.
 - 동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증권회사로 한정
 - 동 거래의 상대방은 법인세법시행령 61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임.

- 공매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2002/8/12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공매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유가증권옵션을 포함

- 자기주식 취득·처분제한 완화 (2002/8/12 개정·시행)
 - 자기주식을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지기간의 적용을 배제
 - 종전에는 자기주식 취득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을 금지

- 금감위에 감사종료보고서 통보의무를 부과 (2002/8/12 개정·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금감위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개정안]

- 전자정보처리장치등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중개등의 매매가격 신설
(2002/12/2 입법예고)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의 변동을 이용한 매매중개를 허용

- 가격변동폭을 증가기준 $\pm 5\%$ 이내로 하고, 동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단축 (2002/12/2 입법예고)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시기를 체계적으로 정비

4. 증권투자신탁업법

○ 표준신탁약관 제정권의 협회 이관 (2002/4/27 개정, 7/28 시행)

- 금감위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이관
 -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도록 명령 가능

○ 의결권행사여부의 기록·유지 및 공시 (2002/4/27 개정, 7/28 시행)

-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각 신탁재산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기록·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Shadow Voting 의 무 완화 (2002/4/27 개정, 7/28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 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가능
 -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결권행사 가능

- 상장지수 투자신탁제도의 도입 (2002/4/27 개정, 7/28 시행)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그 수익증권이 상장되는 상장지수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 투자신탁의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 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제도의 도입 (2002/4/27 개정, 7/28 시행)
 - 투자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나 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제도를 신규 도입
 - 간접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요건 신설 (2002/9/26 개정 · 시행)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고,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 간접투자신탁 운용관련 사항 신설 (2002/9/26 개정 · 시행)
 - 간접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명시
 - 다른 간접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간접증권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모집 및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등 위탁회사의 일정한 운용지시를 제한

- 신탁재산의 의결권행사 관련 기록·유지의무 범위 등을 신설
(2002/9/26 개정 · 시행)
 - 위탁회사가 각 신탁재산에서 5%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영업보고서 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상장지수투자신탁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2002/9/26 개정·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및 신탁재산의 자산가치를 공고하는 방법 등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요건 신설 (2002/10/2 개정·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말함.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당해 지수의 시가총액 합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금감위의 승인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액기준 설정 (2002/10/2 개정·시행)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금감위의 승인 없이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 곤란시 납입신탁금의 환급

(2002/10/2 개정 · 시행)

- 지정판매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인 자산상태로 환급 가능

7. 증권투자회사법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Shadow Voting 의 무 완화 (2002/4/27 개정, 7/28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안에서 합병 · 영업양도 · 임원임면 · 정관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가능

-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다른 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결권행사 가능

○ 의결권행사여부의 기록 · 유지 및 공시 (2002/4/27 개정, 7/28시행)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등을 기록 · 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의 도입 (2002/4/27 개정, 7/28시행)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로서 그 주식이 상장되는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방법, 주식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 요건 신설 (2002/9/16 개정 ·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고, 일반인에게 적절히 공표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 요건을 명시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및 최저순자산액 조정
(2002/9/16 개정 · 시행)
 - 설립자본금 : 4억원 → 1억원
 - 최저순자산액 : 2억원 → 10억원

-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관련 기록·유지의무 등 신설
(2002/9/16 개정 ·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총액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간접증권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등을 설정 (2002/9/16 개정 · 시행)
 - 간접증권투자회사가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여야 하는 비율을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설정
 - 간접증권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일정한 투자행위를 제한 하며,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합이 간접증권투자회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2002/9/16 개정 ·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환매방법 및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보유자산을 공고하는 방법 등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9.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지수요건 신설 (2002/10/2 개정 · 시행)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수를 말함.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당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당해 지수의 시가총액 합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정 곤란시 납입청약금의 환급

(2002/10/2 개정 · 시행)

- 지정판매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인 자산상태로 환급 가능

10. 선물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처벌 강화 (2002/8/26 개정 · 시행)

- 선물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하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선물거래법 95조의8(벌칙)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11. 금융지주회사법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의 상향조정 (2002/4/27 개정, 7/28 시행)

-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
 - 동일인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가능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 가능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적격성 심사 (2002/4/27 개정, 7/28 시행)
 - 10%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그 적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해 초과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처분명령 가능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지주회사 등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범위안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지 못함.
 - 은행지주회사 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 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지주회사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은행지주회사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간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허용

(2002/4/27 개정, 7/28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금융거래정보 등 일정한 개인신용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신용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는 그 임원중에서 1인 이상을 신용정보관리인으로 선임

○ 과징금제도의 도입 등 (2002/4/27 개정, 7/28 시행)

—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규 도입

—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1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10% 한도초과주주의 자격요건 마련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초과보유요건 신설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요건
 -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것
 -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것으로서 당해 비금융주력자의 자본 총액 이내의 자금이어야 할 것 등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회사에 대한 관리기능 명시

(2002/8/21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으로 명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당해 은행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이내
-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 금융지주회사내의 신용정보공유에 따른 정보보호장치 마련

(2002/8/21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 일정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는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 제공처 등을 명시한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을 정하도록 함.

- 정보의 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및 본점 · 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2002/1/26 개정, 4/1 시행)

— 30대 기업집단의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호출자제한 · 출자총액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사유 확대 (2002/1/26 개정, 4/1 시행)

—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핵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규제에 대한 적용예외사유를 추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출자
- 공기업민영화대상회사의 인수를 위한 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예외적 의결권행사 허용

(2002/1/26 개정, 4/1 시행)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정)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

- 임원임면 · 정관변경 · 합병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행사 가능

○ 출자한도액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02/1/26 개정, 4/1 시행)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가능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의 연장

(2002/1/26 개정, 4/1 시행)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

- 2001년 3월말 → 2003년 3월말

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명시 (2002/6/19 개정 · 시행)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명시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의 범위 확대 (2002/6/19 개정 · 시행)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완화
 - 종전에는 회계법인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었음.

- 전자문서 제출 근거의 마련 (2002/6/19 개정 · 시행)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활용과 공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대상인 회사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15. 은행법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2002/4/27 개정, 7/28 시행)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
 - 동일인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 보유 가능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 가능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적격성 심사 (2002/4/27 개정, 7/28 시행)
 - 10%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그 적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해 초과보유한 은행주식의 처분명령 가능

-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 허용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의 타은행 주식 취득 허용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은 당해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25% 범위안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못함.
 - 은행이 대주주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 제한 (2002/4/27 개정, 7/28 시행)
 - 은행은 자기자본의 1% 범위안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필요

- 과징금제도의 도입 등 (2002/4/27 개정, 7/28 시행)
 -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규 도입
 -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16. 은행법 시행령

-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보완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상의 독립경영자 등을 제외하고, 주주 본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등을 포함

-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의 기준 신설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의 대주주의 범위에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단독주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이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등을 포함

-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 강화 (2002/8/21 개정·시행)
 -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 등이 아니어야 함.

- 이사회 사전 의결의 금액기준 신설 (2002/8/21 개정·시행)
 - 은행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을 마련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자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2002/8/21 개정 · 시행)

- 은행이 자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는 자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공모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금지기간 단축 (2002/4/4 개정·시행)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금지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
 - 사모발행시에는 전환·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이 1년

- 전환가액 조정기준의 마련 (2002/4/4 개정·시행)
 - 과도한 주가 희석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가액 조정기준을 마련
 -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조정사유·조정시기·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의무화
 - 전환가액의 최대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30% 이내
 - * 다만,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 조정 가능

- 「공모발행」의 인정기준 명시 (2002/4/4 개정·시행)
 - 전환권 등의 행사제한기간이 1월로 단축되는 「공모발행」 인정 기준을 명시
 - 국내에서 주주배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일부터 1년간 내국인(당해 채권의 인수기관 제외)이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외국감독기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자기사채의 매입 제한 (2002/4/4 개정 · 시행)

— 대주주 등에 대한 변칙적인 신주인수권 부여를 막기 위하여, 자기사채 매입을 제한

-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 사채발행일부터 사채만기의 1/3 또는 1년중 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입제한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공시의무화 (2002/4/4 개정 · 시행)

—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완료시 그 구체적 내역을 공시토록 의무화

○ 주권의 해외상장이 가능한 외국거래소의 지정 (2002/4/4 개정 · 시행)

—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등이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할 수 있는 외국거래소를 지정

- 외국거래소는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 적격거래소를 원용

* NYSE, Nasdaq, 아메리칸증권거래소(ASE),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9개 거래소)

- 필요시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추가지정

○ 해외 원주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신설 (2002/4/4 개정·시행)

- 해외 원주상장법인에 대하여 수시공시에 해당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신설
 - 외국증시에 상장을 하기로 한 때, 상장된 때 및 상장이 폐지된 때
 - 공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은 때
 - 기타 외국증시에서 공시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때 등

○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보완 (2002/4/4 개정·시행)

-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중 사업내용에 부동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보완
 - 기존 사업보고서의 사업내용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6개 업종

○ 공시절차의 간소화 (2002/4/4 개정·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신고절차를 간소화

-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가능시점 및 행사기간 종료시점에 각각 1회의 처분신고서 및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내용을 공시

○ 외국 기관투자자 등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절차 간소화 (2002/4/4 개정 · 시행)

- 외국 증권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을 취득·처분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
 - 면제대상은 기존의 국내 기관투자자 이외에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증권투자회사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 유상증자시 시가가 없는 주식의 기준주가 산정방법 개선 (2002/5/28 개정 · 시행)

- 상장법인 등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기준주가를 산정
 - 다만,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출

- 유상증자시 할인율제한의 예외인정 대상 추가 (2002/5/28 개정·시행)
 -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할인율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 ※ 유상증자시 할인율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 주주배정(제한없음), 일반공모(30% 이내), 제3자배정(10% 이내)
 - ※ 현행 할인율제한의 예외인정 사항
 -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을 발행하는 경우(단, 금감위원장 승인 필요)
 - 금융기관이 workout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예보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은행관리기업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 직접공모시 주식가치 분석방법 자율화 (2002/8/1 개정·시행)
 -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분석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2002/8/1 개정·시행)
 - 기업공개업무시 예측치와 실적치를 사후 비교하여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의 분석업무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의의무해태나 허위·오해유발 표시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2002/8/1 개정·시행)

-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춤.
 - 종래에는 모집·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제출토록 규정

○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가격의 범위 제한 (2002/8/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종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
 - 종래에는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고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적용대상 확대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정부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감위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 자기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적용대상 : 상장법인 등이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직접공모시 주식가치 분석방법 삭제 (2002/7/26 개정, 8/1 시행)
 - 직접공모주식의 분석기준 관련규정 폐지에 따라 시행세칙상의 분석기준과 본질가치 산출방법을 삭제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산정근거는 현행대로 유지

- 자본환원을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산출대상 은행 변경
(2002/7/26 개정, 8/1 시행)
 - 자본환원을 산출시 정기예금 적용대상 은행의 합병 및 상호변경에 따른 대상은행 조정
 - 개정후 5개 시중은행 : 국민, 우리, 한국외환, 조흥, 신한

3. 증권업 감독규정

-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2002/1/4 개정·시행)
 -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소속 투자자들의 일괄매매를 인정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로 일괄매매후 소속 투자자들에게 매매익일까지 배분할 수 있음.

※ 투자자집단 :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정)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당해 외국인들

○ 주식옵션시장 개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정비 (2002/1/4 개정 · 시행)

— 외국인의 call option 권리행사 또는 put option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한도초과를 허용

- 한도초과분은 권리행사일 익일까지 처분을 의무화

— 주식옵션 결제용 한도초과 주식매수 허용

- 주식옵션의 put option 권리행사 또는 call option 권리행사 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한도에 불구하고 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익일까지 인도할 주식의 취득을 허용

○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및 환입기준 마련 (2002/2/27 개정 · 시행)

—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적립기준을 삭제

— 적립된 증권거래준비금의 환입기준

- 금번 결산기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환입함. 다만,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전액 환입 가능

* 증권거래준비금의 일시환입시 배당가능이익이 일시에 증가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균등환입하도록 함.

-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근거 마련 (2002/2/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증권회사의 종속회사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함.
 - 연결기준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후 2~3년간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

- 영업보고서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보고기한 연장 및 공시방법 개선 (2002/2/27 개정 · 시행)
 - 분기별 영업보고서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기한 : 30일 → 45일
 - 서면에 의한 제출 · 공시 외에 전자문서방식을 인정

-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 완화 (2002/2/27 개정 · 시행)
 - 기존 모든 증권회사에 동일한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요건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인 경우 :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허용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 200%미만인 경우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상환 허용

기 준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분기말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이상 • 유상증자등 중도상환하는 후순위차입금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에 의하여 대체될 것 •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 계약서상 채무자의 만기전 상환 가능조항 명시 또는 당사자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분기말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중도상환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잔존만기보다 길고 발행조건이 유리한 경우를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명문화 • 좌 동 • 좌 동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 불허

○ 증권회사 임직원의 장기증권저축계좌에서의 주식거래 자동승인

(2002/2/27 개정 · 시행)

— 장기증권저축에 증권회사 임직원이 가입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증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상 허용된 주식 등 거래 외의 거래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공시의무 강화

(2002/3/20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및 애널리스트 등이 자신이 추천한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공시 (2002/5/1 시행)

- 애널리스트 등의 이해관계 범위, 공시내용 · 방법은 증권업협회가 규정

— 증권회사 및 애널리스트 등이 특정종목의 투자권유대가로 추천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유가증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 상장 · 등록법인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지원 (2002/3/20 개정 · 시행)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상장 · 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집중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시

- * 시장집중의무 : 외국인이 상장·등록주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도록 의무부여

- 외국증권시장에 동시상장된 원주에 대한 국내예탁의무 부여

- 외국예탁기관 명의로 상장원주를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

○ 코스닥시장의 신용공여제도 개선 (2002/3/20 개정·시행)

- 코스닥종목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신용거래 근거 명시

- 협회등록주식의 신주발행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용자·대주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사정가격 산정 및 담보권의 실행 등 담보관리방법은 거래소종목과 동일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02/3/20 개정·시행)

- 증권저축계좌의 ECN을 통한 주식거래 허용

- 증권회사의 자본금 변경 보고의무 신설

- 증권회사의 자본금 변경시 자본금 변경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

-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출자자 요건을 강화

- 채권장외거래 대상 제한규정 폐지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권 장외거래 대상 제한규정을 폐지
 - 사모사채에 대한 장외거래제한의 폐지로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장외거래 중개 등이 가능

- RP거래 대상채권의 범위 조정 (2002/4/2 개정 · 시행)
 - 대고객 RP거래 고객보호를 위하여 RP거래대상 회사채의 범위를 공모사채로 제한
 - 기관간 RP의 경우는 대상채권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RP매도시 적용수익률 변경 (2002/4/2 개정, 7/1 시행)
 - 조건부채권 매수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RP 편입채권에 대한 평가를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대신 복수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한 수익률을 적용
 - 기존 증권업협회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

- 대차거래의 중개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 폐지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중개시 간접중개방법의 제한 폐지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을 부수업무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차거래의 간접중개방법을 특정 당사자간의 중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

- 비거주 외국인간 대차거래시 담보의 동시이행의무 면제
(2002/4/2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직접중개에 의하여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보의 동시이행 의무 면제
 - 비거주 외국인간의 대차거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의 대차거래시장 참여를 확대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근거 명시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권한 위임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겸영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 신설 (2002/7/18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를 위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등 3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기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이어야 업무영위가 가능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 정비 (2002/7/18 개정·시행)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및 신용집중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을 허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을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의 산정기준을 마련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위험산정방법 정비 (2002/7/18 개정·시행)

- 옵션위험 산정시 간편법과 델타플러스법외에 시나리오 분석법을 추가
 - 은행의 시장리스크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에서도 옵션위험 산정시 시나리오 분석법 사용가능
- 델타플러스법 사용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 면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점을 감안, 사전신고 없이 자체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보고사항 신설 (2002/7/18 개정·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자기자본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새로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지하도록 규제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내용 신설 (2002/7/18 개정·시행)
 -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계약기간 중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등을 포함
 - 위험고지문서에는 상품설명서 기재사항·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위험 등을 포함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의 위험산정방법 마련 (2002/7/18 개정·시행)
 - 수익증권의 시장위험액 산정방법을 준용하되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 MMF와 동일수준의 위험액(0.5%) 산정도 인정
 - 0.5% 수준의 위험액은 고객예탁금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현행 위험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위험액과 같은 수준

-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 확대 (2002/7/18 개정·시행)
 -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매도금리선물거래를 허용하되,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액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액의 5%로 제한

※ 신탁업·증권투자신탁업 모두 선물거래 허용 → 증거금 합계액 : 15% 이내, MMF : 약관으로 5% 이내에서 운영

○ 외국환포지션관련 관리대상회사의 명시 (2002/8/1 개정·시행)

- 장외외환과생금융 거래를 취급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를 외국환포지션관련 관리대상회사로 명시
 - 외국 회사 국내지점은 포함, 국내회사 해외점포는 제외
 - 동 거래 미취급 및 외환시장 불참여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대로 간접관리

○ 외국환포지션 한도 설정 (2002/8/1 개정·시행)

- 외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의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설정
 - 은행, 종금과 동일하게 설정
 -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은행에 비해 작기 때문에 외국환포지션한도 절대규모는 크지 않음.
-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이월잉여금 환리스크 헤지 등 필요시 별도한도 인정 가능

○ 외국환포지션 한도 관리내용 명시 (2002/8/1 개정·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증권회사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일별한도 확인이 원칙이며, 한도위반시 보고의무와 일별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의무 등을 신설

○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2002/8/1 개정, 11/1 시행)

- 매영업일 외국환포지션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
 - 자기자본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제재면제 가능
- 보고시스템 구축 및 보고요령 습득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따른 제재를 3개월 유예

위 반 횟 수	제 재 내 용
과거 1년간 1회 위반	주 의
과거 1년간 2회 위반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 일수 만큼 한도에서 감축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한도감축 금액을 2배로 함

○ 증권사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을 경영실태 계량평가 대상에 추가 (2002/8/21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본점에 대한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마련

○ ETF 설정 및 환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방안 마련 (2002/10/2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ETF의 환매 청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인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한도초과분은 처분을 의무화
- 한도초과시 처분방법 및 절차 등
 -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종목 : KT 등 23개 종목

• 한도관리방법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 * 증권회사는 외국인의 ETF 현물설정 및 환매청구내역을 ID번호별로 구분하여 증권예탁원에 통보(T일)
- * 증권예탁원은 이를 취합하여 금감원에 신고(T일)
- * 금감원은 익일 ECN시장 종료 후 외국인 한도초과분을 체크하여 증권회사에 통보(T+1일)
- *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계좌에 주식바스켓을 입고(증권회사는 환매자계좌에 주식바스켓 입고)하는 T+2일에 증권회사는 한도초과분 매도

<한도초과시 외국인의 주식 처분의무수량>

- * 금감원에서 처분의무비율*과 외국인별 처분의무수량을 산정하여 종목별로 공시하고 증권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
- $$\text{처분의무비율} = (\text{외국인 전체 환매 취득분} - \text{설정시 현물납입분} - \text{외국인 전체 한도여유분}) \div \text{외국인 전체 환매 취득분}$$

<증권회사의 매도의무>

- * 증권회사는 금감원이 산출한 처분대상 주식수량을 고객별로 계산·확인한 후 외국인에게 통보하고 증권회사의 책임으로 당일중 매도 의무화
- * 처분수량 계산시 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10주) 미만 절사

○ 외국인의 장외거래인정 예외사항 추가 (2002/10/2 개정·시행)

- ETF 설정으로 인한 주식처분이나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발생하는 장외거래로 인정

- ETF에 대한 신용거래 허용 (2002/12/18 개정 · 시행)
 - 수익증권형 ETF에 대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명시

- ETF에 대한 신용공여시의 담보관리방법 명시 (2002/12/18 개정 · 시행)
 - 담보가격산정 등 담보관리방법을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주권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권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게 규제

- 「소매채권매매」의 개념 정의 (2002/12/18 개정 · 시행)
 - 당일결제 허용대상인 「소매채권매매」는 개인 및 법인세법시행령 17조(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정함.

- 채권장외거래의 결제일 변경 (2002/12/18 개정, 2003/6/1 시행)
 - 관행화된 당일 결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을 「T+0~T+14일」에서 「T+1~T+30일」로 변경
 - 다만, 결제일 변경에 따른 전산정비 및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소매채권매매 및 MMF의 채권거래는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 허용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투자자집단의 신고절차 마련 (2002/1/4 개정 · 시행)
 - 외국인 투자자들간에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한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자집단으로 사전신고
 - 대표투자자를 지정하여 신고

- 투자자집단의 유가증권 매매후 배분내역 보고 (2002/1/4 개정 · 시행)
 - 투자집단내 외국인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배분내역을 매매일일까지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보고

- 증권회사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개편 (2002/3/20 개정 · 시행)
 - 부수업무 확대 및 신상품(개별주식옵션, ECN거래 등) 취급에 따라 증권회사의 표준계정과목을 개편
 - 개편된 계정과목은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적용(2002. 4. 1)

-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 관련제도 보완 (2002/3/20 개정 · 시행)
 - 외국증권시장에 원주상장을 목적으로 상장 · 등록주식 취득시 장외양수 · 양도 신고의무 부여
 - 외국증권시장 원주상장관련 투자등록시 원주별로 투자등록
 - 증권예탁원은 원주상장 주식의 월중 국내외 증권시장간 이동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의 충족여부를 위한 세부기준 신설
(2002/7/18 개정·시행)
 -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후선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 시나리오 방법에 의한 옵션위험의 세부 산정기준 신설
(2002/7/18 개정·시행)
 -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 변동율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 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함.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열거된 각 변동율을 상정하되 최저 7개 등간격 변동구간으로 설정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내부모형 허용근거 마련 (2002/7/18 개정·시행)
 -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을 정비한데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신설 (2002/8/1 개정·시행)
 - 외국환포지션 산정 기준이 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 외국환포지션 한도 산정 등의 세부사항 신설 (2002/8/1 개정 · 시행)
 - 외국환포지션 한도 등을 산정할 경우 적용환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
 -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 · 통보하는 환율을 적용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2002/8/1 개정 · 시행)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회사는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인정신청서 제출의 세부절차를 명시

- 해외점포의 경영실태 평가방법 명확화 (2002/8/21 개정 · 시행)
 - 증권업감독규정 2-31조 6항에 의한 증권사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가능

- 경영실태 계량평가자료 서식 추가 (2002/8/21 개정 · 시행)
 - 기존의 증권회사 「해외점포 업무현황 보고서」 서식에 증권업 및 투자업, 은행업에 대한 계량평가자료 서식을 추가

- ETF 현물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시점 명시 (2002/10/2 개정 · 시행)
 -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시, ETF설정청구를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주식수령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개선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중 신규 지정신청 금융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시장조성채권 보유요건(지정신청전 6월간 평균 200억원 이상)은 폐지하고, 채권딜링부서의 시장조성자금의 최저금액을 신설

- 채권전문딜러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요건 신설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딜러 지정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경우, 지정취소사유 해소 및 시장조성여력의 확보여부를 재지정 요건으로 설정

-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 완화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딜러의 시장조성채권 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채권 변경 제한규정 중 변경일 3영업일전 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직전 영업일로 제한완화

- 시장조성의무를 채권전문딜러 규모에 따라 차등화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딜러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딜러로 구분하고 대형딜러에게는 시장조성채권 보유규모를 확대하는 반면, 소형딜러에게는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시장조성실적도 딜러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달러의 시장조성능력은 RP시장 등 채권 및 자금조달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조성채권의 보유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을 감안

<규모별 시장조성채권 규모 및 시장조성실적>

	시장조성채권		시장조성실적
기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200억원 이상		채권전문달러 최상위자 실적의 10% 이상
개정	총자산(직전사업연도말)	시장조성채권(억)	총시장조성실적의
	소형 : 5,000억원 미만	100억원	1.0% 이상
	중형 : 5,000억원~1조원	200억원	1.5% 이상
	대형 : 1조원 이상	300억원	2.5% 이상

- 채권전문달러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채권전문달러의 시장조성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의무 이행여부를 지정취소 사유에 신설
- 채권전문달러 지정취소 사유 등의 평가시기 조정 (2002/12/18 개정, 2003년 상반기부터 적용)
 - 지정취소 사유 발생시 사실확인 등 평가의 충실을 위하여 기존에 매년 1월 및 7월로 되어 있는 채권전문달러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 여부 등의 평가시기를 반기 경과후 60일 이내로 조정

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기한 연장 (2002/4/2 개정, 4/1시행)
 - 현투증권(주)의 외자유치협상 진행으로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의 축소기한을 연장
 - 2002. 3. 31 → 2002. 9. 30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근거 명시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
 -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권한 위임 (2002/5/1 개정 · 시행)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

- CBO후순위채권의 편출입시 시가적용 예외인정 (2002/8/1 개정 · 시행)
 - CBO후순위채권을 편출입(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아닌 가격(투신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 가능

- 종전에 CBO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사 고유 재산과 시가로 편출입할 경우 CBO후순위채권의 원활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등 개선 (2002/8/1 개정·시행)

— MMF 만기와 국채·통안증권 만기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고 MMF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120일(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경우 90일)이내로 변경

- 기업어음의 경우,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어음에 한하여 MMF에 편입 가능

※ 시행일 현재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경과규정을 마련

—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대상에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함에 따라 국채·통안증권의 투자한도(MMF 자산의 50%)를 폐지

○ 유가증권의 옵션 위험액 산정방법 신설 (2002/8/1 개정·시행)

—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동일종목의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그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마련

—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거래유형별 위험액 = 동일 거래유형의 미결제약정금액 합산금액

* 거래유형 : 콜옵션매수,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풋옵션매도

* 미결제약정금액 : 기초주권가격 × 기초주권수량 × 계약수량

—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

- 총위험액 = 주식콜옵션매수 및 주식풋옵션매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과 주식콜옵션매도 및 주식풋옵션매수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의 절대치

○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신설 (2002/8/1 개정·시행)

—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규정을 정비

- 투자신탁협회의 표준신탁약관 제·개정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수익자의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음.

○ 신탁재산에 편입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명시

(2002/10/1 개정·시행)

—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 연계대출금 축소기한 연장 (2002/10/1 개정·시행)

— 현대투자신탁운용 신탁재산의 연계대출금 축소기한을 2002. 9. 30에서 2003. 2. 28로 연장

6. 증권투자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부도채권 상각제도 개선 (2002/7/26 개정, 8/1 시행)

—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을 상향 조정

- 일반기업 : 50% → 80%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 20% → 50%

※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후 잔존가치보다 명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
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

— 기초자산에 부실요인이 발생한 자산담보부증권은 원리금의 회수가
능성·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평
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명시

○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이관에 따른 규정정비 (2002/7/26 개정, 8/1 시행)

— 투자신탁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일 30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
신탁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규정을 조정

7.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유가증권옵션의 위험액 산정방법 명시 (2002/8/1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

8.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설치근거 마련
(2002/3/20 개정·시행)
 -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의 관계자가 참여
- 증선위·금감원의 합동조사, 조사·심리기관간 공동조사 근거 마련
(2002/3/20 개정·시행)
 - 증선위 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조사협조 요청 가능

- 금감원장은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선위 위원장에게 조사협조 요청
-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강제조사, 합동조사 또는 공동조사 가능

- 조사원의 범위에 금감위의 조사공무원을 포함 (2002/3/20 개정·시행)
 -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사공무원과 감독원의 조사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직원

-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 명시 (2002/3/20 개정·시행)
 - 현장조사시 현장조사서 작성, 물건 영치시 입회인 참여, 영치조서 및 영치목록 작성 등의 절차 명시

-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의 지위 변경 (2002/3/20 개정·시행)
 -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증선위위원장 자문기구로 격상

- 검찰이첩조치의 단순화 (2002/10/30 개정·시행)
 -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조치기준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의뢰조치는 폐지

- 감리위원회의 사전심의대상 명확화 (2002/10/30 개정·시행)
 -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 증권거래법 관련사항인 경우 증권·선물 조사심의위원회 대신 감리위원회가 사전심의하도록 명시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표준양식 제정 (2002/10/30 개정·시행)
 - 종전 금감위규정으로 정하던 금융거래정보요구 양식을 재경부 고시에 의한 통일양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위임검사 실시 방법 및 절차의 명시 등 (2002/5/15 개정·시행)
 - 관계법령 등에 의해 금감원장이 자율규제기관 등에 금융기관의 검사를 위임·위탁할 경우, 그 검사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명시
 - 금감원장은 타기관에 위임·위탁한 검사의 결과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의 일부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 검사결과 금감위 보고대상에서 현지조치사항을 제외 (2002/5/15 개정·시행)
 - 금감위 보고내용으로는 사안이 경미하고, 검사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외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 (2002/5/15 개정 · 시행)
 -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고발 등의 조치가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2002/5/15 개정 · 시행)
 -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조치사항(주의, 시정 등)은 문책사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재심청구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 과태료 · 과징금 부과절차 명확화 (2002/5/15 개정 · 시행)
 -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 ·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명시
 - 금전적 제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함.

-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계획 제출의무 완화 (2002/5/15 개정 · 시행)
 -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자체감사계획을 금감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
 -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 적고 임점검사시 확인가능한 자체감사결과 보고의무를 폐지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정보수집 의무부서의 확대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2002/5/15 개정 · 시행)
 - 종전에는 검사국에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의무부서를 금감원내의 유관부서 전체로 확대
 - 금감원 직원 개인은 금융감독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사항 및 건의사항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 가능
 - 검사총괄국에 체계적 정보관리의무를 부과

- 검사총괄담당부서의 검사총괄기능 강화 (2002/5/15 개정 · 시행)
 - 검사국의 검사실시에 대한 합의시 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및 중복검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2002/5/15 개정 · 시행)
 - 제재관련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청하던 참고인 출석요청을 동 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
 -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요청시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2002/5/15 개정 · 시행)
 - 문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근로·고용계약 종료후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적용

- 계약직으로서 사실상 임원직무수행자(비등기임원)로 재고용하는 경우 포함

○ 금융기관의 자체감사계획 요구사유의 명시 (2002/5/15 개정 · 시행)

- 금감원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계획 제출요구는 금융기관 자체감사와의 검사중복 회피 또는 내부통제 실태과악 등 중요한 감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토록 명시

11.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10%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 신설

(2002/9/23 개정 · 시행)

- 신용불량자, 재무건전성비율 최저기준 미달 금융기관, 부채비율 200% 초과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보유를 불허
 -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 면제받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를 허용

○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요건 세부기준 마련 (2002/9/23 개정 · 시행)

-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주력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을 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회사 처분계획 구체화여부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설정

* 비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자

-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위의 전환계획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할 수 있게 함.
 - 전문기관은 기업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

-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2002/9/23 개정·시행)
 - 대주주발행주식중 비상장·비등록주식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등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0.5% 로 설정
 - 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동 대주주를 불법거래가능성이 큰 대주주로 지정
 - 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신용공여형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적용금리 등의 공시를 의무화

- 금융지주회사등간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관련 감독사항 신설 (2002/9/23 개정·시행)
 -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정토록 되어 있는 업무지침서는 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위주로 작성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목적, 법적근거 등 개인신용정보등의 공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

- 자회사등간 거래시 적정담보확보 예외사항 추가 (2002/9/23 개정·시행)
 - 은행자회사가 카드자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내에서 제공한 초단기성 대출의 경우에도 적정담보 확보의무 예외를 인정

1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 경영지도비율 및 가결산결과 보고서를 업무보고서에 포함
(2002/9/26 개정·시행)
 - 필요자기자본비율·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비율 및 가결산결과 보고서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업무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2002/9/26 개정·시행)
 - 업무보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정보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종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 준용기준 변경 (2002/9/26 개정·시행)
 -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종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던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을 동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 기타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 신설(10개), 개정(2개) 및 폐지(8개)

13. 증권범죄 조사사무처리규정

- 강제조사권의 발동요건 마련 (2002/3/19 제정·시행)
 - 내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중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강제조사권을 발동

- 압수·수색영장 발부절차 규정 (2002/3/19 제정·시행)
 - 압수·수색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집행
 -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기재

- 권한남용 방지장치 마련 (2002/3/19 제정·시행)
 -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관리대장 비치 등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규정

14.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의 자회사 업종 추가 (2002/11/13 개정·시행)
 -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를 추가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2002/11/13 개정 · 시행)

— 계량평가 지표 삭제 및 추가

- 삭제 : 거액신용공여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수지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 추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순이자마진을, 경비보상비율

○ 가계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상향조정 (2002/11/27 개정 · 시행)

— 가계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과거평균손익율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 가계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

건전성 분류단계	가계대출금		신용카드채권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정 상	0.5% 이상	0.75% 이상	0.5% 이상	1% 이상
요 주 의	2% 이상	8% 이상	2% 이상	12% 이상
고 정	20% 이상	좌동	20% 이상	좌동
회수의문	50% 이상	55% 이상	50% 이상	60% 이상
추정손실	100%	좌동	100%	좌동

○ 은행의 여신업무운용에 관한 감독기준 보완 (2002/11/27 개정 · 시행)

— 종전의 규정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은행의 여신운용에 관한 조항을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

< 여신운용의 일반원칙 >

- 차주의 리스크 특성, 채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절한 여신의 공급
- 여신 실행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 「신용공여」의 범위에 공모사채 추가 (2002/12/18 개정, 2003/1/1 시행)
 - 신용공여한도관리 대상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공모사채를 추가

Ⅲ. 증권거래소 규정

1. 업무규정

- 거래소와 회원간의 결제시 회원별 차감결제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2002/1/19 개정, 1/21 시행)
 - 회원간 합병후 통합 회원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되어 회원별 차감결제가 곤란한 경우, 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권지급의무자의 결제전 반대매매 제한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지급의무자가 매수한 기초주식은 주식옵션시장에서 결제될 주식이므로 주식옵션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위하여 결제전의 반대매매를 제한

- 주권수령권리자의 결제전 반대매도 허용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시장에서 call option 매수 등의 사유로 주권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경우,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일 이전 취득예정 주권의 매도를 허용

- 주권수령권리자의 결제대용증 납부 허용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수령권리자가 기초주식을 결제일 전에 매도했으나 결제일에 상대방으로부터 기초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발행한 결제대용증으로 납부 가능

- 취득예정 주권을 매도하였으나 취득할 주권에 같음하여 옵션시장에서 발행된 결제대용증으로 수령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도 결제대용증에 의한 결제를 허용

○ 주권지급의무자의 증거금 관리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거래 결제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100% 징수를 의무화
- 주식매수계약 체결시 당해 위탁증거금은 선물·옵션계좌로의 이체를 허용
 - 현물계좌에서 기초주권 결제자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위탁증거금을 선물·옵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주식매수대금을 별도 관리하게 되므로 결제의 확실성이 보장됨.

○ 미수위탁자에 대한 증권 및 대금 인출제한 완화 (2002/1/25 개정, 1/28 시행)

- 미수가 있는 위탁자계좌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제한되나, 옵션결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
 - 옵션시장에서의 결제를 위한 주권의 인출
 - 옵션시장에서 취득예정인 주권을 매도한 경우 당해 매도대금의 선물·옵션계좌로의 이체

○ 주식차익거래시 직전가 미만 매도제한(up-tick) 적용제외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식차익거래의 경우 신속한 균형가격 형성을 위하여, 직전가 미만 매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시장대리인 관련규정 삭제 (2002/1/25 개정, 2/1 시행)

— 시장대리인의 등록,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 조항 삭제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전면 전산화됨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시장대리인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이상매매심리 및 회원감리의 대상·방법을 구체화 (2002/4/1 개정·시행)

	심 리	감 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시에 의해 선정된 이상매매혐의종목 ·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있는 거래등 · 가격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보도등이 있는 거래등 · 그밖에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거래의 수탁 - 매매거래 - 매매거래의 결제 - 그밖에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출석·진술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실시에 대한 사전통지 - 심리방법을 준용. 다만, 실지감리는 준용하지 않음

○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2002/4/1 개정·시행)

— 종전의 매매거래정지 등은 조치의 현실성 결여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제재금 부과중심의 조치로 전환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개선 및 시정요구 등의 근거 명시 및 병과조치 근거 마련
- 회원의 조치결과에 대한 공표근거 마련 등

- 회원의 조치이행확보수단을 구체화 (2002/4/1 개정·시행)
 - 거래소의 조치요구에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한 회원에 대해 회원제재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

- 규율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2002/4/1 개정·시행)
 -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 및 임직원의 징계여부를 심의하는 규율위원회 심의대상에 회원경고·주의를 추가
 - 기존 규율위원회의 심의대상 : 매매거래 정지, 회원제재금 부과, 임직원 문책

- 분쟁조정절차의 개선 (2002/4/1 개정·시행)
 -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방법 개선
 - 조정처리기간(30일) 산정시 조정신청 보완기간 및 사실조사 기간을 배제
 - 분쟁위원회 회부전 자체 종결처리사유의 추가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 분쟁조정의 공표근거 강화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해없이 분쟁조정 내용의 공표 가능
 - * 실명 공표시는 당사자의 양해절차 필요

- 관리종목의 매매방법 개선 (2002/6/28 개정, 7/1 시행)
 -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을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로 변경
 -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종목은 현행과 같이 단일가매매

- 기존 관리종목의 매매방법은 주기적(30분 단위) 단일가매매(1일 13회 매매) 방법이었음.

* 코스닥시장은 관리종목에 대해 접속매매를 실시중임.

○ 단일가매매의 호가정보 공개 확대 (2002/6/28 개정, 9/30 시행)

—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 예상체결가격·수량 및 체결가격대의 잔량, 가체결직후의 최우선 매수·매도호가 공개

— 매매체결이 불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 매도·매수 최우선 호가가격과 수량 공개

— 매수·매도별 총호가수량은 비공개

○ 저유동성 종목 매도시 위탁증거금으로 매도증권 전부 징수

(2002/6/28 개정, 7/15 시행)

—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저유동성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

- 종래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시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였음.

*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종목 : 거래소 27종목, 코스닥 1종목

○ 결제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시 채권·채무관계 종결근거 마련

(2002/6/28 개정, 7/1 시행)

— 거래소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당해 매매거래에 따른 회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는 효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종래 회원의 매매위약에 의한 손해에 대해 거래소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등으로 배상하는 경우, 이의 법률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회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제거

-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방법 규정 (2002/9/27 개정, 9/30 시행)
 - 주식시장 및 수익증권시장과 별도의 ETF시장 개설을 명시
 - ETF의 경우에도 시간외시장 및 신고대량매매 등을 허용
 - ETF의 추가설정(환매)으로 교부받을 ETF(주식집단)에 대하여 결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 매도를 허용
 - ETF와 ETF 구성종목집단과의 차익거래를 위하여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호가를 허용
- 매매거래중단제도 보완 (2002/9/27 개정, 9/30 시행)
 - 최근 상장법인의 퇴출요건 강화로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감사의견거절 등도 매매거래중단사유에 추가
- 시간외시장 운영방법 개선 (2002/9/27 개정, 9/30 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확대
 - 15시 10분부터 15시 40분 → 15시 10분부터 16시까지
 - 대량매매시 종가기준 $\pm 5\%$ (당일의 고저가 내)에서 호가하도록 하던 것을 종가기준 $\pm 7\%$ (당일의 상하한가 내)로 확대

- 자기주식의 매매방법 개선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기주식매수(매도)호가의 가격정정 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 (매도)호가의 가격중 높은(낮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낮은 (높은)가격의 범위로 제한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위탁매매 수용을 위한 호가구분 확대
(2002/9/27 개정, 9/30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위탁매매체제를 구축하여 비딜러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호가제한을 완화
 - 위탁매매를 위한 호가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

- 결제불이행관련 매매거래정지근거 마련 (2002/9/27 개정, 9/30 시행)
 - 매매거래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종래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이 우려되고 그 규모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매매거래를 정지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 범위 확대 및 가격요건 완화
(2002/12/17 개정, 12/23 시행)
 - 정부의 허가와 금감위의 승인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요건의 적용도 배제함.

- 정부가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2. 업무규정 시행세칙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중 회사채 지정 (2002/1/14 개정, 2/25 시행)
 - 회사채의 경우 거래대상채권은 미상환액면총액 2,000억원 이상, 신용평가등급 AAA이상인 종목
-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 및 환매일 (2002/1/14 개정, 2/25 시행)
 - 거래기간 : 1일, 3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의 8개 종류
 - 거래기간별 환매일 : 매매대금 결제일부터 기산하여 2일째, 4일째, 8일째, 15일째,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 되는 날
- 환매채거래의 호가수량단위 등 (2002/1/14 개정, 2/25 시행)
 - 호가수량단위 : 매매대금 1만원
 - 호가가격단위 : 소수점 둘째자리의 환매이자율
 - 매매수량단위 : 액면 50억원

○ 환매채거래시 채권의 교환 및 대체 (2002/1/14 개정, 2/25 시행)

— 채권의 교환

- 매수자는 교환사유 발생일의 13시까지 채권의 교환을 신청하고, 매도자는 14시까지 교환채권을 지정하여 신고
- 당일의 13시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매매거래일의 13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환채권의 평가방법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 채권의 대체

- 매도자는 당일 13시까지 채권의 대체를 신청하고, 매수자는 14시까지 동의여부를 통보
- 채권의 대체는 매매계약별로 1회에 한하며, 대체채권의 평가방법은 매매채권의 평가방법을 준용

○ 복수의 회원번호 부여근거 마련 (2002/1/19 개정, 1/21 시행)

- 회원간 합병 등의 사유로 회원시스템 통합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

○ 회원별 차감결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의 결제방법 명시

(2002/1/19 개정, 1/21 시행)

- 거래소와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간의 결제방법은 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차감결제할 수 있도록 함.

- 단일회원의 호가에 대한 적용례 명시 (2002/1/19 개정, 1/21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 등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므로, 복수의 회원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의 경우 회원번호별로 단일회원 여부를 판단

- 주식차익거래의 범위 명시 (2002/1/25 개정, 1/28 시행)
 - 주권과 개별주식옵션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거래를 주식차익거래로 규정
 - 주권매수(매도)와 주식합성선물을 매도(매수)하는 거래
 - ※ 주식합성선물매도(매수) : 주식 call option을 매도(매수)하고
주식 put option을 매수(매도)하는
옵션거래

- 매매수량단위 조정근거 보완 (2002/1/25 개정, 1/28 시행)
 - 1개월간 40만건 이상의 호가가 3일 이상 접수되거나 거래소시스템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호가가 접수된 종목에 대하여 매매수량단위를 상향조정
 -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조정 가능

-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음(-)」인 경우의 호가범위 설정
(2002/3/18 개정·시행)
 - 분할전회사의 시가총액을 신설회사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최고호가가격으로 하고, 최저호가가격은 호가가격단위 중 최저가격(5원)으로 함.

- 재상장종목의 개념 명시 (2002/3/18 개정 · 시행)
 - 회사분할후 존속하게 되는 회사의 개념을 재상장종목과 구분하여 변경상장종목으로 규정
 - 기존에는 회사분할에 의한 경우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최초가격(기준가격)이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됨에 따라, 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과는 달리 존속회사의 경우에도 재상장종목으로 규정

- 호가의 입력내용중 계좌번호체계의 표준화 등 (2002/4/1 개정 · 시행)
 - 계좌종류의 구분 2자리, 투자자번호 10자리로 구성된 체계를 회원지점번호 3자리, 계좌종류의 구분 2자리, 투자자 번호 7자리로 전환
 - 비회원 증권회사의 위탁자별 계좌번호를 입력 요청

- 시장감시 구분의 변경 (2002/4/1 개정 · 시행)
 - 시장주가감시, 기간주가감시 및 기타 주가감시로 구분
 - 일별시장감시, 기간시장감시 및 기타시장감시로 구분

- 주요경영사항의 항목 추가 (2002/4/1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을 추가

- 심리·감리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의 요청방법 구체화
(2002/4/1 개정 · 시행)
 - 자료의 제출요청은 자료제출요청서 또는 현지출장의 방법으로 하고, 출석 및 진술의 요청은 출석요청서에 의하도록 서식 등을 명시

- 회원제재금의 부과절차 및 방법 구체화 (2002/4/1 개정·시행)
 - 회원제재금 부과는 거래소가 정한 서식에 의함.
 - 서식에는 회원제재금, 부과사유,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기재

- 분쟁조정 신청방법의 다양화 (2002/4/1 개정·시행)
 -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조정신청 허용

- 기접수호가중 상·하한가를 벗어난 호가의 취소 허용 (2002/6/28 개정, 7/1 시행)
 - 신규상장시 등 시가결정후 제한폭을 벗어난 호가의 경우 호가효력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나, 증권사 및 투자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취소를 허용

- 매도호가의 호가수량한도 하향조정 (2002/6/28 개정, 7/1 시행)
 - 종래 상장주식수까지 매도호가 할 수 있었던 매도호가수량 한도를 상장주식수의 1/3까지만 매도호가 할 수 있도록 호가입력제한을 강화
 -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기준가격제도 개선 (2002/6/28 개정, 7/1 시행)
 - 자본감소(주식병합) 종목의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여 평가가격의 50%(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에는 5원) ~ 200% 범위내에서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기존에는 직전의 가격과 감자비율을 감안하여 당일의 기준가격 결정
 - 회사분할에 따른 재상장시 최초가격(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접수하는 최저호가가격의 범위를 현행 평가가격의 90%에서 50%로 하향조정
 - 평가가격의 90%~200% → 평가가격의 50%~200%
 - Kosdaq종목의 신규상장시 공모실시여부에 따라 평가가격 산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최근종가 및 10일간의 평균종가만을 감안하여 산출
- 전산장애시의 매매방법 개선 (2002/6/28 개정, 7/1 시행)
- 전산장애 복구시 접속매매로 매매거래를 재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일가매매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재개
- 전산주문표 작성방법 개선 (2002/6/28 개정, 7/1 시행)
- 증권회사가 전화·FAX 등으로 주문을 수탁하여 전산주문표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는 경우,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주문처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출력을 면제
 - 종래에는 주문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
-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방법의 세부사항 명시 (2002/9/27 개정, 9/30 시행)
-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를 허용

- 차입한 ETF(주식집단)를 매도하는 경우 가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차익거래유형을 명시
 - 신규상장시의 기준가격은 최근의 주당(좌당) 순자산가치로 함.
 - ETF 대응가격은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
-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재개 연장사유 보완 (2002/9/27 개정, 9/30 시행)
- 당해 품문 등이 공시후에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 재개의 연장이 가능
- 계좌번호체계 보완 (2002/9/27 개정, 9/30 시행)
- 계좌번호의 구성항목을 지점번호 및 투자자번호로 단순화
- 대량매매요건 완화 (2002/9/27 개정, 9/30 시행)
- 5만주(또는 10억원) 이상에 한하여 허용하던 대량매매를 1만주(또는 2억원) 이상으로 대량매매 요건을 완화
- 분쟁조정신청 접수시 당해 사실의 통지 의무화 (2002/9/27 개정, 9/30 시행)
- 접수사실 및 담당자의 성명 등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

- 호가입력시 주문자 식별정보의 확보 근거 마련 (2002/12/4 개정, 2003/1/2 시행)

— 호가입력시 주문입력방법에 따른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의 입력을 명시

주문입력방법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주문을 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단말기에 입력시	영업점 단말기 고유번호
무선통신단말기를 통해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컴퓨터를 통한 회원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홈트레이딩)	IP 주소
기타 방법의 호가시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이 가능한 고유번호

※ 유선통신단말기(ARS)를 이용한 회원시스템 입력시는 제외

— 수탁확인사항에 주문입력매체 식별번호 추가

- 회원의 수탁시 확인사항에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IP주소, 기타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하는 고유번호를 포함시킴.

- 일반 감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요건 중 기간을 최근 5일간 75% 이상 주가상승이 3일 연속에서 「2일 연속」으로 단축

— 시가기준종목이 상장 후 30일 미만시 그 경과한 기간중 최고주가 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일반 감리종목 해제요건 개선 (2002/12/4 개정, 12/9 시행)
 -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일정기간(3일) 경과 후 주가급등의 진정 또는 하락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해제

- 우선주 감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요건 개선 (2002/12/4 개정, 12/9 시행)
 - 2차 이상 매매거래 정지의 요건에 1차 매매거래정지해제 후 최근의 주가상승률을 반영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20% 이상

- 불공정거래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명시 (2002/12/4 개정, 12/9 시행)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 이상매매혐의종목 등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상 명확히 정하고 지급기준 등은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

- 전산장애의 범위 확대 (2002/12/17 개정, 12/23 시행)
 -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 외에 동시스템과 유사한 매매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도 전산장애의 범위에 포함
 - 기계적 결함 외에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전산장애의 범위로 규정

- 1회 호가수량한도 조정 (2002/12/17 개정, 2003/1/20 시행)
 - 상장주식수(매도의 경우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 상장주식수의 5%(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주식수의 1/3)까지 호가

3. 선물·옵션 업무규정

-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을 10주로 변경 (2002/7/26 개정, 8/9 시행)
 -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을 주식시장의 매매수량단위인 10주로 일원화 함으로써 주식·옵션간의 연계거래 및 세밀한 투자전략이 용이하도록 개선
 - 종래에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은 기초주권별로 1계약 금액의 크기가 유사하도록 시장개설 당시 기초주권의 가격수준(10만원 기준)에 따라 10주와 100주로 이원화
 - * 10만원 이상(10주) : 삼성전자·SK텔레콤 및 포스코
 - * 10만원 미만(100주) : 국민은행·KT·현대자동차 및 한국전력

- 관리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의 접속매매방식 허용 (2002/7/26 개정, 8/9 시행)
 - 관리종목 주식옵션에 대한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단일가매매외에 접속매매방식도 가능하도록 추가
 - 종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옵션의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이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물시장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도모

- 전산주문표 출력의무 완화 (2002/7/26 개정, 8/9 시행)
 - 회원의 업무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문내용 및 주문입력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주문표 출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회원이 전화·팩스 등으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주문내용을 기재한 전산주문표를 출력하도록 하는 불편을 제거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주식옵션대상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신설 (2002/1/22 개정, 1/28 시행)
 - 상장주권 중 유통주식수 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수 1만명 이상, 연간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주식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다음의 7개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으로 선정
 - 국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포항종합제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 호가가격단위 신설 (2002/1/22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의 가격은 기초주권 및 옵션종목별로 가격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호가가격단위를 세분화하되, 호가가격의 1% 수준으로 규정

호가가격의 수준	호가가격단위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 주식옵션거래의 임의적 중단 (2002/1/22 개정, 1/28 시행)

- 기초주권의 거래폭주, 풍문,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옵션거래도 함께 중단하여 주식현물과 주식옵션간 일체적 시장관리를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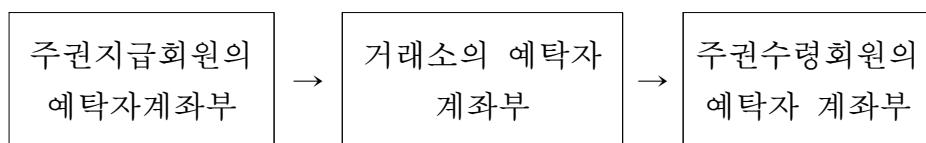
○ 관리종목 주식옵션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 규정 (2002/1/22 개정, 1/28 시행)

- 최초약정가격 결정시에는 60분으로 하고,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단일가호가를 접수하고, 최종약정가격의 결정시에는 15시부터 15분간 단일가호가를 접수

○ 계좌대체위임계약과 중복되는 기술적 사항의 삭제 (2002/2/7 개정·시행)

- 주식옵션권리행사주권의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수수료 관련하여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거래소와 증권예탁원간 체결된 「주식옵션권리행사주권의 결제를 위한 계좌대체 위임계약」간 중복되는 사항 삭제

- 예탁자계좌부간 대체업무는 증권예탁원이 수행



- 증권예탁원은 거래소가 대체시기를 통보시 즉시 대체
- 증권예탁원은 대체전산시스템(SAFE시스템)을 통하여 대체결과를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고, 거래소는 증권거래세 징수에 필요한 주권양도의 권리행사·배정대금을 증권예탁원에 통지

-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관리종목 주식옵션 제외 (2002/7/26 개정, 8/9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의 매매체결방법이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행 30분간격의 단일가매매 대상인 관리종목 주식옵션과 정리매매종목 주식옵션중 관리종목주식옵션을 제외

- 기초주권수량의 변경근거 삭제 (2002/7/26 개정, 8/9 시행)
 - 10주와 100주로 이원화된 주식옵션의 기초주권수량이 10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를 전제로 한 기초주권수량의 변경근거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 기초주권수량에 따라 500원(100주)과 5,000원(10주)으로 이원화한 주식옵션의 자동권리행사기준을 5,000원으로 일원화
 - 기초주권수량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주식옵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도 10주의 기초주권수량을 기준으로 일원화

- 전산주문표 이용방법 정비 (2002/7/26 개정, 8/9 시행)
 - 전산주문표를 출력하지 아니하고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회원선물·옵션시스템에 입력된 주문내용 등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제나 출력할 수 있도록 명시

-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 마련 (2002/8/21 개정, 9/2 시행)
 -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을 주가지수옵션과 동일하게 기초주권가격 15% 변동시의 이론가격으로 하되, 거래소가 설정하도록 함.
 - ※ 종전에는 주식옵션의 호가한도가격의 설정여부 및 그 설정폭을 회원이 자율적으로 설정

- 호가최고한도가격 : 기초주권가격 15% 상승시 주식콜옵션이론가격,
기초주권가격 15% 하락시 주식풋옵션이론가격
- 호가최저한도가격 : 기초주권가격 15% 하락시 주식콜옵션이론가격,
기초주권가격 15% 상승시 주식풋옵션이론가격

○ 상장지수펀드의 대용증권 지정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펀드시장이 개설될 경우 상장지수펀드의 보유자가 이를 선
물·옵션시장의 기본예탁금 또는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
용증권의 범위에 상장지수펀드를 추가

○ 상장지수펀드의 대용가격 산출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펀드는 상장주식과 매매방법이 동일하므로 대용가격의 산
출시기 및 적용기간, 산출방법,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등의 경우에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

5. 유가증권 상장규정

○ 재상장제도 개선을 통한 우회상장 규제 (2002/3/30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
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영업부문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를 분할하여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재상장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

- 이익요건, 자본잠식요건, 감사의견요건 및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 등을 적용
-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등 개선 (2002/3/30 개정·시행)
 -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주식분포상황 미달과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주식분포상황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
- 지주회사의 상장특례요건 적용대상법인 기준개선 (2002/3/30 개정·시행)
 - 지주회사의 상장특례요건 적용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이 75% 이상인 경우로 변경
 - 주식교환·이전 이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인 주식관련사채권의 주식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
 -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상장 자회사보다 규모가 큰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는 재무요건 등 주요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주회사의 상장특례를 적용
 -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함.
 - 다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우회상장의 우려가 없으므로 적용 배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수익증권)의 상장요건 신설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일 것
-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이상 편입
-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이상을 펀드구성종목에 편입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신고의무 신설 (2002/9/27 개정,
9/30 시행)

- 현행 증권투자회사 및 수익증권의 신고사항을 준용하되, ETF의 특성에 맞는 신고의무 사항에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 및 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추가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상장폐지기준 신설 (2002/9/27 개정,
9/30 시행)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발행증권수가 5만증권 미만으로서 3월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상장폐지기준으로 명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에 대한 상장폐지 예고제도 적용
(2002/9/27 개정, 9/30 시행)

- ETF는 관리종목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시 미리 이를 공시하여 투자자를 보호
 -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때
 - 발행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 된 때

- 자기자본 관련 상장요건 및 폐지기준 개선 (2002/9/27 개정, 9/30 시행)
 - 외국채권의 상장요건 중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여 주권상장요건과 형평성을 제고
 - 외국채권의 상장폐지기준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

-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2002/9/27 개정, 9/30 시행)
 - 이 밖에 공정공시제도 도입관련 관리종목지정기준 등을 정비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주의 조기환금성 확보를 위한 상장신청시기 등을 개선

-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상장폐지기준을 강화
 - 유예기간 동안에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에 대한 관리종목지정기준 신설
(2002/12/13 개정, 2003사업연도의 반기검토보고서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

○ 영업활동이 정지된 법인의 유예기간 단축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상장폐지기준을 강화

○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인의 상장폐지기준 강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최종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기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후 1년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던 것을 부도가 발생한 법인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상 부적절하므로 관리종목 지정절차를 삭제

○ 자본잠식법인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없이 즉시 상장을 폐지
 -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태가 2년 계속인 경우 상장을 폐지

○ 거래량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을 위한 월평균거래량 산출주기를 기존 6월에서 3월로 단축하며, 기업의 규모별로 거래량 미달 기준을 상장주식수의 1~2%로 차등화

- 회사정리절차개시와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강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04년 말까지 법정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 공시의무 위반시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강화
(2002/12/13 개정, 2004/1/1 시행)
 - 최근 2년 이내에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1년 이내에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또한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

- 최저주가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종가가 30일 연속하여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주가수준 미달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그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시가총액에 의한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신설

(2002/12/13 개정, 2003/7/1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상장시가총액이 30일 연속하여 25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후 60매매일중 시가총액수준 미달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그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 주권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의견청취제도 신설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주권의 상장폐지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서면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동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퇴출과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최종 퇴출결정 이전에 당해 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 상장폐지주권의 정리매매기간 단축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권의 매매거래허용기간을 기존 15일(매매일기준)에서 7일(매매일기준)로 단축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주권상장법인의 업종 및 코드분류 근거 변경 (2002/1/11 개정, 1/14 시행)

— 유가증권표준코드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업종 및 코드분류 근거를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로 변경

- 전업종 평균부채비율 산정시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2002/1/11 개정,
1/1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시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종 평균부채비율 산정시에도 제외

-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적용방법 삭제
(2002/1/11 개정, 1/14 시행)
 - 상장규정의 개정예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을 폐지하므로, 전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전제로 규정한 상장폐지기준의 미해당 입증자료의 제출을 삭제
 - 주식분포상황, 감사의견, 사외이사 미선임 등

- 관리종목 지정우려 법인에 대한 공시근거 신설 (2002/1/11 개정,
1/14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투자자에게 예고(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

- 관리종목 지정시기 변경 (2002/3/7 개정 · 시행)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시기를 사업보고서제출일 익일에서 당해 사실 확인일 익일로 변경
 -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도모

○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절차 폐지

(2002/3/7 개정 · 시행)

-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감사종료보고서를 전송받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사유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 등 시장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절차를 삭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투자신탁 상장관련제도 정비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권 및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기존의 증권투자회사주권 및 수익증권과 달리하도록 명시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지정판매회사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의 경우 환매 또는 설정에 의한 변경상장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은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2003. 12. 31 까지 면제

○ 신규상장,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개선

(2002/9/27 개정, 9/30 시행)

-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하는 통일규격유가증권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양제출을 생략 가능

- 상장신청시기 단축에 따라 상장신청서 제출후 첨부서류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시
(2002/9/27 개정, 9/30 시행)
 -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관리종목 지정후 6월이내에 공정공시의 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지정해제 시기에 관한 일수를 새로 기산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정기준 신설 (2002/9/27 개정, 9/30 시행)
 -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주권의 상장심사요건과 관련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산정기준을 신설

- 상장계약서 서식 변경 (2002/9/27 개정, 9/30 시행)
 - 상장계약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증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수요사항을 반영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심리자료 요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장계약서 서식을 변경

-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상장폐지기준 중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사항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영업활동정지 후 6월내 사유 미해소
 - 주가기준 또는 시가총액기준 미달

-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폐지
- 기타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출기한

- 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의 통지접수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시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심의 의무화

- 당해 법인에게 상장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 상장위원회의 심의 종결후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최종결정

○ 신설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규정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매출액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는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에 조치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는 당해 사실의 발생 또는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에 조치

○ 결산기 이후 재무변동사항의 시장조치 반영기준 확대 (2002/12/17 개정,

2003/1/1 시행)

— 결산기부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발생한 재무내용 변동사항을 관리종목 지정해제시에도 반영

- 종전에는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의 적용시에만 반영

7. 상장법인 공시규정

○ 공정공시제도 도입 (2002/9/13 개정, 11/1 시행)

— 기업의 주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시장참가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를 신설

- 공정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정보제공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및 신고시한을 명시
- 자회사와 관련된 지주회사에 대해 공정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공시와 수시공시 중복시 수시공시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방법의 특례를 명시
- 보도목적의 취재, 변호사 등 관련법률상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정보의 선별제공시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를 규정
- 공정공시의무는 법규상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
- 공정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한 공시불이행 관련사항 추가
- 공정공시의무 이행 실태 점검 근거 마련
-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공정공시는 불성실공시 적용제외 가능
- 기업설명회(IR)에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공시의 경우에는 공시거부·유보 및 공시문안 조정 대상에서 제외

- 공시의무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퇴출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의무 확충 (2002/9/13 개정, 9/16 시행)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및 자본전액(지주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75% 이상) 잠식의 경우 당일에 공시

- 관리종목의 조회공시제도 개선 (2002/9/13 개정, 2002/9/16 시행)
 -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대상에 관리종목을 포함

- 익일공시 사항 추가 (2002/9/13 개정, 2002/9/16 시행)
 -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완료한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를 익일공시사항에 추가

8. 상장법인 공시규정 시행세칙

- 공정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방법 명시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은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등과 신고서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의 점검은 사업보고서등만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점을 보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 명시

(2002/9/13 개정, 2002/9/18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지정일 익일 1일간」에서 「지정일 당일 1일간」으로 변경
 - 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간으로 명시

9.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참가약정서

○ 채권납부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시 가산금(Penalty)율 조정

— 3% → 2%

- 가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참가를 유인

IV. 증권업협회 규정

1.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ECN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2002/6/28 개정, 7/1 시행)
 - ECN의 등록종목 중개와 관련하여 코스닥위원회 및 중개회사(코스닥증권시장)가 업무지원 등의 수수료를 매매약정대금의 일정비율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증권거래소는 정관에서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매매대금의 0.06/1만에 상당하는 수수료 징수 중
 - 중개수수료 이외에 코스닥위원회 및 중개회사가 징수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청문회위원 등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신설 (2002/6/28 개정, 7/1 시행)
 - 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문회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
 - 등록심사 및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가 없었음.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재원 확대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신규등록(재등록)후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이전 비용을 징수하여 위원회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2.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 ECN관련 수수료 징수비율 신설 (2002/7/2 개정 · 시행)
 - ECN의 등록종목 중개와 관련하여 업무지원 등의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을 매매약정대금의 0.03%으로 정비
 - 코스닥위원회 · 중개회사 : 각각 0.03%

3.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등록예정기업의 등록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강화
(2002/3/18 개정, 9/18 시행)
 - 협회등록전 부당한 자본이득의 부여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원칙의 확립을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확대
 -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 → " 1년 이내
- 분할후 재등록시 요건 강화 (2002/3/18 개정 · 시행)
 - 협회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규 기업으로 재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요건을 강화
 - 기존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요건을 추가 심사
 -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여 우회등록한 비상장 · 비등록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 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기존 자본금, 부채비율요건 외에 자본잠식, 감사의견, 경상이익,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 당해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요건을 추가

○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요건 강화 (2002/3/18 개정 · 시행)

— 협회등록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기업가치 저하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비공개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을 심사

- 기존에는 협회등록법인보다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에만, 당해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자본잠식·경상이익·부채비율·증자·감사의견·최대주주 지분변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였으나, 모든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확대

○ 협회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 (2002/3/18 개정 · 시행)

—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합병시 적용하는 수준의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도입

- 최대주주등 :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단, 1년 경과후 매 1월마다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 투자기간별로 1~3개월간
- 기관투자자 :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개월간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에 자본잠식요건 도입 (2002/7/12 개정,
7/15 시행)
 - 불법·부당한 비리발생 등으로 벤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본잠식이 없을 것」의 등록요건을 적용
 - * 최근 3년간('99년~'01년) 코스닥등록 심사대상 벤처기업(476사) 중 자본잠식 요건 미달기업은 5개사임.

- 제3시장 우량기업도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 부여 (2002/7/12 개정,
7/15 시행)
 -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3시장에 1년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인센티브를 부여
 - * 「우량기업」 : 일정기간 불성실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등

- 제3시장 지정기업의 모집분에 대한 주식분산 인정 (2002/7/12 개정,
7/15 시행)
 - 제3시장 우량기업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시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
 - 종래에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30%)에 제3시장 분산실적을 불인정함에 따라 주식분산 메리트가 없었던 점을 개선

○ 신규등록 심사요건중 주식분산 기준 개선 (2002/9/13 개정, 9/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은 모집을 통한 분산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식분산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

- 기분산실적(공모+사모)이 30%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통해 20%이상 공모분산 의무화
- 기분산실적(공모+사모)이 30%이상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통해 10%이상 공모분산 의무화. 다만, 공모로 기분산실적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사항 반영 (2002/9/13 개정, 9/16 시행)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2002. 7. 16)으로 유가증권 분석의무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함에 따라 유가증권 분석의 일반원칙, 분석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삭제

— 청약이후 등록시까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세칙으로 이관하고 제출 가능시기를 조정
- 등록예비심사청구후 모집을 하는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모집의 완료일까지 신규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조기환금성을 확보.

○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 (2002/9/13 개정, 9/16 시행)

—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대상 주식등을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주주 보유주식을 위장하여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한 주식수 이외에 금액도 감안하여 주식을 재매입토록 하고,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새로이 매각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등록예비심사청구서 허위기재시 제재조치 개선 (2002/9/13 개정, 9/16 시행)

— 종전 등록취소 기준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를 「등록취소」 및 「관리종목 편입」 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장조치 기준으로 세분화

— 등록취소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을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고 기업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종목 편입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기재 또는 누락 내용의 정정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으나 당해 기업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후 6월이내에 제재조치(주식 재매입 등) 불이행 또는 1년이내 재차 허위기재 또는 누락 발생시에는 등록취소

○ 지분변동 제한 대상범위의 조정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예정법인의 지분변동 제한대상을 5% 이상 주주까지로 확대

- 등록예정법인의 신규자금 유치 등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한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지분변동 제한의 예외를 신설
- 종전 등록예정법인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분변동을 제한하였음.

○ 벤처금융의 주식매각제한 완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금융의 주식매각제한 기간을 완화 (단, 벤처금융투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강화)

-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매각제한 없음
-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1월간

○ 예약매매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계속보유기간중 예탁원에 보관중인 주식등을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 보호예수기간을 연장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보호예수제도의 신설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후 1년 이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소유주식의 매각을 제한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미흡한 사례를 예방

- Due-Diligence 과정의 기업과 주간사의 책임성 강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했던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명시
 - 제공시기 및 회수, 게시기간, 대표이사의 주간사에 대한 확인서 제출 등은 세칙에 위임

- 최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강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최대주주(또는 대표이사)가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증선위가 판단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

- 시장이전제도의 보완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코스닥기업이 시장을 이전하는 경우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규정
 - 시장이전이 코스닥 등록후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3%
 - 등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1%
 - 기존 등록기업의 경우,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비심사후 신규등록신청시까지 모집한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등록심사수수료 신설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등록심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이 승인되는 경우 등록수수료에서 이를 공제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신규등록 심사시 특례 기간 연장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신규등록시 유상증자 및 지분변동 제한요건의 적용을 면제
 - 종전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동 제한요건의 적용을 면제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요건 개선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당해 적용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불허

- 관리종목 지정요건 개선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최소주가 요건의 기능을 제고
 - 액면가의 20% → 액면가의 30%
 - 시장평가에 의한 등록취소 기준인 시가총액 일정비율 미달인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등록된 보통주의 당일 증가에 등록된 보통주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투자부적격 주권으로서 당해 기업의 부실화 진행과정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요건을 설정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
 - 최근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시 당해 적용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불허

○ 등록취소제도 개선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퇴출 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상시 퇴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등록취소 제도를 개선

구 분	기 준	개 정
I. 퇴출기준강화		
① 액면가액 일정비율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가의 20%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가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동일상태 지속시 퇴출
② 시가총액 미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60일간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시 퇴출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이후 1개월내 미제출 시 퇴출	(현행과 동일) - 이후 10일내 미제출시 퇴출
④ 영업활동 중단	○ 주된 영업활동 등 중단 시 관리종목 지정 - 6월간 지속시 퇴출	(현행과 동일) - 3월간 지속시 퇴출
⑤ 영업실적	(신 설)	○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발 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 중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 상 악화시 관리종목 지정 - 2사업연도 연속시 퇴출
⑥ 회사정리 절차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매1년마다 적격성 심사	○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신청시 퇴출 ※ 정리절차 진행중인 기 업은 유예기간 부여후 정리절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퇴출
⑦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신 설)	○ 반기보고서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및 감 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 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II. 퇴출절차 개선		
① 이의신청 제도 개선	○ 퇴출사유에 관계없이 모 든 퇴출결정에 대해 이 의신청 허용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 백한 경우 이의신청 불허 *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 우를 세칙으로 정함
② 정리매매 제도 개선	○ 정리매매기간 : 15일 ○ 매매방법 : 정규매매와 동일 (최초 매매일의 경우 가격 제한폭 없이 동시호가)	○ 정리매매기간 : 7일 ○ 매매방법 : 가격제한폭 해 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③ 재등록제한 개선	○ 퇴출후 1년간 재등록 제한 * 부도, 상장, 자진퇴출 은 예외인정 - 2년내 재등록시 특례인정 * 유상증자 및 대주주 보유지분 변동제한	○ 재등록 제한기간 폐지 - 3년내 재등록시 특례인정

- 합병의 개념 명확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합병의 개념을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 「합병」 → 「상법 522조, 527조의2, 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

- 재등록 신청 가능시기 조정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등록주선인을 통하여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조정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 1월 이내

- 우선주 등록에 대한 거부권·선택권 부여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투자자보호 기타 등록종목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우선주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우선주 발행시 추가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 종래 신규등록시는 우선주에 대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비해, 추가 또는 재등록시에는 의무화되어 있어 신규등록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와 불일치하였음.

- 등록법인과 건설업 영위법인의 합병요건 완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공개법인에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일반기업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 종래 신규등록시 적용되던 건설업 특례규정을 합병시까지 적용하여 건설법인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였음.

- 건설업을 영위하는 협회등록법인이 비공개법인(건설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합병요건을 완화

4.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예외 인정 (2002/3/18 개정 · 시행)
 - 업력 2년 미만, 매출액 30억 미만, 자본잠식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3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면 재차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기의 명확화 (2002/3/18 개정 · 시행)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경우
 - 법정제출기한이 속한 월의 익월 초일 →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 주식분산기준 미달의 경우
 - 법정제출기한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 투자유의종목 적용기준의 명확화 (2002/3/18 개정 · 시행)
 - 거래실적부진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
 - 발행주식총수와 거래실적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발행주식총수와 등록주식총수가 상이한 경우(발행후 변경등록전)에는 등록주식총수를 기준
- 월중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별거래량을 일별등록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일별회전율을 합산한 월별회전율을 기준으로 거래량 요건을 적용
- 월간 매매일수가 해당 월의 중개시장에서의 매매일수의 1/2 미만인 종목은 지정을 유예하고, 월중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실적을 중개시장의 월간 매매일수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등록취소시 이의신청과 관련한 매매거래정지 시기의 명확화

(2002/3/18 개정 · 시행)

-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3일간 매매거래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개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의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리매매를 개시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기준 변경 (2002/4/25 개정 · 시행)

-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이 6% 기준으로 하락 · 상승 확인된 날의 익일에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조치 실시
 - 종래에는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가 자기자본의 6% 기준으로 하락 · 상승 확인 즉시로 되어 있어, 장중에도 동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하므로, 장중 시장조치에 의해 신용거래 가능여부가 당일중 변동

○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계산

(2002/4/25 개정 · 시행)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만료시점까지만 매매거래를 정지

- 종래에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불명확하였음.

○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등의 인출허용 사유를 구체화 (2002/7/2 개정 · 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주식등의 인출과 관련하여 「기타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등의 예외적 인출을 허용

- 종래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속·소각·질권변경·질권해지 등의 경우에 인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이 없었음.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2002/7/2 개정 · 시행)

—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를 반드시 구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경우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증빙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정당성·객관성을 담보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우선심사 물량 확대 (2002/7/2 개정 · 시행)
 - 제3시장의 우량기업에게도 코스닥 등록시에 우선심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우선심사 물량을 종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중 10%를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
 - 종래에는 코스닥 등록심사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해 심사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심사권을 부여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의 조정 (2002/9/13 개정, 9/16 시행)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중 분산요건의 확인을 위한 주주명부요약표를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로 사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제출의무를 세칙으로 이관
 -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행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시기 유예 가능 신설

- 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기준 세분화 (2002/9/13 개정, 9/16 시행)
 - 최대주주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장분산을 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 기간의 연장 및 재매입조치 등의 제재방안을 신설

구 분	조 치 내 용
차명주식을 보유한 경우	- 최대주주가 소유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예탁원에 예탁한 날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 (단, 1년 경과시 매월 5% 매각 인정) → 명의변경 및 보호예수 조치 미이행시 등록취소

구 분	조 치 내 용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 수량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수량을 재매입토록 하고 재매입한 금액이 처분금액에 미달시 처분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재매입 조치 - 매각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한 주식 + 기존 보유주식 - 매각제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매입을 완료하여 예탁원에 예탁한 날로부터 1년간 매각을 금지하고 기존 보호예수 잔여기간을 추가 → 재매입 및 보호예수 조치 미이행시 등록취소

○ 공정공시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기 신설 (2002/9/13 개정, 9/16 시행)

-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를 1회로 간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이전 2년의 기간중 발행한 건수를 합산하여 2회 확인즉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므로, 공정공시의무 4회를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됨.

○ 관리종목 지정·해제시기 명시 (2002/9/13 개정, 9/16 시행)

-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토록 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시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유예 신설 (2002/10/14 개정 · 시행)

- 주금납입일까지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중 주금납입일까지 구비가 어려운 서류의 경우 일정기간 제출을 유예
 - 단, 신규등록일(매매개시일) 전일까지는 제출토록 함.

○ 등록수수료 등 면제가능한 관리종목 지정사유의 한정

(2002/10/14 개정 · 시행)

-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한정함.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
-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경우와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또는 등록유지수수료를 부과

○ 우선주 등록 거부사유의 구체화 (2002/12/16 개정 · 시행)

- 투자자보호 및 등록종목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우선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종목별 등록신청 주식수가 5만주(액면 5천원을 기준)미만인 경우

○ 매각제한 위반시 조치기준 명확화 (2002/12/16 개정 · 시행)

- 보호예수 기간중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보호예수 기간은 매각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및 계속보유잔
여기간의 합산으로 함.
-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기간중 1년 경과후 매월 5% 매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기준 신설
 - 매각제한 기간중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및 매각제한기간중 1년까지의 미경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마다 적용
 - 매각제한 기간중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각이 가능한 주식등을 제외한 계속보유 주식등을 대상으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마다 적용

○ Due-Diligence 과정의 기업과 등록주선인의 책임 강화

(2002/12/16 개정 · 시행)

- 등록예정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등록주선인에 제출하는 재무상황 자료가 진실하고도 정확한 방법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등록예정법인의 책임을 강화
 - 대표이사 등의 등록주선인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등록주선인이 등록을 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등록주선인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등록일로부터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2년간 게시 의무화, 위반시 코스닥시장지 등에 게재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배제사유의 명확화 (2002/12/16 개정 · 시행)

—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

- 거래실적부진
- 관계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및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명확화 (2002/12/16 개정 · 시행)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일을 포함하여 60일(당해 종목의 매매일 기준)이 경과한 날

—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확인 즉시
- 해제시기 :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으로 표명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 최근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당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관리종목 지정시 이의신청 배제사유 명확화 (2002/12/16 개정·시행)

— 관리종목 지정시 적용하는 이의신청을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공정거래 연루 최대주주 등 검찰고발시 매매거래정지 기준 신설

(2002/12/16 개정·시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당해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준을 명시

- 당해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사유발생 확인시점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조치일로부터 이전 2년의 기간중 당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동 지위에 있었던 경우로 한정

— 당해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조치사실 확인시점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2002/12/20 개정, 12/23 시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조치일 현재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조치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진 적이 있는 경우로 명시

- 등록취소시 위원회 승인배제사유 및 이의신청 배제사유의 명확화
(2002/12/16 개정·시행)
 - 등록취소시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배제하고 이의신청도 불허

-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시 주주총회 의무화 (2002/12/16 개정·시행)
 - 시장이전을 위한 등록취소 신청시 등록취소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등록심사수수료 신설 (2002/12/16 개정·시행)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등록심사수수료(100만원) 징수

5.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 예탁원과 증권회사간의 결제시 회원별 차감결제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
(2002/1/21 개정·시행)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권회사별로 차감결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업무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권회사간 합병에 따른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증권회사별 차감결제 곤란을 구제

○ 시간외 대량매매제도의 도입 (2002/4/1 개정 · 시행)

— 대량매매 주문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대량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시간외대량매매제도를 도입

-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pm 5\%$ 범위내의 가격」 또는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종목과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거래를 성립시킴.
- 협회등록법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 이용 가능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 상향조정 (2002/4/1 개정 · 시행)

—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등은 조치의 현실성 결여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회원제재금 부과중심의 조치로 전환

- 회원제재금의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회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과태료에서 회원제재금으로 용어변경

○ 회원의 조치이행확보수단을 구체화 (2002/4/1 개정 · 시행)

— 협회의 조치요구에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이행을 한 회원에 대해 회원제재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

○ 분쟁조정절차의 개선 (2002/4/1 개정 · 시행)

— 분쟁조정 처리기간 산정방법 개선

- 조정처리기간 산정시 사실조사 소요기간을 배제

- 분쟁위원회 회부전 자체 종결처리사유의 추가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
- 분쟁조정내용의 공표근거 개선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양해없이 분쟁조정 내용의 공표 가능
 - * 실명 공표시는 당사자의 양해절차 필요

○ 시장가호가제도 도입 (2002/6/28 개정, 7/1 시행)

-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호가유형에 시장가호가를 추가
 - 시장가호가란 등록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
- 시장가호가의 우선순위 및 가격간주기준 등 마련
 -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
 - 시장가호가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별도의 가격간주기준을 설정
 - * 설정원칙 : 최우선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우선하는 가격 및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불리한 가격, 직전의 가격 (체결가격, 전일종가 등)으로 간주하여 가격변동 최소화

○ 공매도호가의 관리 개선 (2002/6/28 개정, 7/1 시행)

- 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 공매도호가를 허용
 - 코스닥시장에도 신용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거래대주의 경우를 공매도 호가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 지수차익거래시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예외인정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공매도호가시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증권거래소와 동일)

○ 저유동성 종목 매도시 위탁증거금으로 매도증권 전부 징수

(2002/6/28 개정, 7/1 시행)

- 등록주식수가 일정수량(5만주) 이하인 종목에 대하여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토록 의무화
 - 등록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불의의 공매도시 결제안정성을 확보

○ 등록후 거래미형성 증권투자회사 주권 기세적용 배제 (2002/9/13 개정,

9/16 시행)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등록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세를 종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
 -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 일반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기세를 종가로 인정
 -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증권투자회사 주권에 대해서도 기세를 종가로 인정

○ 자기주식의 매매방법 개선 (2002/9/13 개정, 9/16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매도)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매도)호가중 높은(낮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높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 종래 매수(매도)주문에 대한 최저(최고)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처분)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었음.
- 시간외매매시장의 거래시간 확대 (2002/10/11 개정, 10/14 시행)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20분간 연장
 - 15 : 10 ~ 15 : 40 → 15 : 10 ~ 16 : 00
-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요건 변경 (2002/10/11 개정, 10/14 시행)
- 대량거래의 원활한 가격협상 및 체결을 도모하고자 기존 당일 고·저가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pm 5\%$ 이내로 되어 있는 가격범위를 $\pm 7\%$ 이내로 확대
 - 단,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한도로 함.
-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기주식 매수범위 확대 및 가격요건 완화
(2002/12/13 개정, 12/23 시행)
- 정부가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여 협회등록법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를 허용하고 가격요건의 적용도 배제
- 정리매매기간중 가격제한폭 해제 등 근거 신설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33조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후 일정기간(7일)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정리매매종목)의 거래시 가격제한폭을 해제하는 근거를 신설

- 세척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에 의한 체결방식으로 전환

6.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결제 증권회사별 차감결제에 대한 특례사항 및 결제방법 명시

(2002/1/21 개정 · 시행)

— 결제 증권회사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으로 협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시에는 회원번호를 복수로 부여 가능

- 회원번호를 복수로 부여받은 결제 증권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인정하는 날까지 회원번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차감하여 납부 가능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방법 개선 (2002/1/21 개정 · 시행)

— 시초가 산정시 평가가격을 조정하려는 협회등록예정법인의 제도악용소지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회등록공모를 행한 법인은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하고, 직등록의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개선

- 종전에는 등록신청일전 6월 이내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인정

- 재등록법인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 (2002/1/21 개정·시행)
 - 분할·합병기일의 보통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을 산정
 - 종전에는 재등록법인의 경우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산정은 분할전 회사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보통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산식에 의하여 산정

- 신용거래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 마련 (2002/4/25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탁시 또는 호가의 입력시 신용거래임을 명시
 - 수탁기재사항중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구분하여 기재

- 정리매매기간중 최초매매일 가격결정 방식의 변경 (2002/4/25 개정, 4/29 시행)
 - 적정가격의 조기발견 기능을 제고하고자 정리매매 초일에는 동시호가 매매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제한폭을 폐지
 - 2일째부터는 기존제도(12%의 가격제한폭 적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유지

- 시장감시 구분의 변경 (2002/4/25 개정·시행)
 - 시장주가감시, 기간주가감시 및 기타 주가감시로 구분
 - 일별시장감시, 기간시장감시 및 기타시장감시로 구분

- 심리·감리 자료제출 및 관계자 출석·진술의 요청방법 구체화
(2002/4/25 개정·시행)
 - 자료의 제출요청은 자료제출요청서 또는 현지출장의 방법으로 하고, 출석 및 진술의 요청은 출석요청서에 의하도록 서식 등을 명시

- 회원제재금의 부과절차 및 방법 구체화 (2002/4/25 개정·시행)
 - 회원제재금 부과는 협회가 정한 서식에 의함.
 - 서식에는 회원제재금, 부과사유, 납부기한, 이의신청방법 등을 기재

- 「시장가호가를 입력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2002/7/2 개정·시행)
 - 시장가호가는 투자자에게 매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문 형태이므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 호가의 경우
 - 정리매매 기간중 최초 매매일의 가격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중
 - 기타 협회가 중개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법인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산정방식 개선 (2002/7/2 개정·시행)
 - 기존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법인에 준하여 시초가 결정방식을 적용
 - 종래에는 신설법인의 경우 동시호가에 의한 시초가 결정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기존법인의 경우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12%의 가격제한폭을 적용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 : 시초가 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200% 범위내 호가 • 오후 3시까지 단일가 매매방식 - 기존법인 :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12%가격제한폭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법인 : 시초가 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200% 범위내 호가 • 오후 3시까지 단일가 매매방식

○ 감자후 매매재개일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정비 (2002/7/2 개정 · 시행)

— 감자전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에 감자비율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이 감자후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

- 기업이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격 : 주식병합전 최종매매일종가 × 병합비율 - 체결방법 : 기준가격 대비 12%내 일반종목과 동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가격 : 현행 기준가격 - 호가범위 : 50 ~200% - 호가접수시간 : 오전8시~오후3시 단일가 매매방식

* 종래 규정상 감자에 따른 주식병합후 매매가 재개되는 종목의 매매재개일 거래는 거래정지일 종가에 감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에 12%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적정가격 발견시까지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

- 권리락·배당락시 기준가격 산정기준의 변경 (2002/7/2 개정·시행)
 - 등록법인 기준뿐만 아니라 각 주권 종류별로도 권리락 전·후의 일치요건이 유지되도록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정비
 - 종래에는 우선주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권종류에 따른 주주간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야기
 - 종전에 규정상 보통주만 등록된 등록법인이 우선주를 배당하는 경우에 대한 배당락 산정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배당락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마련

- 전산매체 이용시 주문표 출력보관의 예외 인정 (2002/9/16 개정·시행)
 - 주문내용 등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후 별도로 보관되는 경우에는 주문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예외로서 인정
 - 증권회사가 전화, 전보, FAX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단일가매매시 호가정보의 공개범위 조정 (2002/9/16 개정·시행)
 - 호가정보의 공개범위를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및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과 그 가격의 호가수량으로 명시
 -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시 공표는 원칙적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실시간 공표를 원칙으로 함.

-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 개시후 1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표하도록 개선
- 호가건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공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 직등록시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2002/9/16 개정·시행)

- 직등록시 평가가격으로 삼던 본질가치 대신에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삼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을 결정**

* 순자산가액을 신규등록 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오전8시에서 오후 3시까지 평가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받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결정

- 종래에 신규등록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은 ① 협회등록공모 법인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② 직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본질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삼아 90~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받은 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음.

○ 시간외대량매매 수량요건 완화 (2002/10/14 개정·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을 기존의 5억원 이상에서 거래대금 기준 1억원 이상으로 완화

○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 확보 근거 신설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컴퓨터 및 기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입력단말기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증권회사가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 호가의 전자통신 매체별 주문식별수단을 호가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신설

○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의 명확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가격급등 우선주 및 증권투자회사의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화

- 증권투자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중 가장 최근에 공표된 수치를 기준

— 우선주 매매거래정지시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종가 조정 근거규정을 신설

- 권리락, 액면변경, 주식병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직전일의 종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정지 여부를 결정

○ 주식병합된 종목의 변경등록일 시초가 결정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2002/12/13 개정, 12/16 시행)

— 주식병합시 최초매매 기준가격 산정방식 적용대상에서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병합없이 대주주 등의 주식만 병합되는 경우를 제외

7.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 공정공시의 의무사항 신설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 정보공시대상자에게 공정공시규제 대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명시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의 범위 명시 (2002/9/13 개정, 11/1 시행)
 - 당해 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직원(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의미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의 대상자 명시 (2002/9/13 개정, 11/1 시행)
 -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외국증권회사 등의 국내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 등을 포함)과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 기관투자자(외국의 기관투자자 포함) 및 그 임·직원
-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기관 및 그 임·직원(외국의 언론기관 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자

○ 공정공시의 의무사항 공시방법 및 신고방법 신설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집단에게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정보제공전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 공정공시 사항은 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내용의 분량이 과다한 경우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에 원문 및 요약자료 게시가능

○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신설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협회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등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사항 신설 (2002/9/13 개정, 11/1 시행)
 -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당해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시장조치의 면제가 가능

- 공정공시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 (2002/9/13 개정, 11/1 시행)
 - 공정공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장조치를 함에 있어 여타의 공시의무 위반과 병합조치하되, 종래 기준 적용시 등록취소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조치기준을 완화
 - 공정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 2회를 1회로 완화하여 적용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공시 의무화 (2002/9/13 개정, 9/16 시행)
 - 해외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완료시 그 구체적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외국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뿐만 아니라 그 발행을 완료한 때에도 공시하도록 개선

- 주식매수선택권관련 공시의무 추가 (2002/9/13 개정, 9/16 시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수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인 때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결정 이외에 그 구체적 행사내역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개선

○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포함 (2002/9/13 개정,

9/16 시행)

— 계열회사를 최대주주등에 포함하여 협회등록법인과 계열회사간의 거래관계가 익일까지 신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주주도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포함

- 종래에 협회등록법인과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등록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익일 신고사항에서 배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제도 규정화 (2002/9/13 개정, 11/1 시행)

— 종목별 매매거래 중단후 재개시 장중 동시호가 처리가 되지 않던 전산상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재개하도록 함.

○ 미확정공시 의무재공시 시한의 신축적 운영 (2002/9/13 개정, 9/16 시행)

— 미확정공시의 경우 매 1월마다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하나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당해 협회등록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최대주주 변경시 공시기간 단축 등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최대주주 변경시 및 협회등록법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공시기간을 단축
 - 익일 → 당일

- 수시공시의무 확대 (2002/12/13 개정, 2003/1/2 시행)
 -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도 공시신고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수시공시의무사항을 확대

- 조회공시 대상 등 명확화 (2002/12/13 개정, 2003/4/1 시행)
 -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기업의 공시책임자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풍문 또는 보도가 조회공시의 대상임을 명확화
 - 주가 및 거래량 급변과 관련하여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의 근거를 마련
 - 등록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제도의 개선 (2002/4/25 개정 · 시행)
 -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당일공시신고사항으로 한정
 - 공시사항 신고를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까지 하면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물리적으로 공시가 불가능한 때에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한 것임.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강화 (2002/4/25 개정 · 시행)
 -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증권제도의 적시적 수용이 가능한 공시 인적자원의 육성·유지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연단위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

- 공시사항 신고방법상 개선 (2002/9/13 개정, 9/16 시행)
 - 전자공시시스템 전체의 장애 이외의 경우에도 접수마감, 비밀번호 분실 등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서면(FAX 포함)제출을 신고방법으로 인정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서면제출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 공정공시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기준 마련 (2002/9/13 개정, 11/1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공시신고를 매매거래시간 개시 30분전까지 하는 경우, 이를 전일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의 범위에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신고도 포함
 - 공정공시의무의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협회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및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행실태의 추가적 점검을 허용.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방식에 의한 거래재개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2002/9/13 개정, 11/1 시행)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당해 공시시점부터 6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명시
 - 은행관리 등, 영업양수·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배정비율이 20%이상인 무상증자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인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사항
 - 주당배당비율이 20%이상인 주식배당, 주식교환·이전, 기타 공익 및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당해 공시시점이 당일 매매거래 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 개시시간에 공시한 것으로 간주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해 풍문 등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6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명시

- 조회결과와 공시 후에도 품문 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 가능

○ 최대주주 변경시 정보공시 내용 확대 (2002/12/16 개정 · 시행)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변경된 경우 포함)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공시의 내용을 확대
 - 인수자에 대한 정보, 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 인수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주주에 대한 대책,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신설

○ 매매거래정지 사유 신설 (2002/12/16 개정 · 시행)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당해 공시시점부터 6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
 - 협회는 인수자 정보 등이 충분히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동 정보가 상세히 공시될 수 있도록 추가로 신고를 요구하며,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상세 공시시점 기준 60분간으로 명시

9.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유가증권 분석의 자율화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분석기준을 폐지하고, 분석결과와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는 주간사회사 ·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의 분석이 자율화됨에 따라 부실분석 제재규정도 삭제

- 공모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요예측의무 면제 (2002/7/16 개정, 8/1 시행)
 - 공모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방식이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주관사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 원칙적으로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

-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 폐지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관사회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 절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공시토록 하여 자율규제기능을 강화
 - 주관회사의 잘못된 가격결정에 대하여는 경제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의무를 엄격하게 운영
 - ※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 (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음

-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 (2002/7/16 개정, 8/1 시행)
 - 주관사회사가 공모규모·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청약대행 증권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를 폐지하여 주관사회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 (2002/7/16 개정,
8/1 시행)

—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가격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다만, 소속시장의 전일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조성가격의 조정을 허용

○ 인수업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준칙 등 마련 (2002/7/16 개정,
8/1 시행)

— 관련법규의 제·개정으로 인수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규범을 제정하고, 주의의무(Due-diligence)에 관한 구체적 모범규준
을 마련

- 인수업무에 관한 규제시스템을 negative system으로 전면 전환함
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2002/7/16 개정, 8/1 시행)

— 초과배정에 따른 공시방법, 배정한도 및 옵션행사기한 등 초과배정
옵션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공모예정물량의 15% 범위내, 발행일로부터 40일 이내 옵션행사 등

10.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제3시장 공시위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2002/7/1 개정·시행)
 -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의 경우에는 즉시 지정취소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수시·정기·조회공시)에는 지정취소

- 호가중개종목 지정취소기준의 강행규정화 (2002/7/1 개정·시행)
 - 호가중개종목 지정취소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지정취소사유 발생시 퇴출절차의 투명성 강화
 - 종전에는 지정취소기준이 임의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소사유 발생시 신속한 퇴출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 거래실적 부진기업에 대한 퇴출기준 정비 (2002/7/1 개정·시행)
 -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월간 지속되는 경우 퇴출
 - 종전에는 1년간 1주도 거래가 없는 경우에 지정취소

- 퇴출후 재진입 제한기간 원칙적 폐지 (2002/7/1 개정·시행)
 - 지정취소후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진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불성실공시·거래부진사유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기업은 1년간 진입금지
 - 종전에는 퇴출된 기업이 새로이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일괄적으로 2년간 진입불허

- 제3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 도입 (2002/7/1 개정, 10/1 시행)
 - 1일 가격변동 제한폭을 매매기준가격(직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대비 $\pm 50\%$ 로 설정

- 최대주주 변경공시 의무화 (2002/7/1 개정 · 시행)
 - 제3시장에도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판단에 편의 제공
 - 종전에는 제3시장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 신생기업으로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의무공시에서 제외

- 소속부 제도 신설 (2002/7/1 개정 · 시행)
 -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구분 관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의 기능을 제고
 - 소속부는 정규시장이관부(정규시장에서 퇴출되어 지정신청한 기업이 소속), 일반기업부(정규시장이관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기업)로 구분

11. 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 채권장외거래내역의 보고시한 연장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채권장외거래내역의 보고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의 실효성 및 현실성을 제고
 - 5분 이내 → 15분 이내

12. 채권장의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통화안정증권 364일물 최종호가수익률 산출방법 명시
(2002/11/12 개정, 12/1 시행)
 -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 산정기준 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된 결제기준수익률을 통화안정증권 364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로 간주
 - 통화안정증권선물의 선물거래소 상장(2002. 12. 6)에 따른 증권업협회의 결제기준수익률 제공과 관련한 공시수익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

13.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선물·옵션거래 설명서의 통합 (2002/1/24 개정, 1/28 시행)
 - 선물거래설명서 및 옵션거래설명서를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로 통합
 - 선물거래설명서 및 옵션거래설명서의 내용중 중복된 내용이 있고,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가 같은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로 통합

- 신용거래 범위의 확대 (2002/3/20 개정·시행)
 - 신용거래의 개념 및 신용거래 대상종목 등에 협회중개시장 거래주식을 포함

- 조사분석 담당자의 선관주의의무 신설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와 조사분석담당자의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이득의 수취를 금지

-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명시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담당자가 기업금융 관련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
 - 기업금융 관련부서(인수 및 법인영업부문, 고유재산 운용부문) 및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전 사전고지 금지
 - * 다만,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경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동일 임원 관장금지

-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분석자료공표 제한 등 신설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가 업무위탁 계약 등으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당해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법인
 - 당해 증권회사를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위탁증권회사로 지정한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주간사 및 간사단으로 참여하여 모집·매출된 주식으로 상장일로부터 40일 미경과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기간 중에 있는 유가증권 발행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M&A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법인

— 이해관계 경미한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 사실의 고지 의무화

- 당해 증권회사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은 허용하되, 이해관계 사실의 고지를 의무화
 - * 당해 증권회사가 보증이나 배서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증권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

○ 지득정보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명시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매매거래 금지
- 조사분석담당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 조사분석담당자의 담당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BW·EB)·개별주식옵션 등의 매매거래를 금지
- 유가증권 매매거래 내역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의무 명시

○ 공표전 조사분석자료의 사전심의 의무를 명시 (2002/7/1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에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전심의 의무를 부과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수립 및 운영할 것을 명시

○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의 게재의무 신설 (2002/7/16 개정,

8/1 시행)

- 조사분석자료에 과거 1년간 당해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하여 공표 또는 제공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에 관해 게재할 것을 명시

○ 투자권유의 범위 확대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을 투자권유의 범위에 포함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

- 증권회사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되는 대상법인의 범위 조정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의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장 또는 등록(최초상장 또는 등록에 한함)을 위한 주권사계약 체결시점부터 적용
 -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날로부터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종업원 채용시 조회내용 확대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채용예정자의 자격시험 응시제한기간 또는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조회내용에 추가

- 징계퇴직자의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의무화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종업원이 다른 증권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고 동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 또는 인사관련규정에 의무적으로 명시

- 주된 위법·부당행위의 적시 의무화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할 징계내역이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위법·부당행위를 적시하도록 의무화

- 직원의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마련 의무화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유가증권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이에 관한 승인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제도 도입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전문인력의 등록말소사유에 「증권회사가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

- 전담투자상담사의 직명 사용제한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는 전담투자상담사가 일반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직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상담계좌와 일반계좌의 보수지급률 차등화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상담계좌에 대한 보수지급률이 일반계좌에 대한 보수지급률을 초과하도록 명시

- 부점장의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영업현장의 1차 통제자로서 금융사고 예방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 1년에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

-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2002/12/13 개정, 2003/1/1 시행)
 - 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교육이수 주기를 단축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14.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증권회사의 고객주문내용 자료 유지·보관의무 명시 (2002/7/18 개정·시행)
 -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상 고객주문내용 자료에 대한 증권회사의 유지·보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분쟁 발생시에 투자자 보호
 - 증권회사의 위탁내용 입증은 서면확인·녹음 기타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
 - ※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에도 동일 내용 삽입
- 증권업감독규정상 통지조항을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등에 반영 (2002/7/18 개정·시행)
 -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간주사항에 반송계좌에 대한 통지간주사항과 거래가 저조한 소액계좌의 경우를 추가하여 통지의무를 구체화
 - ※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간주사항을 추가
 - * 우편물이 3회 이상 반송된 계좌에 대하여 자료를 영업점에 비치한 경우
 - * 반기동안 매매거래 등이 없는 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료를 영업점에 비치한 경우

— 증권업감독규정상 통지조항을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에도 동일하게 반영

○ 계좌통합 요건에 인출 등 기타거래가 중단된 경우를 추가

(2002/7/18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좌통합요건으로 매매거래 중단 외에 인출 등의 기타거래중단까지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반영

○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계좌설정 거부 및 수탁거부 신설

(2002/7/18 개정·시행)

—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계좌개설의 거부를 「선물·옵션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마련하고, 계좌개설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

-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큰 미결제약정을 발생시키는 투기적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탁 거부 가능

○ 담보부족시 추가담보제공기간 조정 (2002/7/18 개정·시행)

— 은행권의 주5일 근무에 따라 「신용거래약관」상의 추가담보제공기간을 정비

기 준	개 정
•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 이내	•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 및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제외) 이내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방법 다원화 및 종목대체범위 제한 완화

(2002/7/18 개정 · 시행)

-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약관」상 매도채권의 시가평가방법을 다원화하고, 종목대체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의 활성화를 유도

기 존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 •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가이상의 동일종류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채권의 시가평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가이상의 채권

※ 채권시가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기업신용위험의 축소와 일일정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 보호에 대한 염려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른 조치

○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2002/10/15 개정 · 시행)

-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시장개설과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및 상장채권)에 「상장 및 협회등록 수익증권」을 추가

○ 대차거래의 차감정산사유 확대 (2002/10/15 개정 · 시행)

- 파산 등의 사유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 사유로 인한 대차거래의 종료시 차감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당사자의 계약자율성을 제고

- 비거주자가 포함된 대차거래의 활성화 도모 (2002/10/15 개정 · 시행)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인 대차거래시 약관과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에 대한 자율성 제고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표5 신용거래약관」을 개정
 - 증권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차거래에 대한 자율성 제고 (2002/11/11 개정, 12/1 시행)
 - 대차거래의 담보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 반환 또는 추가담보 제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표6 유가증권대차거래약관」을 개정

15.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정

- 수익률 제출기관 선정방법 신설 (2002/11/11 개정, 12/1 시행)
 - 증권업협회 회장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장 인수실적, 유통시장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 6월마다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제출기관을 지정
 - 발행 · 유통시장 시장점유율이 각각 3%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제한

- 기준수익률 산정·공시 방법 보완 (2002/11/11 개정, 12/1 시행)
 - 통화안정증권의 제출 수익률 중 상하 각 3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
 - 동 수익률은 증권업협회 채권전용 홈페이지 및 증권전산 단말기를 통하여 오전·오후 종가 공시
 - 최종거래일에는 오전중 3회 추가 발표

16.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

- 증권저축계좌로 ECN 시장을 통한 매매 허용 (2002/3/28 개정, 2002/4/1 시행)
 - 증권저축의 업무방법에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분기별 한도제 도입 (2002/3/28 개정, 2002/4/1 시행)
 - 저축금 납입시 단순히 연간 600만원 이하이었던 저축한도를 매분기별 150만원 이하로 제한

17.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 진보성 불충족 요건 추가 (2002/10/24 개정, 10/25 시행)

- 연구의 결과로 저널 등에 이미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한 경우를 진보성 불충족 요건에 포함

○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산정방식 및 부여기간의 세분화

(2002/10/24 개정, 10/25 시행)

- 점수별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함.

구 분	부여기간
90점 이상	6개월
80점 이상 90점 미만	5개월
70점 이상 80점 미만	4개월
60점 이상 70점 미만	3개월
60점 미만	2개월

V. 증권예탁원 규정

1.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의한 예탁 근거 신설 (2002/2/18 개정·시행)
 -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주권교부 대신 예탁 계좌로 대행예탁한 경우, 당해 예탁자가 예탁을 청구한 것 인정

- 거래소 주식옵션시장 결제를 위한 계좌대체 처리방법 명시 (2002/3/8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로부터 결제자료의 통지를 계좌대체 청구로 간주
 - 결제자료의 통지시한은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토요일은 제외)

- 계좌대체의 제한사유에서 채권장외거래결제를 제외 (2002/7/24 개정, 8/1 시행)
 - 예탁채권의 권리행사를 위한 계좌대체 제한사유에서 채권장외거래의 결제를 제외하여 원리금지급개시일전 2영업일 동안에도 제한 없이 채권의 계좌대체가 가능

-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자 신설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업무의 참가자를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지정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로 명시

- 상장지수증권 예탁계좌 운영 신설 (2002/9/27 개정, 10/1 시행)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에 대하여는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에 따른 유가증권의 인수도를 위한 전용계좌(상장지수증권 예탁계좌)를 운영하도록 함.

- 위탁회사의 예탁원 통보사항을 명시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상장지수증권 청약·환매업무를 처리할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참가자를 예탁원에 통보하도록 함.

- 상장지수증권의 청약·환매 신설 (2002/9/27 개정, 10/1 시행)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는 예탁원에 청약·환매청구내역을 통보하고, 예탁원은 동 내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위탁회사에 청약·환매를 청구하도록 명시
 - 지정판매회사는 판매회사의 청구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는 지정판매회사의 청구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예탁원은 동 내역을 관련참가자에게 통보 의무화
 - 판매회사 및 지정판매회사는 청약·환매에 따라 납입·제출하여야 할 유가증권을 본인의 상장지수증권예탁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함.

- 상장지수증권의 예탁·반환 제한 (2002/9/27 개정, 10/1 시행)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분배금 지급 등 권리행사의 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로 하여금 이를 예탁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예탁을 제한

— 상장지수증권의 청약을 위하여 납입된 주식 및 환매를 청구한 상장지수증권은 반환을 제한

○ 상장지수증권의 예탁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신설 (2002/9/27 개정, 10/1 시행)

— 예탁수수료 : 최초 발행가액 10,000원 기준

• 5,000만주(좌) 이하 : 1주(좌)당 0.0015원

• 5,000만주(좌) 초과~1억주(좌) 이하 : 75,000원+5,000만주(좌) 초과분은 1주(좌)당 0.001원

• 1억주(좌) 초과 : 125,000원+1억주(좌) 초과분은 1주(좌)당 0.0005원

— 증권회사수수료 : 0.32/10,000 (주식과 동일)

2.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 「의무보호예수」의 정의 신설 (2002/3/4 개정 · 시행)

—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뢰인이 의무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제한하도록 한 보호예수

• 의무보호예수는 봉합보호예수로 관리

○ 의무보호예수의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방법 등 명시 (2002/3/4 개정 · 시행)

- 보호예수되는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예탁원과 별도의 반환제한약정을 체결
- 보호예수의뢰인의 청구시 의무보호예수증명서를 교부
- 보호예수의뢰인이 반환제한기간 중 반환청구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호예수대상을 단기금융상품으로 확대 (2002/4/15 개정 · 시행)

- 보호예수 대상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외에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확대

○ 단기금융상품 및 출자증권의 보호예수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

(2002/4/15 개정 · 시행)

-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채권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 채권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은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지급액) 10,000원당 0.01원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대해 주식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 주식의 보호예수수료 징수기준은 매일의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을 1주로 하여 1주당 0.01원

3. 유가증권 보호예수 업무규정 시행세칙

- 의무보호예수 처리근거의 구체적 명시 (2002/3/4 개정·시행)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등

4.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HTS 일중거래에 대한 결제방식의 예외인정 (2002/4/15 개정·시행)
 - HTS에 의한 일중거래(결제전 매매거래)에 대하여, 외국보관기관과 외국증권회사간의 기관결제방식(총량결제) 대신 당해 증권시장의 결제기구를 통한 시장결제방식(차감결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

- HTS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처리방법 통지의 예외인정 (2002/4/15 개정·시행)
 - HTS거래에 대하여 매 결제지시마다 매수대금 지급방법 및 매도대금 처리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등록서식에 의한 계좌개설신청의 근거 신설 (2002/7/24 개정·시행)
 - 계좌개설 신청업무를 통합등록서식인 「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향후 해당 등록서식은 담당부서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대응이 가능

- 「계좌설정계약서」의 폐지 (2002/7/24 개정·시행)
 - 규정 별지 서식인 「계좌설정신청서」를 삭제하고, 통합서식인 「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에 반영

5.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 대차거래 주식의 거래기간 연장 (2002/5/31 개정, 6/3 시행)
 - 주식의 대차거래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대차거래 참가자의 자격요건 완화 (2002/5/31 개정, 6/3 시행)
 - 비예탁자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를 허용
- 비예탁자인 참가자의 담보제공방법 명시 (2002/5/31 개정, 6/3 시행)
 - 예탁자계좌부상 담보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제한
- 대여자가 담보권자인 맞춤거래의 담보관리방법 명시 (2002/5/31 개정, 6/3 시행)
 - 증권예탁원이 담보권자인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담보관리방법을 준용
 - 담보부족분 제공 불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002/9/27 개정,
10/1 시행)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에 상장지수수익증권을 추가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대차거래기간은 주식과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
 - 상장지수수익증권의 신청수량단위 및 최소신청수량을 10좌로 함.
 - 차입한 상장지수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한 분배금은 예탁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

- 「지정거래」의 신설 (2002/11/28 개정, 12/2 시행)
 - 지정거래의 정의
 -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예탁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거래
 - 지정거래 체결방법
 - 지정거래는 참가자간 합의한 종목·수량·대차수수료율 등의 조건에 의함.
 - 담보관리
 - 담보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공하고, 담보권자를 예탁원으로 함.
 - 상환연기 및 예탁원의 대이행책임
 - 지정거래의 경우에도 차입자가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시 예탁원이 대이행책임을 지도록 명시

- 맞춤거래 제도 개선 (2002/11/28 개정, 12/2 시행)
 - 맞춤거래에 있어서 대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차입자의 담보제공 의무 면제 가능
 - 맞춤거래의 채무불이행시 대역자는 담보물의 자기계좌로의 대체 또는 시장에서의 처분을 위탁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6.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

- 증권대행업무 대상유가증권 추가 (2002/9/27 개정, 10/1 시행)
 - 증권대행업무 대상유가증권에 상장지수수익증권을 추가
- 증권대행업무의 내용 추가 (2002/9/27 개정, 10/1 시행)
 - 증권대행업무의 내용(종류)에 수익증권원부 관리업무를 추가
 - 주주명부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익증권원부관리에 준용
- 수익증권 발행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신설
(2002/9/27 개정, 10/1 시행)
 -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위탁회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
 - 주식의 경우를 준용하되, 기본수수료를 투자신탁별로 산정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 업무취급시간 변경 (2002/6/27 개정, 7/1 시행)
 - 토요일을 업무의 취급시간에서 제외
 - 업무취급시간 : A.M. 9시 ~ P.M. 5시

8.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기관간 Repo 대상채권 제한 삭제 (2002/6/17 개정, 7/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 중 제한되는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결제의 대상채권에만 적용
- 매입채권 시가평가방법 변경 (2002/6/17 개정, 7/1 시행)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액면 1만원 당 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산출

9.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업무 참가자의 자격 및 담보범위 명시
(2002/8/28 제정, 9/1 시행)
 -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로 한정

- 담보는 현금 또는 예탁대상유가증권 중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및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채권으로 명시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방법 명시 (2002/8/28 제정, 9/1 시행)

- 참가자의 담보관리자료 제출에 의하여 담보관리조건을 확정하고 담보관리업무를 개시
-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은 예탁자계좌부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하고, 현금은 예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 현금담보는 예탁원이 보관·운용하며, 그 운용이자는 담보설정자에게 지급
- 예탁원은 담보관리내역을 기재한 담보관리부를 작성·비치
- 유가증권담보의 가격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자의 담보대체 및 담보권자의 요청에 의한 담보교환을 인정
- 담보설정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해 담보를 담보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이체
- 예탁원의 담보관리업무는 담보관리기간 만료 및 참가자의 담보관리 종료청구 등에 의하여 종료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유가증권담보의 시가평가 및 일일정산 방법 명시 (2002/8/28 제정, 9/1 시행)

- 예탁원은 유가증권담보에 대하여 매영업일 주식은 시장종가로, 채권은 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으로 평가
- 예탁원은 시가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추가담보의 설정을 요구하거나 초과담보를 해지하여 반환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담보관리조건의 변경방법 명시 (2002/8/28 제정,
9/1 시행)
 - 예탁원 담보관리업무의 참가자는 상대방참가자의 승인을 얻어 담보
관리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10. 일반사무수탁 업무규정

- 투자일임계약재산의 계산업무 등 수탁근거 명시 (2002/4/15 개정·시행)
 - 투자자문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일임계약재산의 계산업무 등을 수탁
하는 경우에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계산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